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20호

2017. 7. 27.(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 | |
|--|----|
| 제3571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3 |
| 제3572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 4 |
| 제3573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 |
| 제3574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6 |
| 제3575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6 |
| 제3576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31 |
| 제3577호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 제3578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3 |
| 제3579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3 |
| 제3580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37 |

[입법예고]

| | |
|---|----|
| 제2017-1683호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9 |
| 제2017-1698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0 |

◆ 고 시

| | |
|--|-----|
| 제2017-2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고시 | 91 |
| 제2017-273호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92 |
| 제2017-274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 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95 |
| 제2017-275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08 |
| 제2017-276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12 |
| 제2017-277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5 |

◆ 공 고

| | |
|--|-----|
| 제2017-166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 137 |
| 제2017-167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 137 |
| 제2017-16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38 |
| 제2017-16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139 |
| 제2017-16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140 |
| 제2017-167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40 |

| | |
|--|-----|
| 제2017-1687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141 |
| 제2017-169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143 |
| 제2017-1699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144 |
| 제2017-1700호 2018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 149 |
| 제2017-1712호 하천구역 및 폐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 159 |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 |
|---------------------|-----|
| 제2017-4호 재산등록사항공개공고 | 161 |
|---------------------|-----|

◆ 구 고 시

| | |
|---|-----|
| 제2017-85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용산구) | 162 |
| 제2017-88호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 165 |
| 제2017-75호 임목 훠순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 170 |
| 제2017-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 172 |
| 제2017-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동작구) | 177 |
| 제2017-6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178 |
| 제2017-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관악구) | 180 |
| 제2017-12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강동구) | 181 |

◆ 구 공 고

| | |
|---|-----|
| 제2017-9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성북구) | 189 |
| 제2017-787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도봉구) | 191 |
| 제2017-66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노원구) | 194 |
| 제2017-1053호 대림동 964-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공시송달 공고(영등포구) | 197 |
| 제2017-136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남구) | 199 |
| 제2017-1364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 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남구) | 201 |
| 제2017-137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정거장) 공사완료 공고(강남구) | 201 |

◆ 사업소고시

| | |
|------------------------------|-----|
| 제2017-1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03 |
| 제2017-1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03 |
| 제2017-1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04 |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1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 구 분 | 단 위 | 단 가 | 비 고 |
|---------|-----|-------------------------------------|---|
| 위원회 | 일 당 |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 사이버 위원회 | 회 당 |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3.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4.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규칙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 가.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안 제2조)
 - 위원회 참석수당

| 구 분 | 단 위 | 단 가 | 비 고 |
|---------|-----|---|--|
| 위원회 | 일 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 사이버 위원회 | 회 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

- 심사수당 : 해당 법령 ·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시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급 불가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나. 수당의 지급절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2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와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7.5.18.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3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 · 관광”을 “정무부시장, 홍보 · 관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격월”을 “분기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브랜드 위원회의 전문성 및 위상강화
 - 나. 분과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 도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정무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2명으로 합(제2조제1항, 제2항)
- 나. 당연직 위원에 기존 홍보·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외에 정무부시장을 추가함(제2조제3항)
- 다. 정례회의를 기존 격월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4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2]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팔 책임자 | | | | | | |
| 1. 정원조정 | 1. 실 · 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직렬 · 직급 조정제외) 2. 실 · 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 · 요구 가. 정원 증원요구 나. 직급 상향조정 다. 직급 · 직렬 간 상계조정 | 기안 | | | ○ | | 조직담당관 | | |
| 2. 비정규인력 정수 관리 |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 기안 | | | ○ | | | | |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 사무소관 조정요구 | 기안 | | | ○ | | | | |
| 4. 직제에 관한 사항 | 1. 직제개정 요구 가. 실 · 본부 · 국 간 직제개정 요구 나. 실 · 본부 · 국 내 직제개정 요구 | | 기안 | | | ○ | 조직담당관 | | |
| 5. 복무 |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 · 본부 · 국장 나. 3급 보좌 기관 다. 4급 라. 5급이하 2.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 기안 | | ○ (인사과장) | | | 예산담당관,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괄 책임자 | | | | | | | |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 가. 3급이상 | 기안 | ○ | ○ | ○ | ○ | 국제교류담당관, 인력개발과장 | | | |
| | 나. 4급이하 | 기안 | ○ | ○ | ○ | ○ | | | | |
|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 기안 | ○ | ○ | ○ | ○ | | | | |
|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 기안 | ○ | ○ | ○ | ○ | | | | |
| |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 기안 | ○ | ○ | ○ | ○ | | | | |
| |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 기안 | ○ | ○ | ○ | ○ | | | | |
| | 2. 실 · 국내 전보 | 기안 | ○ | ○ | ○ | ○ | | | | |
| | 3. 교육파견 명령 | 기안 | ○ | ○ | ○ | ○ | | | | |
| | 4. 호봉승급획정 · 정정 | 기안 | ○ | ○ | ○ | ○ | | | | |
|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 | ○ | ○ | ○ | ○ | | | | |
| 7. 예 산 | 6. 소속공무원의 재직 · 경력증명서 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 발급에 한함) | ○ | ○ | ○ | ○ | ○ | 예산담당관 | | | |
| | 1. 예비비 사용방침 | 기안 | ○ | ○ | ○ | ○ | | | | |
| | 가. 5억원 이상 | 기안 | ○ | ○ | ○ | ○ | | | | |
| | 나. 5억원 미만 | 기안 | ○ | ○ | ○ | ○ | | | | |
| |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기안 | ○ | ○ | ○ | ○ | | | | |
| | 3. 예산의 이용방침 | 기안 | ○ | ○ | ○ | ○ | | | | |
| |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 기안 | ○ | ○ | ○ | ○ | | | | |
|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 기안 | ○ | ○ | ○ | ○ | | | | |
| |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 기안 | ○ | ○ | ○ | ○ | | | | |
|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 기안 | ○ | ○ | ○ | ○ | | | | |
|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 기안 | ○ | ○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8. 지방채 |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3. 원리금 상환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 | <input type="radio"/> | 기획조정실장 | | |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 기안 기안 |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 예산담당관 | | |
| 10. 규제개혁 | 1. 규제의 신설 ·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조례 · 규칙 제 · 개정시 나. 훈령 · 예규 제 · 개정시 | 기안 기안 |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법무담당관 | | |
| 11. 공 사 |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3. 공사착공 명령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5. 설계범위내의 일부 고용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참조)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8. 도급공사의 중지 · 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의 연기결정 | | | | | | | | |
| |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 | | | | | | | |
| |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14. 설계변경 보고서 | | | | | | | | |
| | 가. 중요사항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나. 그 밖에 사항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15. 공사현장 보고서 | | | | | | | | |
| | 가. 중요사항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나. 그 밖에 사항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16. 공사의 설계변경 | | | | | | | | |
| |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 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 기안 | | | | <input type="radio"/>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장 | 실·본부·국장 | | | | |
| | | 6급이하 업무 분 담 자 | 5급 총괄 책임자 | | | | | | |
|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 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 기안 | | | ○ | | | | |
|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 의 변경 | 기안 | | ○ | | | | | |
|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기안 | | ○ | | | | | |
| |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 | 기안 | | | ○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참조) | | |
| | 2. 용역집행 | | | | | | | | |
| | 가. 건당 1억원이상 | 기안 | | | ○ | | | | |
| | 나. 건당 1억원미만 | 기안 | | ○ | | | | | |
| | 3. 용역착공 명령 | 기안 | | ○ | | | | | |
|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 기안 | | ○ | | | | | |
|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 | | | | | | | |
| | 가. 1건당 1억원이상 | 기안 | | | ○ | | | | |
| | 나. 1건당 1억원미만 | 기안 | | ○ | | | | | |
|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 기안 | | ○ | | | | | |
| | 7. 용역의 준공검사 | | | | | | | | |
| | 가. 건당 1억원이상 | 기안 | | | ○ | | | | |
| | 나. 건당 1억원미만 | 기안 | | ○ | | | | | |
| | 8. 용역의 설계변경 | | | | | | | | |
| |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 계 사항의 변경 | 기안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협 조 처 | |
|---|------------------------------------|----------------------|-------------------|-----|--------------------|------|---|--|
| | | 담 당 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 시장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팔 책임자 | | | | | |
| 13. 물건의 제조 · 구매 · 임 대차 및 그 밖에 품의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 계사항의 변경 | 기안 | | ○ | | | 기술심사 담당관 | |
|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기안 | | ○ | | | | |
|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 | | | | | | |
| |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기안 | | | ○ | | | |
| |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 기안 | | ○ | | | | |
|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 기안 | | ○ | | | | |
| | 라. 감리단 이력승인 | 기안 | | ○ | | | | |
|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방침) | 기안 | | | ○ | | | |
|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 기안 | | ○ | | | | |
| |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기안 | | | ○ | | | |
| 13. 물건의 제조 · 구매 · 임 대차 및 그 밖에 품의 | 2. 물품제조 및 용역 | | | | | |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참조) | |
| | 가. 건당 1억원이상 | 기안 | | | ○ | | | |
| | 나. 건당 1억원미만 | 기안 | | ○ | | | | |
| | 3. 물품구매 · 임대차 등 | | | | | | | |
| | 가. 건당 1억원이상 | 기안 | | | ○ | | | |
| 13. 물건의 제조 · 구매 · 임 대차 및 그 밖에 품의 | 나. 건당 1억원미만 | 기안 | | ○ | | |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참조)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14. 재 산 및 채권관리 |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 침 결정 가. 일반재산취득 · 처분 및 교환 (1) 건당 10,000㎡ 이상 (2) 건당 1,650㎡ 이상 10,000㎡ 미만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4) 건당 330㎡ 이하 나. 법령에 따라 취득 · 처분이 의무 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 · 사용료 5억원 이 상일 경우 협조)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 약 후 임대보증금 지급전 보증금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 기안 | 기안 | ○ | ○ | ○ | ○ |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 | |
| | | 기안 | ○ | ○ | ○ | ○ | ○ |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 | |
| | | 기안 | ○ | ○ | ○ | ○ | ○ | 자산관리과장 | | |
| | | 기안 | ○ | ○ | ○ | ○ | ○ |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 | |
| | | 기안 | ○ | ○ | ○ | ○ | ○ | 자산관리과장 | | |
| | | 기안 | ○ | ○ | ○ | ○ | ○ | 재무과장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나. 건당 1억원 미만 | 기안 | | ○ | | | 재무과장 | | |
| |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 기안 | | | | | | | |
| | 가. 1억원 이상 | 기안 | | ○ | | | 세무과, 38세금징수과 | | |
| |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안 | | ○ | | | 세무과, 38세금징수과 | | |
|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 금 및 교부금 |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 기안 | | ○ | | | 재무과장 | | |
| |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 기안 | | ○ | | | 예산담당관 | | |
| | 3. 분담금 감액 결정 | 기안 | | ○ | | | | | |
|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 기안 | | | | | | | |
| | 가. 지급계획 | | | | | | | | |
| | (1) 민간 | 기안 | | | ○ | | | | |
| | (2) 자치구 | 기안 | | ○ | | | | | |
|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 기안 | | ○ | | | | | |
| | 다. 지급결정 | | | | | | | | |
| | (1) 3,000만원이상 | 기안 | | ○ | | | | | |
| | (2) 3,000만원미만 | 기안 | | ○ | | | | | |
|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 기안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16. 보상 | 1. 보상업무 계획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나. 1억원미만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4. 보상금 재심결정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6. 보상금 재결신청 7. 보상금 사건확인 8. 보상금 지급 | 기안 | | | ○ | | | | |
| 17. 수수료 및 사용료 |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나. 건당 1,000만원미만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 기안 | | | ○ | | | | |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 기안 |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괄 책임자 | | | | | | | |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2. 특별표창 계획수립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 기안 기안 | 기안 기안 | ○ ○ | ○ ○ | ○ ○ | | 인사과장 | | |
| 20. 의회업무 |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 | ○ ○ ○ ○ ○ | ○ ○ ○ ○ ○ | |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 | |
| 21. 행정심판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보충서면 등 제출 | 기안 | ○ | | | | | | | |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 1.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가. 중요 소송 나. 일반 소송 다. 집행정지 | 기안 기안 기안 | | | | | | 법률지원담당관 | | |

| 단위업무 | 세부항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조처 |
|--|-----------------------|------------------------|-----------------|----|---------|-----|----------|---------|
| | | 담당자 | | 과장 | 실·본부·국장 | 부시장 | | |
|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 2. 소송수행 | 6급이하 업무 분 담 자 | 5급 총괄 책임자 | | | | | |
| |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 기안 | | ○ | | | | 법률지원담당관 |
| | 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 기안 | | ○ | | | | |
| |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 기안○ | | | | | | |
| | 1. 법령정비 건의 | 기안 | | | ○ | | | 법무담당관 |
| |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 | | | | | | |
| |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 | | | | | | 법무담당관 |
| | (1) 중요한 사항 | | | 기안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기안 | | | ○ | | |
|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 | 기안 | | | ○ | | |
|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
|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기안 | | | ○ | | | |
|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 기안 | | ○ | | | | |
|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 기안 | | ○ | | | | |
|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 | | | | | | |
| |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 | | | ○ | | | |
| | 나. 조례·규칙의 개정 | | 기안 | | | ○ | | |
|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기안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24. 자료제출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기안 | | ○ | | | | 법무담당관 | | |
| | 7. 시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 | | | | | | | | |
| |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 | | | | | | | | |
| | (1) 조례 제정안 | | | 기안 | | | ○ | | | |
| | (2) 조례 개정안 | | | |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기안 | |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기안 | | 기안 | | ○ | | | | |
|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 | | 기안 | | | ○ | | | |
|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 | | 기안 | | | ○ | | | |
|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 우 (시장발의 조례안) | | 기안 | | | ○ | | | | |
| 24. 자료제출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 기안 | | ○ | | | | 법무담당관 | | |
| | 9. 고시 · 공고문의 결정 | 기안 | | ○ | | | | 법무담당관 | | |
| |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 기안 | | | ○ | | | 법무담당관 | | |
| |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 기안 | | ○ | | | | | | |
| 24. 자료제출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 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 기안 | | ○ | | | | | | |
|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 기안 | ○ | | | | | | | |
|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 기안 |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괄 책임자 | | | | | | | |
| 25. 위원회 운영 | 5. 정기보고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 | | | 기안 | | <input type="radio"/> | 민관협력담당관 | | |
|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다. 위원장이 실 · 국장인 경우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26. 회 의 | 1. 회의소집 | | | | | | | | | |
| |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 기안 | | | | <input type="radio"/> | | | | |
|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27. 민원서류처리 |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 · 접검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기안 | | | ○ | | | | |
| 28. 지방공사 지도 감독 |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나. 사업계획 승인 다. 기구조정 | 기안 |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29. 사무위임 및 위탁 | (1) 부급이상 기구 라. 정원조정 마. 임원의 임면승인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1. 위임 · 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 · 위탁의 내용 변경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2. 실행계획 수립 · 집행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 ○ ○ ○ ○ ○ | | | | 기획조정실장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 과장 | | |
| 30. 자치구 분 쟁조정 신청 서처리 |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 정 통지 | 기안 | 기안 | | ○ ○ ○ ○ | | ○ | | | |
| 31. 정책결정 및 기획 |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 · 조정 | 기안 |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32. 의전행사 | 2. 시정 주요정책(복지, 안전, 일자리) 중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가. 주 요 행 사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 기안 | | | | | | 젠더정책팀장 (젠더자문관) 총무 과장 | | |
| 33. 그 밖의 업무 | 1. 각종 심의회 · 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2. 실 · 국간의 사업협조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5. 사무인계 · 인수 가. 부시장간 사무인계인수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 기안 | 기안 | ○ | ○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장 | 실·본부·국장 | | | | |
| | | 6급이하 업무 분 담 자 | 5급 총 책임자 | | | | | | |
| 34. 의료보험 | 나. 4급 부여자 | | 기안 | | | ○ | | | |
| | 다. 5급이하 부여자 | 기안 | | | | ○ | | | |
|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 기안 | ○ | | | | | | |
|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겸열 | 기안 | ○ | | | | | | |
| | 10. 물품의 반납 | 기안 | | ○ | | | | | |
|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 기안 | ○ | | | | | | |
|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 기안 | | ○ | | | | | |
|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 기안 | ○ | | | | | | |
| | 14. 차량 배차신청 | ○ | | | | | | | |
|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 (중앙부처, 타 기관) | 기안 | | ○ | | | | | |
| | 16. 소속직원 교육 | 기안 | | ○ | | | | | |
| | 17. 대부알선 | ○ | | | | | | | |
| | 18. 대여장학금 승인 | 기안 | ○ | | | | | | |
| | 19. 사망조위금 신청 | ○ | | | | | | | |
| | 1. 피보험자 자격관리 | | | | | | | | |
| | 가. 자격취득 · 상실 | ○ | | | | | | | |
|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 상실 | ○ | | | | | | | |
|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괄 책임자 | | | | | | | |
| 35.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 · 해제 |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 해제 2. 재난위험시설 지정 · 해제 | 기안 | | <input type="radio"/> | | | | | | |
| 36. 친환경 상품 구매 |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 · 확인 4. 용역 · 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 | | | | |
| 37. 정책실명제 운영 |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나. 정책자료집 발간 | 기안 기안 | | | <input type="radio"/> | | | | | |
| 38. 행정 정보공개 (청구처리) |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 기안 기안 기안 |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정보공개정책 과 정보공개 지원팀장 | | |
|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 | | | | |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장 | | |
| 40. 처리과 기록물 관리 | 1. 문서접수 · 배부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조사 ·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3. 기록물 폐기 4. 기록물 인계 · 인수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 | | | | |

| 단위업무 | 세 부 항 목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시장 결재 | 협 조 처 | | |
|-----------------|--|--|--|---------------------------------------|--------------------|-----|----------|-------|--|--|
| | | 담당자 | | 과 장 | 실 · 본 부 · 국장 | 부시장 | | | | |
| | |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 5 급 총 책임자 | | | | | | | |
| 41.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기관 공통 업무 추진 시 관련부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칙개정임

2.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 공개율 제고를 위한 국장급 이상 결재(생산)문서 비공개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 나. 자매·우호 결연 해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담당관 협조결재
- 다. 행정심판 시 재결청 개념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라. 시정 주요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5호**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및 표식)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표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와 같다.

제4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①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15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 등록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15조제3호에 따른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소 여부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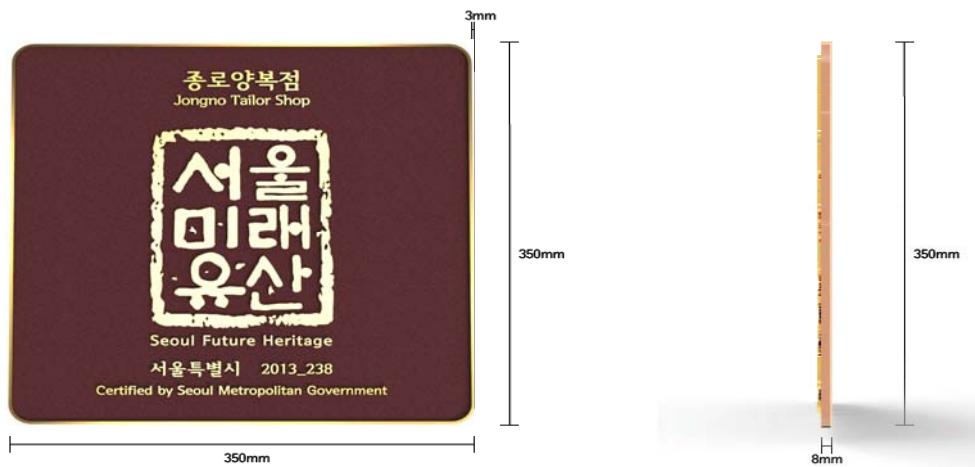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서울 미래유산 표식(제3조 관련)

- 동판 제작 도안



- 규격: W350 × H350 × T8(mm)
- 재질: 동판(銅板)
- 글자체: (한글)훈민정음 해례본, 서울한강체 / (영문)서울한강체
- 가공법: CNC 또는 주물가공 후 지정색 에나멜페인트 상감 마감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 | | | | | |
|-----------------------------|-------------|--|------|--|----|
| 동의자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 소 | (전화) (핸드폰) (이메일) | | | |
| 선정 대상 | 서울 미래유산명 | | | | |
| | 주 소 | | | | |
| 표식 | 설치동의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벽부착형/바닥형/스티커형)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 |

본인은 서울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존에 힘쓸 것을 동의함

2020

동의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주 소)
(미래유산명)

위 문화유산은 서울특별시민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기에 인증
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m²]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서울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 | 3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전화번호: _____ /휴대폰: _____) | |
| 대상 서울 미래유산 | 명칭 | |
| | 인증번호 | |
| | 소재지 | |
| 취소 사유 | | |
| 그 밖의 사항 | |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처리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근현대 서울의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5. 7.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 취소 등에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및 서울 미래유산의 취소(안 제2조 및 제4조)

– 서울 미래유산 선정 시 소유자 등이 제출하는 동의서 및 서울 미래유산 취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나. 서울 미래유산의 인증서 및 표식(안 제3조)

– 서울 미래유산임을 입증하는 인증서 및 표식을 규정함

다. 각종 서식(안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서울 미래유산 표식,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서울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6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을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휴무하되, 부서장은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를 “휴무하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속직근무자에게 실시되고 있는 대체휴무를 일직근무자에게도 실시하여 휴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직근무의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1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제2항)
- 나.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휴무 사용기간을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안 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7호**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원의 범위)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청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중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 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서울특별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청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재정비(안 제2조).
-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
 - 종래 시 청사 내에서 근무하였으나 시 청사 외로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8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과”를 각각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력개발부서”를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교류의 내실화 추진 및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여행방침 수립시 국제교류부서의 장 사전협의 제도화(안 제3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9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의료기관(무료)”이란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분담)”이란 조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을 말한다.
3. “시립병원”이란 조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립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망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한 제5조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자의 응급치료, 수술, 입원치료와 의료검사 등(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시립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및 소모품의 지원

제4조(의료기기의 우선 양도) 시장은 시립병원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도래한 기구·기계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장비를 다른 의료기관에 무상 양도할 경우 안전망병원인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료공급 대상)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거주불명자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
4.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민간의료기관(무료)의 확인 등) ① 민간의료기관(무료)은 환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상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지 여부
2. 국가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 ② 민간의료기관(무료)은 시립병원에 환자의 진료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진료의뢰서와 함께 상담기록부 사본을 시립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시립병원의 확인 등)** ① 시립병원은 제6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무료)로부터 환자를 의뢰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상담기록부 사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한다.
 ② 시립병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기록부 사본에 환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시립병원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가목에 따른 감면 대상인데도 추가로 제9조에 따른 감면이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
 2. 환자가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지원 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종전에 국가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 나. 시립병원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원 또는 감면 대상인데도 추가로 제9조에 따른 감면이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
- ③ 시립병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기록부 사본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록부 사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료기관(분담)의 확인 등) 민간의료기관(분담)은 환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상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지 여부
2. 국가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분담)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원 또는 감면 대상인데도 추가로 제9조에 따른 감면이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

제9조(감면의 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처음 의뢰하여 시립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은 환자
 2.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하여 진료 등이 완료되었으나 동일 병명으로 다시 시립병원에 의뢰되어 시립병원에 두 번째 입원한 환자
 3.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한 적이 있으나 다른 병명으로 처음 시립병원에 의뢰되어 시립병원에 입원한 환자
- ②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에 의뢰한 환자로서 동일 병명으로 두 번을 초과하여 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용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③ 민간의료기관(분담)에서 진료 등을 받은 환자의 진료비용 감면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진료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원 또는 감면하며,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제3호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1조제1항의 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2. 시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분담)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3. 이 조에 따른 감면

제10조(청구 및 지급 등) ① 시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분담)은 제9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진료비용은 매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청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진료내역 등을 검토하고 청구된 진료비용을 매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자가 제5조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지 여부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된 진료비용은 확인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지급 여부를 자문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이하 “평가운영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자가 제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2. 1명의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② 평가운영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평가운영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연도 첫 회의 개최 시 위촉되며, 해당 연도 마지막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1. 시립병원 의사 2명 이상
2. 시립병원의 사회복지사 또는 진료비용 청구업무 관련 담당자 2명 이상
3. 안전망병원인 민간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 이상
-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평가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망병원에 대한 지원 범위 규정(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의료공급 대상 및 그 확인 절차를 규정(안 제5조~제8조)

- 조례 제5조제1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의 구체적 대상 지정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확인 절차
- 시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분담)에 의뢰된 환자에 대한 확인 절차
- 다. 진료비용의 감면기준을 규정(안 제9조)
 - 진료비용의 면제 또는 감경 범위

◆ 서울특별시규칙 제3580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이하 “119특수구조단”이라 한다)에 설치되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항공대응팀장”이란 운항, 정비, 구조구급대원으로 구성된 팀을 대표하며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항공대원”이란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5. “기장”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부기장”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기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및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교관조종사”란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사람 또는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8. “학생조종사”란 신규임용이나 기종 전환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9. “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며 필요시 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비반장”이란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운항관리 담당자”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또는 항공대에서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3.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4.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5.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 고도 · 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7.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8.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9. “기술유지비행”이란 조종사가 비행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비행을 말한다.
20. “곡예비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나.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다.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 라.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失速)시켜 하는 비행
 - 마.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21.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22.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3.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24.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 · 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25.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26. “운항정보시스템”이란 조종사에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항공기 위치 및 각종 비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충돌을 예방하고 운항지휘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27. “항공용 단말기(PDA)”란 운항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를 공유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8. “운고(ceiling)”란 하늘이 구름으로 8분의 5 이상 덮인 경우에 지상 또는 해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9.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30.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
31.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기관기호”란 국민안전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33.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4.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계속 비행할 경우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5.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또는 그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37.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8.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9.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

- 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40. “중대한 결함”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항공안전장애중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한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결함을 말한다.
 41. “시정업무”란 항공촬영 등 시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42. “기체시간”이란 정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으로 항공기가 이륙부터 착륙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43. “시한성 품목”이란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품으로서 사용한계시간에 도달하여 항공기에서 장탈 후 오버홀이나 수리 또는 폐기하는 부품을 말한다.
 44. “기술회보”란 제작회사에서 항공기 감항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 발동기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정보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119특수구조단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소방항공대

- 제4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 ③ 항공대에는 항공대응팀(운항, 정비, 구조구급)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 제5조(업무)** ①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시정업무 항공지원
8.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6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 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감독
 -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 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 제7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각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통제관
 2. 항공대장
 3.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8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

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운항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 ④ 운항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9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초안,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자격심의 위원회

제11조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구조단에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119특수구조단장
2. 위원(6명) : 행정지원과장, 항공대장, 본부 인사팀장, 본부 구조팀장, 119특수구조단장이 선임한 조종사 및 정비사 각 1명
3. 간사 : 119특수구조단 인사담당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 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장 운항관리

제14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을 따른다.

제16조(운항절차) ① 운항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항공기는 운항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운항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비행과 기술유지 및 조종능력향상비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⑤ 항공대장은 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운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항공대장은 항공기 가동 상황과 이륙 기상조건을 정기(근무교대, 정오, 일몰, 자정) 및 수시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후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황실장에게 통보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긴급운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 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지령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원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

7.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지령시스템 또는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지시에 의하여 출동지령 한 경우 운항통제관은 출

동지령 후 비행지시서를 항공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① 운항통제관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하여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중지휘통제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동한 소속기관 항공기의 조종사
2. 그 밖에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상호 간의 통신 유도
 2. 항공기 대기 장소의 지정
 3. 항공임무 지정
 4. 각 항공기의 운항 경로 지정
 5. 그 밖에 항공기간 안전 및 원활한 항공이송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항공기의 지원요청) ① 항공기를 중앙119구조본부, 타 시·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는 운항통제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통제관은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상호협력체계 유지) 119특수구조단장은 상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영기관의 항공기 보유현황 및 상황실의 비상연락망
2. 항공기 지원 능력(운항능력, 설치장비, 구조구급 능력 등)

제21조(비행제한 등)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기장의 의견을 들어 운항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주간
 -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 나. 시정
 - 1) 육상에서는 3,200미터 이하
 - 2) 해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 다. 운고
 - 1) 육상에서는 300미터 이하
 - 2) 해상에서는 450미터 이하
2. 야간
 -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 시정

- 1) 육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 2) 해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다. 운고

- 1) 육상에서는 600미터 이하
- 2) 해상에서는 600미터 이하

3.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④ 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22조(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①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법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운항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2항을 준용한 항공계기 및 조명설비가 항공기에 갖춰져야 하며 통신장비가 정상일 것

3.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서는 야간투시경을 갖출 것
 4. 착륙장에는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식별이 가능한 지상조명 지원이 가능할 것
 ②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계기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하여야 한다.

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③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전익 항공기 부양 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 장착
 2.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동의 착용

3. 탑승인원수에 해당하는 구명보트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비
4. 승무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 ⑤ 다음의 각 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
 1.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앞바다를 비행
 2.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제23조(비행계획서) ①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비행정보실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기상조건
 2. 주항로 · 예비항로
 3. 연료소모 판단
 4. 비행장 상태 및 제 규정 숙지
 5.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사항
- ② 비행계획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거나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시스템(UBIKAIS)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제24조(기상자료) ①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 · 특보 등은 기상관서 및 운항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②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비행 중 임무지역의 기상을 파악하여 조종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별 기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시정도표를 작성 ·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 가. 비행임무 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 나. 항공기와 장비의 상태 확인 · 점검
 - 다.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 라.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 마. 연료 적재량 확인,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 확인
 - 바. 탑승자 안전 확인 및 교육, 항공기 점검 및 시동
 - 사.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 아.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협조 등 확인
 - 자. 임무 가능 여부 결정
2. 정비사
 - 가. 항공기 정비 및 검사 기록 확인
 - 나. 항공기 내에 비행 관련 서류 및 각종 비행기록서류의 비치
 - 다. 항공기 정비 장비 및 부수 기자재 확인

- 라. 항공기 비행 전 점검시행
- 마. 조종사에게 통보받은 비행임무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연료 보충 후 조종사 통보
- 3. 구조구급대원
 - 가. 임무에 적합한 구조·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 나. 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관련 일지 작성 준비 및 관리 유지
- 4. 운항관리 담당자
 - 가. 긴급운항 시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후 조종사 통보
 - 나. 긴급운항 시 해당 조종사와 협조하여 관제기관에 비행 계획서 및 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 다. 긴급운항 시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후 조종사 통보
 - 라.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후 기장 통보
 - 마. 조종사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제공

제26조(비행 중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종사
 -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이행
 -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 마. 비행 중 사주 경계
 -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 2. 정비사
 - 가. 항공기 상태 확인 및 조언
 - 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 3. 구조구급대원
 - 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나.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 4. 운항관리 담당자
 - 가. 항로 상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 나.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 다.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 ②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

의하여야 한다.

2.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페드를 포함한다)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이상 현상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꼭 예비행이나 난폭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항공기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수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할 수 있다.
6. 항공기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황실, 운항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비행조건이 위험하여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애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바로 상황실 및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 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 나.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
 - 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내용과 비행자료를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에게 통보
 - 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유지
2. 정비사
 - 가.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부분의 작성
 - 나. 조종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확인·조치
 - 다. 비행 후 점검 절차에 따른 점검
 - 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유지
3. 구조구급대원
 -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 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점검
4. 운항관리 담당자
 - 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 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제28조(항공대원의 탑승기준) ① 항공기별 탑승인원은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이상으로 하되 항공기 기종별 운용한계 내에서 운항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구급 업무 수행 시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의사가 함께 타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이송임무 등을 수행 시 구조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1명만 탑승할 수 있다.

③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구조구급대원의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항공대원의 자격요건) ①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1. 기장은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이수자 또는 해당 기종 부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기장으로서 임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부기장은 해당기종 기종전환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3. 교관조종사는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조종사 중 해당기종 기장으로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한정자격을 취득한 자와 제작사 교관조종사로부터 교관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② 정비사는 해당기종 기종전환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③ 구조구급대원은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항공대원 상호협조) 항공대원은 항공기를 운용 시 항공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등 CRM(Crew Resource Management : 항공대원 간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용 가능한 인원, 장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종간 인수·인계 시 명확한 언어 구사를 하여야 한다.
2. 기장 및 부기장 간에는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 기재취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장은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PF)와 조종간을 잡지 않은 조종사(PM) 임무를 분명히 구분하여 임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4.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의 임무수행 중에는 항공대원 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조종실 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31조(통신)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운항정보시스템 운용 등) ① 운항관리 담당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항공용 단말기 운용자(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을 확인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항정보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고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항공용 단말기 운용은 항공기 이륙준비 시점부터 착륙하여 비행종료 시까지 한다.
2. 조종사는 비행계획을 제출 후 운항담당자로부터 확인이 완료되면 항공용 단말기에 로그인 한다.
3. 항공기 탑승 전 GPS 수신 여부 확인하고 단말기를 통하여 시작과 종료보고를 한다.

제33조(이착륙장의 현황관리) ① 119특수구조단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신속한 환사이송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내 이착륙장을 연1회 조사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착륙장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층 건축물
2. 의료기관
3. 산악 및 산간지역
4. 고속도로
5.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현황관리는 국토교통부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제38조의 헬기장 식별표시가 적합하게 설치된 곳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헬기장이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인근
2. 산악 및 산간지역의 헬기장 미설치 장소

제34조(연료탑재 기준)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을 추가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개인 비행시간 기록) ①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으로 지명 받아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같은 비행에서 2명 이상이 기장의 비행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2. 부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을 보좌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3.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학생조종사의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동일한 비행에서 2명 이상이 교관 조종사 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4.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 ② 119특수구조단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발급한다.

제36조(비행시간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 시는 예외로 하며 비행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운항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비상시 조치사항) ①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기술조작과 긴급조치를 한 후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한다.

- ②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기장은 비행교범에 따라 기술조작을 한다.
2. 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3. 비상착륙 후 기체로부터 탈출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 있게 행하고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4. 비상착륙 후 고장이 제거되어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운항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륙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착륙지점을 선정, 접근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2. 비행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상강하를 시작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 ④ 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2.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3. 비상착륙 또는 사고발생과 관련한 시간, 장소, 탑승객 및 항공대원의 상황, 기체의 상황, 원인 등을 운항통제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 ⑤ 사고발생 시 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2. 적재연료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3. 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38조(운항기록유지)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요소별로 연·월·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운항 상황을 월별로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유지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월별로 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

제39조(일일안전점검) ① 항공대응팀장은 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 ① 조종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전문지정병원에서 항공신체검사를 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119특수구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19특수구조단장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조종업무를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 시 조종업무를 재개하도록 한다.

제41조(지상 안전) ①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
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
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
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②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유도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3.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
4.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③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기내 안전)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

다만, 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 가. 구급 의료용품
 - 나. 불꽃 조난신호 장비

- 다. 소화기
- 라. 비상등
- 마. 구명조끼
- 4. 비상착륙을 대비하여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제43조(검사·정비 안전) 항공기는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제작사의 정비교법에 따른 정비방법 및 절차 준수
3. 승인된 부속부품 및 공구 사용
4. 정비내용의 정확한 기록유지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제44조(급유 안전)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할 것
2. 유조차 및 항공기로부터 지상에 접지선을 설치(3선 접지)할 것
3. 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작업자 인근에 비치할 것
4. 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접지선을 잡을 것
5.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 격납고 내에서 연료보급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7. 그 밖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급유작업에 임할 것

제45조(주류의 금지 등) ①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구조·구급업무(이하 “항공업무 등”이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대원은 항공업무 등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119특수구조단장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위험물 수송에 관한 조치) ① 위험물을 수송할 때는 운항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는 해당 비행고도·기상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의 수송이 비행 및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그 위험물을 탑재해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운항통제관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운항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운항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사례를 전파한다.

- 제4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항공안전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장비, 구조·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 ③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제50조(항공안전점검)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점검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정비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4. 항공 안전관리 사항
5.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사항
6. 격납고 및 예비부품 관리 사항
7. EMS 장비 등 관리 사항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장 정비 및 물품관리

제51조(정비계획) ① 119특수구조단장은 항공기 검사 및 정비를 위한 다음 해의 연간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월별 예상 운항 시간
 2. 항공기 정기검사(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
 3. 시간교환부품 및 재생정비사항
 4.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
 5.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입고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
- ③ 항공대장은 점검, 결함 등의 사유로 항공기 출동이 불가한 경우 119특수구조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항공대장은 월간 검사 및 정비 실적을 월별로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검사의 구분) ①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 교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일일검사 : 비행 당일 근무교대 후 최초비행 전, 중간, 최종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정비교범에 따른 일정한 검사주기에 이를 때 실시하는 검사
 3. 감항검사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4. 특별검사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검사로서 항공기의 운항·관리 중 발생한 결함, 제작사 기술회보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일일점검을 제외한 항공대 자체검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 등에 기록·유지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점검 기간 및 내용을 점검 시작 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일일검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준용하되 운용교범 및 정비교범의 검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기종의 운용교범 및 정비교범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정기검사는 필요하면 검사주기일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⑤ 정비업무 수행 시 정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비자와 검사자로 구분하고, 정비작업 및 검사를 상호 교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항공대장은 감항검사를 완료하면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주계약검사) ①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의 자체 검사능력을 초과하는 사항 등은 외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대장은 제1항에 따른 외주계약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헬기 정비에 필요한 기간
2. 헬기 검사주기(감항검사를 포함한다)의 예상시기
3. 검사주기별 교환부품 및 정비사항

4. 외주계약검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외주계약정비를 할 때는 정비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지시서를 정비용역업체에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입고한다.

④ 항공대장은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항공기를 입고할 때에는 책임정비사를 지정하여 현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정비사는 그 수행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시 및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공장입고검사

2. 항공기 세부정비계획 협의

3. 항공기정비 중간검사

4. 항공기정비 출고검사

5. 시험비행의 시행

제54조(시험비행 등) ①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검사 및 정비가 종료된 후에 비행을 통한 기능 점검 및 시험, 항공기의 정상상태 여부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는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서울지방항공청 예규 「항공기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의 별첨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해당 검사 및 정비에 관련된 조종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위하여 항공기가 계류장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운항한다.

제55조(항공기 결함 처리) 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정비사는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정비 이월 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확인 서명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의 중대한 결함은 신속히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결함은 해소조치 전 또는 후에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④ 운항통제관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및 조치경과를 본부장에게 보고 한다.

제56조(기술정보의 처리) ① 감항성개선지시(AD), 기술회보(SB), 기술서신(SL) 등 각종 기술지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 보유 기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비검사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반복되는 감항성 개선지시는 반복주기, 다음 수행일자 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감항성 개선지시의 수행을 위한 시한이 충분하거나 별도로 시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품 및 수행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종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조종사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항성개선지시 수행방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수행시한 내에 기술지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장비 제작회사의 권고 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수행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대체방법이나 수행시한의 연기를 인가받아야 한다.

제57조(정비관련 문서 관리 등) ① 항공기 주요 구성품, 시한성 품목 및 시한성 재생품은 기체 이력부나 엔진이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에 장착된 각종 선택 장비는 작업지시서, 도면, 회로도, 그 밖의 작업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술지시문서 등은 이행 여부를 기종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는 「항공안전법」 제52조2항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비행 전·후 점검을 조종사와 정비사가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결함수정 내용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⑤ 모든 정비문서 기록을 수정할 때에는 한 줄로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록한 후 수정 사유와 수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옮겨 적고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주요정비기록문서는 해당 항공기가 용도 폐기 또는 말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감항성 개선지시 및 기술지시 수행기록 문서
2. 탑재용 항공기 일지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4. 수리·개조 및 재생정비(오버홀) 기록문서
5. 장비품 이력부

제58조(항공기부품 등의 관리)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해에 필요한 항공기 부품 및 장비품(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수요조사를 매년 4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한 부품 등을 수령할 때는 입고 전에 감항성 기준에 적합한 부품 등인지 수령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하는 부품 등은 구매처로 반송 조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③ 부품 등은 품질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고, 저장시한이 있는 부품(교환부품을 포함한다) 등은 간단한 이력부와 교환 사유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유 중인 부품 등의 사용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관련 자재는 사용가능, 사용불가, 수리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고현황을 4월말까지 실제조사 하여야 하며, 부품 등의 현황을 119특수구

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의 시한성 품목의 교체주기 산정기준은 기체시간(항공기체의 비행시간) 또는 일력(품목 제작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한 날)으로 한다. 다만, 보유기종별로 다른 경우 정비교범 기준에 따른다.

⑦ 교체된 시한성 부품 및 고장부품, 소모성부품 등 폐기대상 부품은 불용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 후 불용처리 한다.

제59조(부대장비 등의 관리) 정밀측정 장비는 유효기간 내에 점검·교정을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장비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공유 품질관리)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
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제8장 교육훈련

제61조(항공대원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항공대의 운항, 정비, 구조구급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 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마다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 비행(모의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한다.

제62조(비행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조종 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산불진압, 항공방제·방역훈련 및 구조·구급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훈련은 타 시·도 숙지비행을 포함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비행으로 하고, 보유 기종별로 최종 비행일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야간비행훈련은 최종 비행 일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시간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기비행훈련은 자격보유자가 최종 비행 일부터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경험을 유지하도록 하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 또는 모의비행 장치에 의한 훈련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화재진압을 위한 담수 및 진화훈련은 산불대책 기간 시작 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산불대책기간 시작 전 실제 임무수행이 있을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항공방제훈련은 항공방제 임무가 있을 때 실시하며 최초 실시일 전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구급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조·구급 종류별로 실제 임무비행을 포함하여 연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고층건물 인명구조
 - 나. 산악사고 인명구조
 - 다. 수난 인명구조
 - 라. 항공기사고수색구조
 - 마. 환자 이송훈련
- ②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기량유지를 위하여 자격회복 훈련 및 기술유지 비행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하고 자체평가를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격회복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3. 소방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 (모의비행장치 훈련을 포함한다)을 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하고 제35조에 따라 기록·관리 한다.
 - ③ 항공대장은 연간 비행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신임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 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 및 야간비행 훈련을 하여야 한다.
 - ⑤ 신임조종사의 교육훈련평가는 지상학 평가와 훈련비행 평가로 구분하여 지상학 평가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조종사 중 해당기종 기장으로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제63조(구조 · 구급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 · 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 건물·산악·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 항공 구조·구급 장비의 조작
4. 항공안전 및 구조·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항공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항공대의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별표2의 구조·구급대원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모두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24조 4항 또는 26조에 따라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분야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정비교육) ①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기정비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 최신 항공기정비기술의 반영
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 ② 신임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제62조 제5항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 ③ 신임정비사 기종전환 정비교육의 교관과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시한다.
2.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가.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 나.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 다.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보유 항공기 개요
 - 마.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 바.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 사.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 아.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 자.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재직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 보안관리

제65조(항공기의 보안관리)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

- 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6조(경고표지)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쉽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67조(탑승자 준수사항)**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② 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 및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 ④ 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로 사전에 운항통제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시동 중 또는 회전 중에는 접근을 금지할 것
 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항공대 업무분장^(제4조제3항 관련)

| 구 분 | 업 무 분 장 |
|-------|---|
| 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 · 비행평가 · 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기 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
|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무전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장비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정비 · 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및 항공장비품의 정비관련 문서와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
| 구조·구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구조 ·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 · 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 · 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 · 구급 · 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 외 세부사항은 따로 분장한다.

[별표 2]

항공대원 교육훈련(제61조제1항 관련)

| 구 분 | 조종사 | 정비사 | 구조 · 구급대원 |
|-----------|---|---|--|
| 교 관 | 교관 조종사 | 선임 정비사 | 선임 구조 · 구급대원 |
| 교 육 훈련 내용 | <p>직무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비행술 • 야간비행술 • 비상절차, 계기비행술 • 항공용GPS운용 • 비행정보간행물 • 표준입출항절차 • 비행교범 • 항공기 탑재장비 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터계통 • 동체계통 • 조종계통 • 차륙계통 • 동력계통 • 통신계통 • 전기계통 • HOIST계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프용-용기술 • 공기호흡기운용 • 항공응급처치훈련 • 호이스트 및 레펠 하강 • 구조장비 조작 • 구급장비 조작 |
| 공 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인명구조훈련 • 응급환자 · 장기 이송 • 화재진화훈련 • 항공탑색구조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이스트 운용 • 항공유 보급절차 • 항공기 취급 및 계류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호 서식]

항공기사고보고서(제8조제4항 관련)

| | | | | |
|----------------|-------------|---|---------------|--|
| ①사고발생일시 | | | | |
| ②사고발생장소 | | | | |
| 항공기 | ③기종 및 형식 | | ④등록기호 | |
| | ⑤비행구간 | | ⑥소유자 등 | |
| | ⑦최종출발지 및 시간 | | ⑧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 |
| | ⑨승무원수 및 승객수 | | | |
| ⑩사고내용(6하원칙에의거) | | | | |
| ⑪피해내용 | | <input type="radio"/> 인명 : <input type="radio"/> 항공기 : <input type="radio"/> 기타 : | | |
| ⑫조치내용(인명구조 등) | | | | |
| ⑬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 | | | | |

20

()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2호 서식]

비 행 지 시 서(제16조제2항 관련)

제 호 송 화 자 : 직 성명

항공대장 앞 수 화 자 : 직 성명

통화시간 : 시 분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행을 지시함.

20 년 월 일

() 운 항 통 제 관 (인)

| | |
|--------|--------------------------|
| ① 기 종 | |
| ② 운항일시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 ③ 운항구간 | |
| ④ 목적 | |
| ⑤ 탑승자 | |
| ⑥ 비고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3호 서식]

항공기 지원 요청서(제19조제1항 관련)

요청번호제 - 호

20 . . . 00:00

| | | | |
|------------------|-------------------------------------|----------|--------|
| ① 요청자 | OO소방본부 | | |
| ② 사용일시 | | | |
| ③ 사용목적 | | | |
| ④ 탑승자 | | | |
| ⑤ 비행지역 | | | |
| ⑥ 운항항공기 | | | |
| ⑦ 기 타 (협조기관) | 재난위치 | | GPS 좌표 |
| | 사고개요 | | |
| | 재난분류 | UHF/TRS | |
| | 관할서(센터) | 관제자/직통전화 | |
| | 구급차 대기장소 | 이송병원 | |
| 기타 사항 | 출동구조대 연락처(휴대폰/무전기) 요구조자 연락처(휴대폰) | | |
| 기관명 : 요청관 : 전화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4호 서식]

| FLIGHT PLAN 비행계획서(제23조제2항 관련) | | | |
|---|---|------------------|--------------|
| PRIORITY 전문우선순위 | ADDRESSEE(S) 수신처 | | |
| <<= FF → [REDACTED] <<= | | | |
| FILING TIME 제출시간 | ORIGINATOR 발신처 | | |
| [REDACTED] → [REDACTED] <<= | | | |
| SPECIFIC IDENTIFICATION OF ADDRESSEE(S) AND/OR ORIGINATOR 수신처 및 발신처의 특정 식별부호 | | | |
| 3 MESSAGE TYPE 전문종류 | 7 AIRCRAFT IDENTIFICATION 항공기 식별부호 | | |
| <<= (FPL | | | |
| 9 NUMBER 번호 | TYPE OF AIR CRAFT 항공기 형식 | | |
| - [REDACTED] | [REDACTED] | | |
| 13 DEPARTURE AERODROME 출발비행장 | TIME 출발예정시간 | | |
| - [REDACTED] | [REDACTED] <<= | | |
| 15 CRUISING SPEED 순항속도 | LEVEL 고도 | | |
| - [REDACTED] | ROUTE 예상비행경로 | | |
| [REDACTED] → [REDACTED] <<= | | | |
| TOTAL EET 총 예상소요비행시간 | | | |
| 16 DESTINATION AERODROME 목적비행장 | HR MIN 시간 분 | | |
|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 | |
| 2ND. ALTN AERODROME 부교재비행장 | | | |
| 18 OTHER INFORMATION 기타정보 | | | |
| [REDACTED] <<= | | | |
| SUPPLEMENTARY INFORMATION (NOT TO BE TRANSMITTED IN FPL MESSAGE) 비행계획 전문에 포함되어 전송되지 않는 보충 정보 | | | |
| 19 ENDURANCE 연료함재량 | EMERGENCY RADIO 비상 무선통신장비 | | |
| HR MIN 시간 분 | UHF VHF E L B A | | |
| - E/ [REDACTED] → P/ [REDACTED] | [REDACTED] → R/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 | |
| SURVIVAL EQUIPMENT/구급용구 | JACKETS/구명동의 LIGHT FLUORES U F VHI V | | |
| POLAR Polaire | MARITIM Maritime | JUNGLE Jungle | |
| DESERT Desert | [REDACTED] | [REDACTED] | |
| → [REDACTED] / [REDACTED] | → [REDACTED] / [REDACTED] | | |
| DINGHIES/구명보트 NUMBER 수량 | CAPACITY 수용인원 | COVER 덮개 | COLOUR 색상 |
|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 | | |
| AIRCRAFT COLOUR AND MARKINGS 항공기 색상 및 무늬 | | | |
| A/ | | | |
| REMARKS 기타 | | | |
| → [REDACTED] / [REDACTED] <<= | | | |
| C/ FILED BY/제출자 |) <<= | | |
| SPACE RESERVED FOR ADDITIONAL REQUIREMENTS 추가 필요사항을 공백 | | | |
| 210mm × 297mm [백장지 80g/m ²] | | |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5호 서식]

소방항공기 운항정보시스템 수리내역서(제32조제2항 관련)

| | | | |
|---------------------------------|--|-----------|------|
| 의뢰자 소속 | | | |
| 의뢰자 (소방항공대 또는 상황실) | | 전화번호 | 사무실: |
| | | | 휴대폰: |
| 접수자(본부) | | 접수일자 | |
| 단말기번호 | | 배송일자 | |
| 수 리 구 분 | <input type="checkbox"/> 로그인 <input type="checkbox"/> 파손 <input type="checkbox"/> 액정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장애내역 (※구체적으로) | | | |
| 수리내역 (※업체) | 수리일자 | 20 . . . | 수리자 |
| | (※조치사항) | | |
| 위와 같이 수리내역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확인자 :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6호 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표

(제35조제1항 관련)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35조제2항(관련) 서명증명서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7호 서식]

3. 생년월일 :
2. 소속 :
1. 성명 :

3.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제34조제2항에 의거 위 사람의 비행경력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발급기관명/주소 : /

전화번호 : 010-1234-5678
발급자 :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장 (인)

297mm×210mm[백상자]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8호 서식]

일일 안전점검표(제39조제1항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 | |
|--------|------|
| 결 재 | 항공대장 |
| | |

점 검 사 항

결 과

1. 항공대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2. 항공기는 정상 가동하며 출동이 가능한가?
3. 항공기는 안전하게 정차되고 지상접지는 되었는가?
4.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장비의 관리 및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5. 점검표에 의한 항공기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는가?
6. 격납고 및 계류장 청결상태(FOD)는 양호한가?
7. 격납고 내 위험물 및 불필요한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8. 항공유 취급 및 급유시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9. 격납고 내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가?
10. 각종 안전지시가 잘 전파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11. 안전게시판은 잘 활용되고 있는가?
12. 유무선 출동시스템 및 AFTN 등 통신망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13. NOTAM 및 기상예보를 접수하여 관계자에게 전파하였는가?
14. 기타 안전 장애요소는 없는가?

개선 및 건의사항

점 검 관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9호 서식]

항공대원 일일 건강 점검표

(제39조제2항 관련)

| | | |
|----|-----|------|
| 결재 | 담당자 | 항공대장 |
| | | |

| 구분 | 과로/피로 | 음주 | 정서/심리 | 투약 | 질병 | 종합평가 |
|----|-------|------|-------|------|------|--------|
| 가 | 숙면 | 안마셨음 | 안정 | 미복용 | 좋음 | 비행가능 |
| 나 | 부족 | 약간마심 | 보통 | 지장없음 | 관심요망 | 제한적 가능 |
| 다 | 불면 | 취함 | 불안정 | 지장있음 | 나쁨 | 비행불가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0호 서식]

항공 안전시설 점검표(제41조제3항 관련)

| 점검일자 20 . . . | 담당자 | 팀장 | 대장 |
|---------------|-----|----|----|
| | | | |

| 구 분 | 관 리 내 용 | 상 태 | 비 고 |
|-----|-------------------------------------|-----|-----|
| 헬기장 | 1 헬기장표식은 선명한가? | | |
| | 2 활주로표면의 균열 여부 및 위험성은 없는가? | | |
| | 3 풍향지시기 상태는 양호한가? | | |
| | 4 시설표시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 | |
| | 5 등화시설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 |
| | 6 배수시설은 양호한가? | | |
| | 7 주위에 날릴만한 물건은 없는가? | | |
| | 8 주위에 신설된 장애물은 없는가? | | |
| | 9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가? | | |
| | 10 헬기장 보안시설 및 장비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 |
| | 11 접시설비는 양호한가? | | |
| 격납고 | 12 격납고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 | |
| | 13 항공기격납상태는 양호한가? | | |
| | 14 격납고바닥은 청결하며, 이물질은 없는가? | | |
| | 15 유조차는 제위치에 있으며, 주위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 | |
| | 16 각종장비류는 제위치에 있으며, 멈치장치는 되어 있는가? | | |
| | 17 소화전 및 소화기상태는 양호하며, 제위치에 있는가? | | |
| | 18 호이스트 작동상태는 양호하며, 제위치에 있는가? | | |
| | 19 누수되는곳은 없으며, 격납고 시설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 | |
| | 20 공구실 및 자재실은 청결하며,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가? | | |
| | 21 격납고 보안시설 및 장비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 |

특기사항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1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 | 보고 분야 구분 | |
|--|---|----------------------------------|------------------|
| (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 | | <input type="checkbox"/> 운항 | |
| (제48조제1항 관련) | | <input type="checkbox"/> 관제 | |
| ※ 작성방법: 해당항목에 √ 하세요. | | <input type="checkbox"/> 정비 | |
| | | <input type="checkbox"/> 객실 | |
| | |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기타 | |
| 1. 발생유형 | | | |
| 2. 호출부호 | 3. 등록기호 | | |
| 4. 항공기기종(또는 공항·항행시설 명칭) | | | |
| 5. 발생일시(L) | 년 월 일 시 분 | 6. 발생장소(공항) | |
| 7. 발생단계 | <input type="checkbox"/> 지상 <input type="checkbox"/> 이륙 <input type="checkbox"/> 출발 <input type="checkbox"/> 순항 <input type="checkbox"/> 접근 <input type="checkbox"/> 착륙 | | |
| 8. 비행구간 | | | 9. 비행고도 |
| 10. 당시기상 | | | |
| 11. 승객수 | 명 | 12. 승무원수 | 운항승무원 명, 객실승무원 명 |
| 13. 직책 | | | 14. 직책근무연수 |
| 15. 소지 자격 | | | |
| 16. 상황기술 | | | |
| 「항공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00 운항통제관 귀하 | | | |
| 접수번호는 번입니다. 보고서 제출 증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17. 보고자의 주소 (제출 증명서 발송용) | | | |
| 18. 보고자의 성명 | | 19. 보고자의 연락처 | |
| 210mm×297mm[백상지 80g/m ²] | | |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정 비 검 사 서(제52조제2항 관련)

| 작업 지시서 번호 | | 검사 종류 | 정기 | | 특별 | | 감항 |
|--------------|--|-------|----|--|----|--|----|
|--------------|--|-------|----|--|----|--|----|

| | | | |
|------|--|---------|---|
| 검사내용 | | 정비 소요시간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4호 서식]

항공기 일일(비행 전) 점검표(제52조제1항, 제3항 관련)

- 호 기 :
- 항공기 형식 :
- 점 검 일 자 :

| 담당자 | 팀장 | 대장 |
|-----|----|----|
| | | |

* 점검결과 상태에 따라 표시

(V = 양호, X = 불량)

| 점검사항 | 내 용 | 방 법 | 상 태 |
|-------------|---------------------|-----------|-----|
| 외부점검 | - 브레이크 압력 점검 | 작동검사 | |
| | - 항공기 전방 동체부분 외부 상태 | 육안검사 | |
| | - 전방유리 상태 | 육안검사 | |
| | - 전방착륙장치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조종실 문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오일 수준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화물실 문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주 회전의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착륙장치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엔진부분 상태 | 육안검사 | |
| | - 미부 회전의 계통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엔진부분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착륙장치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주회전의 계통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오일수준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화물실문 외부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조종실 문 상태 | 육안검사 | |
| 내부점검 | - 조종실 내부 상태 | 육안검사 | |
| | - 승객실 내부 상태 | 육안검사 | |
| | - 소화기 상태 점검 | 육안검사 | |
| | - 각종 전기전기장치 스위치 확인 | 육안검사 | |
| | - 페달정렬 상태 | 육안검사 | |
| | - 조종석 조절 상태 | 작동검사 | |
| | - 안전벨트 조절 상태 | 작동검사 | |
| POWER-ON 점검 | - 각종 스위치 상태 | 작동검사 | |
| | - 전기계기 작동 상태 | 작동검사 | |
| | - 연료량 상태 | 작동검사 | |
| | - 전원 스위치 OFF 확인 | 작동검사 | |
| | - 호이스트 상태 | 육안 및 작동검사 | |
| 구조·구급장비 점검 | - 구조장비(배낭) 적재 상태 | 육안 및 작동검사 | |
| | - 들것, 안전벨트 적재상태 | 작동검사 | |
| | - 구급장비(배낭) 적재 상태 | 육안 및 작동검사 | |
| | - 산소충전 상태 | 작동검사 | |
| | - 제세동기 충전상태 | 작동검사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4호 서식]

항공기 일일(비행 후) 점검표(제52조제1항, 제3항 관련)

호 기 :

| 담당자 | 팀장 | 대장 |
|-----|----|----|
| | | |

항공기 형식 :

점 검 일 자 :

※ 점검결과 상태에 따라 표시

(V = 양호, X = 불량)

| 점검사항 | 내 용 | 방 법 | 상 태 |
|---------------|-------------------------|-----------|-----|
| 내부점검 | - 조종간(Collective) 잠금 상태 | 육안검사 | |
| | - 폐달정렬 상태 | 육안검사 | |
| | - 제동장치 잠금 상태 | 육안검사 | |
| | - 연료량 잔량 확인 | 육안검사 | |
| | - 전원 스위치 OFF 확인 | 육안검사 | |
| 외부점검 | - 항공기 전방 동체부분 외부 상태 | 육안검사 | |
| | - 전방유리 상태 | 육안검사 | |
| | - 전방착륙장치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오일 수준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화물실 문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주 회전의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착륙장치 상태 | 육안검사 | |
| | - 좌측 엔진부분 상태 | 육안검사 | |
| | - 미부 회전의 계통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엔진부분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착륙장치 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주회전의 계통상태 | 육안검사 | |
| | - 우측 오일수준 상태 | 육안검사 | |
| | - 엔진 시스템 오일, 연료 누설흔적 | 육안검사 | |
| | - 호이스트 상태 | 육안검사 | |
| 구조·구급장비 점검 | - 구조장비(배낭) 소모품 교체 | 육안 및 작동검사 | |
| | - 들것, 안전벨트 오염물 세척 | 작동검사 | |
| | - 구급장비(배낭) 소모품 보충 | 육안 및 작동검사 | |
| | - 산소 잔량확인 및 교체 | 작동검사 | |
| | - 제세동기 충전 및 소모품 보충 | 작동검사 | |
| 비행결과 기록 | -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 기록유지 | |
| | - 비행시간기록부 기록 | 기록유지 |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5호 서식]

항공기 외주계약정비 입회감독일지(제53조제4항 관련)

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00일간)

| 결재 | 담당 | 항공대장 |
|----|----|------|
| | | |
| | | |
| | | |

검사정비 내용

| 구 분 | 분야 별 | 결 과 | | | 미해소 | 비고 |
|------|---------|------|------|------|-----|----|
| | | 작업내용 | 작업인원 | 소요인시 | | |
| 주기검사 | | | | | | |
| 상태결합 | | | | | | |
| 특이사항 | | | | | | |

자재 사용현황

| 연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요구성품 장,탈착 현황

| 연번 | 품 명 | 규 격 | 수량 | 탈 거 | | 장 착 | | 비고 |
|----|-----|-----|----|------|------|------|------|----|
| | | | | 일련번호 | 사용현황 | 일련번호 | 사용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비고: 정비결과는 작업내용과 자재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외 재생수리 결과는 수출·입 선적서류로 대체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6호 서식]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제55조제1항, 제2항 관련)

서울 호기
HL

탑재용 항공기 일지

20 년도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257mm×364mm[백상지 80g/m²]

| | | | |
|---------------|---|--|-----------|
| 항공기 | 등록부호 | | 등록년월일 |
| | 종류 | | 형식 |
| | 감항유별 | | 형식증명서번호 |
| | 감항증명서번호 | | 제작번호 |
| | 항공기제작자 | | 제작년월일 |
| 발동기 형식: | NO.1 일련번호 | | NO.2 일련번호 |
| | NO.1 장착일자 | | NO.2 장착일자 |
| | NO.1 장착시간 | | NO.2 장착시간 |
| M / R 형식: | NO.1 일련번호 | | NO.2 일련번호 |
| | NO.3 일련번호 | | NO.4 일련번호 |
| | NO.5 일련번호 | | NO.6 일련번호 |
| T / R 형식: | | | |
| | | | |
| M G B | 일련번호 | | 장착일자 |
| | 장착시간 | | 형식 |
| T G B | 일련번호 | | 장착일자 |
| | 장착시간 | | 형식 |
| 탑재용 항공일지 작성방법 | | | |
| 비행일지기록사항 | <p>가. DUTY CODE IP : INSTRUCTOR P : CAPTAIN CP : CO-PILOT SP : STUDENT FE : FLIGHT ENGINEER R : RESCUE I : INSPECTOR PA : PASSENGER</p> <p>나. 비행 중 결함은 정비일지 하단의 LEG NO.란에 발생한 LEG의 숫자로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p> <p>다. DUTY CODE의 CAPTAIN은 매 비행 전 PILOT ACCEPTED란에 서명해야 한다.</p> <p>라. ACTUAL TIME :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하는 순간부터 착륙(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FLIGHT TIME : 항공기가 엔진을 작동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엔진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p> | | |
| 정비일지기록사항 | <p>가. ENG OIL, G/B ; 그 날의 보급된 수량을 Q/T 또는 ℥로 기록한다.</p> <p>나. DATE ; DAY - MON - YEAR ((예) 01 - JAN - 07)로 기록한다</p> <p>※ 시험비행(Test Flight or Function Check Flight); 실시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p> <p>주: 비행 중 시험(Flight Test)은 구조 및 성능 등에 대하여 비행 중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p> | | |

257mm×364mm[백상지 80g/m²]

| 탑재용 항공일지 FLIGHT & MAINT LOG | | | | | | | A/C NO | 서울 호기 | | DATE | DAY MON YEAR | | 0 | 1 | |
|--------------------------------|-------------|-----------|-------------|---------------|------|-------------------|------------------|-------------|-------------------------------------|---------|-----------------|-----|------------|----|---------|
| | | HL | | | | | | 2 | 3 | | | | | | |
| 승무원 | | | 1 | 2 | 3 | 4 | 비행 목적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LEG | 비행 구간 | | FLIGHT TIME | | | ACTUAL TIME | | | 야간 | 계기 | CREW | | CAP'S | | |
| | FROM - TO | | R/O | R/I | F/T | T/O | L/D | A/T | TIM E | TIM E | T/O | L/D | SIG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TL: | | | | | | | | | | | | | | | |
| 항공기 시간 | | | L/D CYCLE | ENGINE TIME | | | 시동회수 Nf CYCLE | | Ng CYCLE | | RIN | CGO | HOIST | | |
| 전 일 | | | | 1. | 2. | | 1. | 2. | 1. | 2. | | | | | |
| 금 일 | | | | 1. | 2. | | 1. | 2. | 1. | 2. | | | | | |
| TTL | | | | | | | | | | | | | | | |
| A/C RELEASE RECORDS | | | | | | | FUEL | | | ENG OIL | G/B(Q/T) | | SERVICE BY | | |
| LEG | 점검 TYPE | 일자/ 시간 | 장소 | MAINT RELEASE | | PILOT ACCEPTED | GRADE | SV C | TTL | #1 | #2 | MGB | TGB | 장소 | 보급 자 |
| | | | | RELEASE | 면장번호 | | | | | | | | | | |
| | | | | | | JET A-1 | | | | | | | | | |
| 부 품 교환 기록 | | | | | | | | | | | | | | | |
| ITEM | 품명 | | PART NO | | | S/N ON | S/N OFF | POS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G NO. | ITEM NO. | 작업 및 결함사항 | | | | | | ITEM NO. | 수정사항 (장소, 일자, 서명, 면장번호, et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7호 서식]

결 함 (발생·해소) 보 고 서(제55조제1항·제2항 관련)

발행번호 :

| | | |
|-------|--------|--------|
| 항 공 기 | 호기 | |
| 기체시간 | | |
| 엔진시간 | NO 1 : | NO 2 : |

결함내용 :

추정원인 및 수정사항 :

향후대책 :

| | | |
|-----------|----|----|
| 년 | 월 | 일 |
| 검사자 | 계급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정 비 이 월 기 록 부(제55조제1항 관련)

(DEFER ITEMS RECORD)

A/C NO. : HL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9호 서식]

자장·탱크 & 금유장치 점검표(제60조 관련)

| 20 년 월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점검 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지하 TANK | Tank Sump Drain & 수분검사 (시약검사, 주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nk 누유상태 Tank 주변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 탱크 | Tank Sump Drain & 수분검사 (시약검사, 주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유호스 상태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즐상태 및 압력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료누유 상태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지선 접속상태 및 클램프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유 및 청소 상태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동장치의 오버라이드 유량계 S/W 및 보안상태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고 | «표기방법» V : 정상 △ : 수리요망(사용가능) O : 시정, 수리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터 교환주기» 지장탱크 : 년 년 유조차 : 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조종사 교육비행 평가표(제62조제5항 관련)

기종 :

평가일시 :

| 피평가자 성명 | | | 개인 총비행시간 | | | | | | | | |
|------------|----------------------|----|----------------------|---|--------------------------|----|----|--|--|--|--|
| 총 교육 비행시간: | | | 기본비행교육: 소방활동비행교육: | | | | | | | | |
| 단계 | 평가사항 | 배점 | 평점 | 단계 | 평가사항 | 배점 | 평점 | | | | |
| 기본비행교육 | 1.임무계획 | | | 소방활동비행교육 | 1.정찰요령 | | | | | | |
| | 2.비행전검사 | | | | 2.접근 및 착륙 | | | | | | |
| | 3.시동 및 시운전 | | | | 3.제자리비행 | | | | | | |
| | 4.제자리비행 | | | | 4.이륙 | | | | | | |
| | 5.정상 이착륙 | | | 인명구조 | 5.HOIST인명구조 | | | | | | |
| | 6.최대성능이륙/깊은각 접근 착륙 | | | | 6.구조낭인양 접근 착륙 및 인양이탈 | | | | | | |
| | 7.지면으로부터 이륙/얕은각 접근착륙 | | | | 7.구조낭운용 시 응급조치 | | | | | | |
| | 8.경사지/제한지 이륙 착륙 | | | | 8.Rescue Seat (수난 구조) 운용 | | | | | | |
| | 9.활주착륙/복행 | | | 산불진화 | 9.밤비버켓 운용 | | | | | | |
| | 10.자동비행장치 운용 | | | | 10.밸리탱크 운용 | | | | | | |
| | 11.야간비행 | | | 기타 | 11. | | | | | | |
| | 12.비상절차 | | | | 12. | | | | | | |
| | 13.무전교신 | | | | 13. | | | | | | |
| | 14.비행후 검사 | | | ※평점기준 수 : 91 ~ 100점 우 : 81 ~ 90점 미 : 71 ~ 80점 양 : 61 ~ 70점 가 : 60점 이하 | | | | | | | |
| 평가자 종합의견 | | | | | | | | | | | |
| 종합평점 | | | 수 우 미 양 가(해당 평점에 ○표) | | | | | | | | |

평 가 관 :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 항공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21호 서식]

정비사 정비교육 평가표(제64조제2항 관련)

기 종 :

평가일시 :

| | | | | | | | |
|---------|--|--|--|--|--|--|--|
| 피평가자 성명 | | | | | | | |
|---------|--|--|--|--|--|--|--|

| 총 정비교육시간 : | | | 정비교육 : 소방활동교육 : | | | | |
|------------|--|--|-----------------|--|--|--|--|
|------------|--|--|-----------------|--|--|--|--|

| 단계 | 평 가 사 항 | 배점 | 평점 | 단계 | 평 가 사 항 | 배점 | 평점 | | | | | | | |
|------------------|-------------------------|----|----|----------------------------|---|----|----|--|--|--|--|--|--|--|
| 정 비 교 육 | 1.항공기소개 | | | 소 방 활 동 교 육 | 1.지상안전 | | | | | | | | | |
| | 2.AIRFRAME | | | | 2.항공기유도 | | | | | | | | | |
| | 3.L/GEAR SYSTEM | | | | 3.비상시 처치방법 | | | | | | | | | |
| | 4.M/R SYSTEM | | | | 4.HOIST 작동법 | | | | | | | | | |
| | 5.T/R SYSTEM | | | | 5.RESCUE SEAT 운용요령 | | | | | | | | | |
| | 6.POWER TRAIN | | | | 6.구조낭 장착법 | | | | | | | | | |
| | 7.FUEL/OIL SYSTEM | | | | 7.구조낭 운용시 응급조치 | | | | | | | | | |
| | 8.HYDRAULIC SYSTEM | | | | 8.밤비버켓 장착 및 주의사항 | | | | | | | | | |
| | 9.R.E.I SYSTEM | | | | 9.밸리탱크 장착 및 주의사항 | | | | | | | | | |
| | 10.ENGINE SYSTEM | | | | 10. | | | | | | | | | |
| | 11.주기점검 시한성교환품 및 수리품 | | | 산 불 진 압 | ※평점기준 수 : 91 ~ 100점 우 : 81 ~ 90점 미 : 71 ~ 80점 양 : 61 ~ 70점 가 : 60점 이하 | | | | | | | | | |
| | 12.항공법/정비문서관리 | | | | | | | | | | | | | |
| | 13.지상장비소개 및 작동법 | | | | | | | | | | | | | |
| | 14.정비행정/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자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종합평점 | 수 우 미 양 가 (해당평점에 ○표) | | | | | | | | | | | | | |

평 가 관 :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

항공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232호) 전부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 법규에 맞게 전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장 및 부기장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 마련

항공기 운항과 관련 기장의 권한과 책임 및 부기장의 임무수행 근거 마련(안 제6조)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및 보고기한 기준 마련 (안 제7조, 제9조)

다. 조종·정비사 자격을 심의하여 보직 변경 근거 마련

1)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합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2)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보직변경 (안 제12, 제13조)

라. 항공기의 긴급운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운항 시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 및 출동지령 후 비행지시서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및 역할(안 제18조)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및 역할 근거 마련

바. 비행제한 기상 기준의 정비(안 제21조)

국가기관별로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

사. 특수한 조건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준 명시(안 제22조)

1) 야간 산악수색구조임무 수행에 대비하여 야간 비행보조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2) 해상 및 담수지 운항 항공기에 부유장치 장착, 구명장비 비치 및 착용과 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안 32조)

항공기의 위치 모니터링 등 운항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입된 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

자. 항공안전 의무보고, 자율보고 등 근거 마련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와(안 제47조)

2) 1)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때'의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근거 마련(안 제48조)

차. 항공대의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49조, 제50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83호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사무국 조직·운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사무국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국에 두는 심사관 및 조사관의 담당 사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무국 직원 중 지명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 마. 분쟁조정시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자료제공의 범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4조제3항)
- 바. 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2133-7705, FAX : 2133-0752, E-mail : lhw9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98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자격 중 자산 기준 삭제

- 상위 법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면서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의 자산 기준 삭제

나. 그 밖에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71, FAX: 02-2133-0756, E-mail: justitia@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2호('17. 4. 20.)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07호('17. 6. 29.)로 열람공고 된 강북구 수유동 산 84-5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사업시행위치 : 강북구 수유동 산 84-5번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 다. 사업의 명칭 :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 라. 사업 규모 : 배수지 총설 $3,100\text{m}^3$, 조경 496m^2
- 마. 면적 : $3,197\text{m}^2$
- 바.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7. ~ 2019. 12.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따로붙임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3146-14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타. 용지 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사용 또는 수용면적 (m^2)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성 명 | 주 소 | |
| 계 | | 1필지 | | $3,197$ | | | |
| 1 | 강북구 수유동 | 산84-5 | 수도 | $3,197$ | 서울특별시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3호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2010.9.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2011.9.22.)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2011.12.29.)로 1지구, 2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2011.12.29.)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2012.10.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2013.7.25.)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2013.11.14.)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3호(2014.5.8.)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7호(2014.7.3.)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3호(2014.12.26.)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0호(2015.5.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4호(2016.12.29.)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61호(2017.5.4.)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구역명 | 위치 | 면적(m ²) | 비고 |
|-----------|------------------|---------------------|----|
| 마곡 도시개발구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 3,665,783 | |

라. 시행자: 변경없음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마. 시행기간: 변경없음
1) 2007년 12월 28일~2018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지구분할: 변경없음

(단위 : m²)

| 구 분 | 1지구 | 2지구 | 3지구 |
|--------|-----------|-----------|---------|
| 사업지구분할 | 1,066,199 | 1,902,488 | 697,096 |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5) 흙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 당 초 | | | | 변경 | | | | 비고 | | | |
|------------|-------|-------|------------------------------|------------|-------|-------|---|----|--|--|--|
| (1) 단독주택용지 | | | | (1) 단독주택용지 | | | | | | | |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 |
| R | R1~R4 | 1지구 | R1~R4 | R | R1~R4 | 1지구 | R1~R4 | | | | |
| | | 2지구 | - | | | 2지구 | - | | | | |
| | | 3지구 | - | | | 3지구 | - | | | | |
| | | 허용 용도 |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 : 3가구이내) | | | 허용 용도 |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변경> -다가구주택 : R1-2,R2-2,(3가구) R3-2~4, R4-1~2 -다가구주택 : R1-1,R1-3,R1-4,(5가구) R2-1, R2-3,R3-1,<변경> R3-5,R4-3 | | | | |
| | | | | | | | | | | | |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 | | | | | | | | | | | |
| | | 건폐율 | 60%이하 | | | 건폐율 | 60%이하 | | | | |
| | | 용적률 | 150%이하 | | | 용적률 | 150%이하 | | | | |
| | | 높이 | 3층이하 | | | 높이 | 3층이하 | | | | |
| | | 배치 | - | | | 배치 | - | | | | |

| 당 초 | | | | 변경 | | | | 비고 |
|----------|-----------|-----|--|----------|-----------|-----|--|----|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R | R1~ R4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변(소1~8, 소2~25, 소2~26) : 1m - 경관녹지변(경관녹지 7, 8) : 1m - 구역경계변 : 1m - 소공원변 : 1m - 편의시설용지(S4) : 1m | R | R1~ R4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변(소1~8, 소2~25, 소2~26) : 1m - 경관녹지변(경관녹지 7, 8) : 1m - 구역경계변 : 1m - 소공원변 : 1m - 편의시설용지(S4) : 1m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 |

자.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 없음

※ 도서 참조(고시문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문은 생략)

| 당 초 | | | | 변경 | | | | 비고 | |
|-----|----------------|-----------|--|-----|----------------|--|--|----|--|
| 구 분 | 허용용도 | | | 구 분 | 허용용도 | | | | |
| A | 단독 주택 용지 | R1~ R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 : 3가구이내) | A | 단독 주택 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 : 3가구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변경〉 -다가구주택 : R1-2, R2-2, R3-2~4, (3가구) R4-1~2 -다가구주택 : R1-1, R1-3, R1-4, (5가구) R2-1, R2-3, R3-1, 〈변경〉 R3-5, R4-3 | | |
| | | | | | | | | | |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4조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수
단독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최대 3가구로 한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4조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수
단독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아래와 같이 최대 5가구**〈변경〉**로 한정한다.

-다가구주택(3가구) : R1-2, R2-2, R3-2~4,
R4-1~2

-다가구주택(5가구) : R1-1, R1-3, R1-4,
〈변경〉 R2-1, R2-3, R3-1,
R3-5, R4-3

-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02-2133-153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02-2600-5280)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단(☎ 02-3410-7686)
-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4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62호(2016.7.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반포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다. 면적

| 구분 | 지구명 | 위치 | 면적(m^2)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기정 | 반포 아파트지구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1,548,924.6 m^2 | - | 1,548,924.6 m^2 | |

2. 주요 변경내용

가.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4.19) 결과(수정 가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 일부 변경

3.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 면적표

| 구분 | 합계 | 1주구 | 2주구 | 3주구 |
|-----|--------------|------------|------------|------------|
| 변경전 | 1,548,924.6㎡ | 238,490.9㎡ | 388,886.8㎡ | 921,546.9㎡ |
| 변경후 | 1,548,924.6㎡ | 238,490.9㎡ | 388,886.8㎡ | 921,546.9㎡ |
| 비고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2)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

| 구 분 | 기 정 | | 변경 후 | | 비고 |
|----------------------|--------------|------------|--------------|------------|----------------------|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 계 | 1,548,924.60 | 100.0 | 1,548,924.60 | 100.0 | 변경 없음 |
| 주거 용지 | 소 계 | 941,061.26 | 60.8 | 936,850.56 | 60.5 감) 4,210.70㎡ |
| | 주택용지 | 941,061.26 | 60.8 | 936,850.56 | 60.5 감) 4,210.70㎡ |
| 중심 시설 용지 | 소 계 | 95,852.30 | 6.2 | 95,852.30 | 6.2 변경 없음 |
| | 지구중심 | 37,698.50 | 2.4 | 37,698.50 | 2.4 변경 없음 |
| | 주구중심 | 23,965.80 | 1.6 | 23,965.80 | 1.6 변경 없음 |
| | 분구중심 | 34,188.00 | 2.2 | 34,188.00 | 2.2 변경 없음 |
| 도시 계획 시설 용지 | 소 계 | 501,161.74 | 32.3 | 501,360.44 | 32.3 증) 198.70㎡ |
| | 도로용지 | 228,184.54 | 14.7 | 228,184.54 | 14.7 변경 없음 |
| | 공원용지 | 56,568.50 | 3.6 | 59,733.20 | 3.8 증) 3,164.70㎡ |
| | 녹 지 | 72,549.70 | 4.7 | 69,583.70 | 4.5 감) 2,966.00㎡ |
| | 광 장 | 972.90 | 0.1 | 972.90 | 0.1 변경 없음 |
| | 학교용지 | 131,617.60 | 8.5 | 131,617.60 | 8.5 변경 없음 |
| 기타 | 공공청사 | 11,268.50 | 0.7 | 11,268.50 | 0.7 변경 없음 |
| | 소 계 | 10,849.30 | 0.7 | 14,861.30 | 1.0 증) 4,012.00㎡ |
| | 종교용지 | 10,849.30 | 0.7 | 10,849.30 | 0.7 변경 없음 |
| 문화시설 | 문화시설 | - | - | 4,012.00 | 0.3 증) 4,012.00㎡ |

-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2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 | 기 정 | | 변경 후 | | 비고 |
|----------------------|------|---------------------|-------|---------------------|-------|---------------------------|
| | | 면적(m ²) | 비율(%) | 면적(m ²) | 비율(%) | |
| 계 | | 921,546.90 | 100.0 | 921,546.90 | 100.0 | 변경 없음 |
| 주거 용지 | 소 계 | 579,786.36 | 62.9 | 575,575.66 | 62.5 | 감) 4,210.70m ² |
| | 주택용지 | 579,786.36 | 62.9 | 575,575.66 | 62.5 | 감) 4,210.70m ² |
| 중심 시설 용지 | 소 계 | 35,060.70 | 3.8 | 35,060.70 | 3.8 | 변경 없음 |
| | 지구중심 | - | - | - | - | 변경 없음 |
| | 주구중심 | 8,243.10 | 0.9 | 8,243.10 | 0.9 | 변경 없음 |
| | 분구중심 | 26,817.60 | 2.9 | 26,817.60 | 2.9 | 변경 없음 |
| 도시 계획 시설 용지 | 소 계 | 302,807.84 | 32.8 | 303,006.54 | 32.9 | 증) 198.70m ² |
| | 도로용지 | 154,153.14 | 16.7 | 154,153.14 | 16.7 | 변경 없음 |
| | 공원용지 | 33,027.30 | 3.6 | 36,192.00 | 4.0 | 증) 3,164.70m ² |
| | 녹 지 | 43,840.00 | 4.8 | 40,874.00 | 4.4 | 감) 2,966.00m ² |
| | 광 장 | 972.90 | 0.1 | 972.90 | 0.1 | 변경 없음 |
| | 학교용지 | 64,196.80 | 7.0 | 64,196.80 | 7.0 | 변경 없음 |
| | 공공청사 | 6,617.70 | 0.7 | 6,617.70 | 0.7 | 변경 없음 |
| 기타 | 소 계 | 3,892.00 | 0.4 | 7,904.00 | 0.8 | 증) 4,012.00m ² |
| | 종교용지 | 3,892.00 | 0.4 | 3,892.00 | 0.4 | 변경 없음 |
| | 문화시설 | - | - | 4,012.00 | 0.4 | 증) 4,012.00m ² |

나.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

- 1) 용도규제 : 변경 없음
- 2) 건축선의 지정 : 변경
 - 1주구(변경 없음)
 - 2주구(변경 없음)
 - 3주구(변경)
- ▶ 건축한계선
 - 나루터로4길변 : 6m 이격
 - 그 외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3) 건폐율 규제 : 변경 없음
- 4) 용적률 규제 : 변경 없음
- 5) 세대밀도 : 변경 없음
- 6)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 7)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변경 없음

- 8)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 변경 없음
 9)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 변경 없음

다.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계획 : 변경

- 1) 지구중심 : 변경 없음
 2) 주구중심 : 변경
 - 주구중심 구분 및 면적

| 구분 | 계 | | 1주구 | | 2주구 | | 3주구 | | 비고 |
|-----|--------|---------------------|-----|---------------------|-----|---------------------|--------|---------------------|----|
| | 개소 | 면적(m ²) | 개소 | 면적(m ²) | 개소 | 면적(m ²) | 개소 | 면적(m ²) | |
| 변경전 | 9 | 23,965.8 | 3 | 8,445.2 | 2 | 7,277.5 | 4 | 8,243.1 | |
| 변경후 | 8 | 23,965.8 | 3 | 8,445.2 | 2 | 7,277.5 | 3 | 8,243.1 | |
| 비고 | 감) 1개소 | - | - | - | - | - | 감) 1개소 | 통합배치 (규모 동일) | |

※ 정비구역 확대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기존 주구중심을 통합 배치하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

- 용도 : 변경 없음
- 층수 : 변경 없음
- 건폐율 : 변경 없음
- 용적률 : 변경 없음
- 3) 분구중심 : 변경 없음
- 4) 기타건축물 : 변경 없음

라.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마. 경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바.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사. 사업시행계획 : 변경 없음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m ²)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 144,972.1 | 증)13,583.7 | 158,555.8 | |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구 분 | 면 적 (m ²)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158,555.8 | - | 158,555.8 | 1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8,555.8 | - | 158,555.8 | 100.0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 면 적 (m ²)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144,972.1 | 증) 13,425.7 | 158,555.8 | 100.0 | • 녹원한신 및 베니하우스 통합개발 동의에 따라 사업구역 확대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21,064.0 | 증) 2,816.0 | 24,038.0 | 15.2 |
| | 도로 | 10,006.0 | 증) 2,617.3 | 12,623.3 | 8.0 |
| | 공원 | 6,500.0 | 증) 3,164.7 | 9,664.7 | 6.1 |
| | 녹지 | 4,716.0 | 감) 2,966.0 | 1,750.0 | 1.1 |
| 주택용지 | 115,486.5 | 증) 6,597.7 | 122,084.2 | 77.0 | • 구역확대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에 따라 주택용지 면적 변경 |
| 중심 생활 시설 용지 | 소계 | 8,421.6 | - | 8,421.6 | 5.3 |
| | 주구중심1 | 1,828.0 | - | 4,493.0 | 2.8 |
| | 주구중심2 | 2,665.0 | | | |
| | 분구중심 | 3,928.6 | - | 3,928.6 | 2.5 |
| 기타 | 문화시설 | - | 증) 4,012.0 | 4,012.0 | 2.5 |
| | | | | | • 문화시설을 별도 획지로 구분하여 기부채납(토지+건축물)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 결정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종로 | 1 | A | 20 | 집산 도로 | 1,386 (424) | 잠원동 84 | 잠원동 104 | 일반 도로 | - | (2008. 11. 13.) | |
| 기정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92 (38) | 잠원동 104-8 | 잠원동 103 | 일반 도로 | - | (2008. 11. 13.) | |

※ 연장의 ()는 구역 내 수치임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㉗ | 공원 | 소공원 | 잠원동 58-24일원 | 2,500.0 | 증)3,198.5 | 5,698.5 | 서울시고시 제1685호 (1995. 5. 20.) | 공원위치이동 및 면적 변경 |
| 변경 | ㉘ | 공원 | 소공원 | 잠원동 60-6일원 | 2,000.0 | 증)280.0 | 2,280.0 | 서울시고시 제1685호 (1995. 5. 20.) | 공원위치이동 및 면적 변경 |
| 변경 | ㉙ | 공원 | 소공원 | 잠원동 60-3일원 | 2,000.0 | 감)313.8 | 1,686.2 | 서울시고시 제1685호 (1995. 5. 20.) | 공원형태 및 면적 변경 |

○ 공원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㉗ | 소공원 | •공원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 위치 : 잠원동 58-22 ⇒ 58-24 - 면적 : 2,500.0m ² ⇒ 5,698.5m ² | •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사업구역 남측 경계부로 이동 및 면적 확대 |
| ㉘ | 소공원 | •공원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 위치 : 잠원동 60-3 ⇒ 60-6 - 면적 : 2,000.0m ² ⇒ 2,280.0m ² | •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사업구역 북측 경계부로 이동 및 면적 확대 |
| ㉙ | 소공원 | •공원형태 및 면적변경 - 면적 : 2,000.0m ² ⇒ 1,686.2m ² | • 구역 확장 및 주구중심 통합에 따라 공원형태 및 면적 조정 |

-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㉛ | 녹지 | 완충녹지 | 잠원동 60-3 일원 | 6,068.8 | 감)4,217.4 | 1,851.4 | 서울시고시 제2885호 (1981. 11. 13.) | |
| | ㉜ | 녹지 | 완충녹지 | 잠원동 58-22 일원 | - | 증)1,750.0 | 1,750.0 | - | |

※ 완충녹지(㉜) 면적은 구역 내 면적임

○ 녹지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⑪ | 녹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내 완충녹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68.8㎡ → 1,851.4㎡ (감 4,217.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상지 내 완충녹지 폐지 건축한계선(6m)을 지정하여 기존의 완충녹지 지정 취지는 유지 (대지 내 공지로 활용) |
| ⑫ | 녹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추가 확보(1,7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의 폭원유지를 위해 구역 동남측으로 완충녹지 추가 확보 |

4) 비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구분 | 문화시설 | |
|------|----------|-----------|
| | 부지면적(㎡) | 연면적(㎡) |
| 부지 내 | 4,012.00 | 25,13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부지 내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구분 | | 기준근거 | 기준(㎡) | 계획(㎡) | 비고 |
|---------|--------|---|-------------|------------|-------------------------|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191.75㎡ 이상 | 191.75㎡ 이상 | 461.41㎡ | - |
| 주민 공동시설 |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에 1.25배한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 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9,837.5㎡ 이상 | 14,231.88㎡ | 주민공동시설 (건축물) 전체면적 |
| | 경로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500㎡ 이상 | 500㎡ 이상 | 607.28㎡ | - |
| | 어린이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725㎡ 이상 | 725㎡ 이상 | 2,145.29㎡ | - |
| | 작은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298㎡ 이상 | 298㎡ 이상 | 524.18㎡ | - |
| | 주민공동시설 | - | - | 7,850.95㎡ | - |
| | 경비실 | - | - | 220.00㎡ | - |
| | 유치원 | - | - | 2,884.18㎡ | - |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비고 |
|-------|------------------------|---------------------|----------------------|-----------|---------------|----|--------|-------|----|
| | 명칭 | 면적(m ²)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144,972.1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 | 27 | 1 (뉴타운 상가) | - | 26 | - | |
| 변경 |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158,555.8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 | 30 | 1 (뉴타운 상가) | - | 29 | - | |

※ 존치 1동은 분구중심 내 뉴타운상가임

나) 건축시설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토지이용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칭 | 면적(m ²) | 명칭 | 면적(m ²) | | | | 정비계획 | 예정법적상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정 |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144,972.1 | 주택용지 | 115,486.5 | 잠원동 60-3번지 일원 | 주택용지 | 200이하 | 279.150이하 | - | 35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구중심1 | 1,828.0 | | 주구중심 | 50이하 | 250 이하 | - | 5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구중심2 | 2,665.0 | | 주구중심 | 50이하 | 250 이하 | - | 5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구중심 | 3,928.6 | | 분구중심 | 존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158,555.8 | 주택용지 | 122,084.2 | 잠원동 60-3번지 일원 | 주택용지 | 200이하 | 278.68이하 | 299.99이하 | 35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구중심 | 4,493.0 | | 주구중심 | 50이하 | 250 이하 | - | 5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구중심 | 3,928.6 | | 분구중심 | 존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27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 (전용면적)</th> <th>세 대 수</th> <th>비 율(%)</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3,685</td> <td>100.0</td> <td></td> </tr> <tr> <td>45m²이하</td> <td>240</td> <td>6.5</td> <td>소형주택 206세대 포함</td> </tr> <tr> <td>60m²이하</td> <td>1,437</td> <td>39.0</td> <td></td> </tr> <tr> <td>60~85m²이하</td> <td>1,589</td> <td>43.1</td> <td></td> </tr> <tr> <td>85m²초과</td> <td>419</td> <td>11.4</td> <td></td> </tr> </tbody> </table> | | | | | | | | | | 구 분 (전용면적) | 세 대 수 | 비 율(%) | 비 고 | 합계 | 3,685 | 100.0 | | 45m ² 이하 | 240 | 6.5 | 소형주택 206세대 포함 | 60m ² 이하 | 1,437 | 39.0 | | 60~85m ² 이하 | 1,589 | 43.1 | | 85m ² 초과 | 419 | 11.4 | |
| 구 분 (전용면적) | 세 대 수 | 비 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3,685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m ² 이하 | 240 | 6.5 | 소형주택 206세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m ² 이하 | 1,437 | 3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85m ² 이하 | 1,589 | 4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m ² 초과 | 419 | 1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m²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8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계획용적률(278.68%)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99%) ⇒ 임대주택 용적률 : (299.99% - 278.68%) / 2 = 10.6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3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심의 완료(2017년 4월 19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루터로4길변 : 6m 이격 - 그 외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구역구분 | | 토지이용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 | | |
|------|---------|--|------|----------------------|----|-----|---------|--------|--------|--------|----|--|--|--|--|--|
| | 명칭 | 면적 (m ²) | 명칭 | 면적 (m ²) | | | | 정비계획 | 예정법적상한 | | | | | | | |
| 기타사항 | 전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루터로4길변 건축한계선으로 후퇴되는 부분(6m)은 전면공지로 조성(보도연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조성으로 보행공간 확보 •조성지침 준수시 공개공지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차 남측 지역은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하는 전면공지 중 2.5m를 보도로 조성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반포로 33길변 건축한계선으로 후퇴되는 부분(3m)은 보도로 조성 | | | | | | | | | | | | | | |
| | 공공보행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중앙 통경축을 활용하여 20m 범위 내 최소 6m 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 | | | | | | | | | | | | | |
| | 단지내 통경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중앙부에 단지내 통경축 최소 20m 이상 확보 | | | | | | | | | | | | | | |
| | 지구 통경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대상지를 통과하는 지구통경축(대상지 북동측)은 최소 15m 이상 확보 | | | | | | | | | | | | | | |

다) 용적률 산정

| 구분 | 산정내용 | | | | |
|---|--------|-------------------------|-------------------------|------------------------|-----------------------|
| | 토지이용계획 | 정비구역면적 | 획지(주택용지)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 |
| | | | | 토지 | 건축물(환산부지면적) |
| | | 158,555.8m ² | 122,084.2m ² | 28,050.0m ² | 4,244.0m ²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부담 면적 = 계획기반시설 면적($20,795.8\text{m}^2 + 11,498.1\text{m}^2$) – 기존기반시설 면적($11,498.1\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기반시설 면적(908.5m^2) = $19,897.3\text{m}^2$ • 순부담 비율 = $\{(계획기반시설 + 공공시설 설치 환상 부지면적) - 존치되는 기반시설(국공유지)\} / (\text{사업구역면적} - \text{존치되는 기반시설(국공유지)}) \times 100\%$ = $\{(28,050.0\text{m}^2 + 4,244.0\text{m}^2) - 11,498.1\text{m}^2\} / (158,555.8\text{m}^2 - 8,421.6\text{m}^2 - 11,498.1\text{m}^2) \times 100\%$ = 15.00%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 연면적 : $25,131\text{m}^2$, 토지 : $4,012\text{m}^2$ - 환산부지면적 = 공사비(문화 및 집회시설)1) × 연면적 ÷ 부지가액 = $2,698,000\text{원}/\text{m}^2 \times 25,131\text{m}^2 \div 15,974,880\text{원}/\text{m}^2 = 4,244\text{m}^2$ <p>※ 1) 2015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서울시) 중 문화 및 집회시설 단가 적용 ※ 부지가액(원/m²) : 2015년 기준 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7,987,440\text{원}/\text{m}^2 \times 2\text{배}$)</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허용)용적률 = 230% • 정비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times \alpha)$ = $230\% \times (1+1.3 \times 0.1628)$ = 278.68%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9% 이하(⇒건축계획(안)의 용적률 299.99%) | | | | | |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사업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2,898세대 계획 : 3,685세대 (증) 787세대 | 6:4재건축 적용 |

※ 세대수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구분 | 가구 | 면적(m ²) | 획지 구분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m ²) | |
| 합계 | | 134,517.8 | - | | 134,517.8 |
| 획지 | 주택용지 | 122,084.2 | 잠원동 60-3번지 일원 | 122,084.2 | 주택용지 |
| 획지 | 주구중심 | 4,493.0 | | 4,493.0 | 주구중심 |
| 획지 | 분구중심 | 3,928.6 | | 3,928.6 | 분구중심 |
| 획지 | 문화시설 | 4,012.0 | | 4,012.0 | 문화시설 |

11)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립위치 | 부지면적(m ²) | 세대수 | 세대규모 | | 비고(연면적) |
|------------------|-------------------------|-------|---------------------|---------------------|---|
| | | | 전용 | 공급 | |
| 잠원동 60-3번지 일원 | 158,555.8m ² | 206세대 | 43.33m ² | 63.25m ² | 계획 : 13,029.5m ² (기준 : 13,014.2m ² 이상) |

○ 산출근거

| 구분 | 산출근거 | | 용적률(%), 면적(m ²) | 비고 |
|----------------------|---|--|--------------------------------|------------------------|
| 기준용적률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 230% | |
| 정비계획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 α) = 230% × (1+1.3 × 0.1628) | | 278.68% | |
|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 299.99% | |
| 소형 주택 면적 산정 |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99.99% - 278.68% | | 21.31% |
| | 증가된 용적률의 50% | •21.31% × 50% | | 10.66% |
| | 의무연면적 |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의 1/2이상 = 122,084.2m ² × 10.66% | | 13,014.2m ² |
|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 계획 | •계획연면적 = 63.25m ² × 206세대 | | 13,029.5m ² | |

5.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구역계 : 158,633.8m²

- 정비기반시설계획

: 토지(16,563.8m²) - 도로, 공원, 녹지, 문화시설: 시설(4,244.0m²) - 문화시설※ 추가된 문화시설(1,878m²)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금회 결정된 순부담율(15%) 하에서 타 시설로의 변경 필요성 검토

▶ 조건사항

- 대상지 동측 완충녹지의 추가 확보계획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완충녹지 내 현황 산책로와 대상지 내·외부 특히 남측 도로가 일체적으로 연계되는 보행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비치도서와 같음)

7.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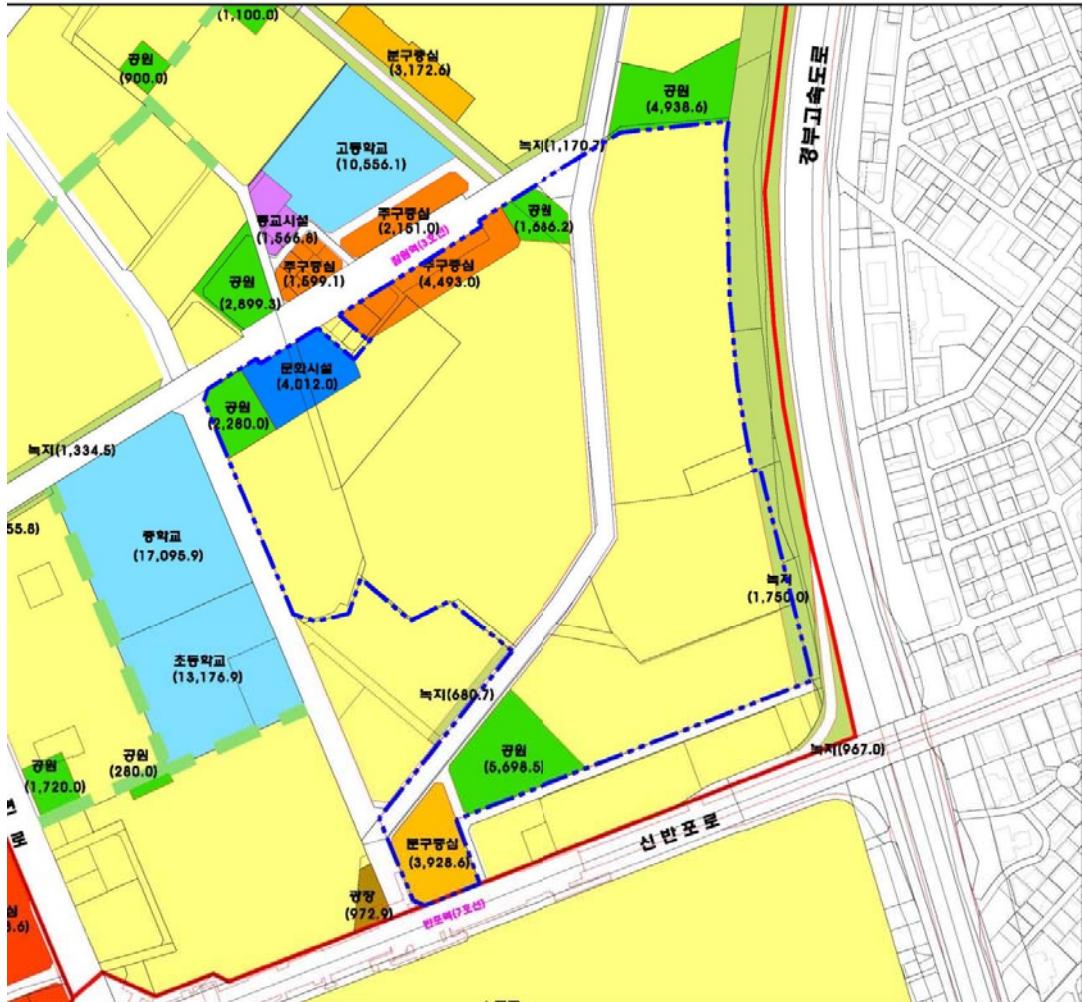
<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 토지이용 계획도 (기정) >



<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 토지이용 계획도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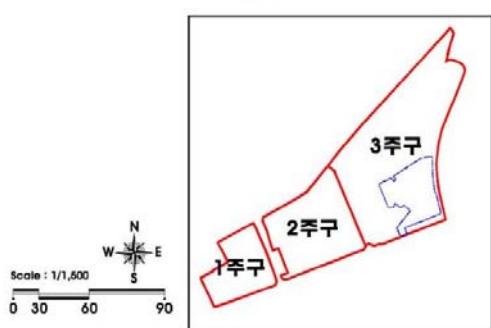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3주구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범례

- | | |
|------|-------|
| 주민경계 | 공원 |
| 구역경계 | 녹지 |
| 주택용지 | 광장 |
| 지구중심 | 종교시설 |
| 주민중심 | 문화시설 |
| 분구중심 | 단지내보도 |
| 학교 | |

■ 색인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2003.11.18)호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2005.03.03)호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2006.06.29) 지구변경(확장) 지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2008.12.11)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2010.03.18)호로 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014.01.23)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2014.07.03.)호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2016.03.31)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 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m^2) | | | 비 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계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 기존 주거지형 확장 |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 938,175.7 | - | 938,175.7 | - |
| | | | 578,607.7 | - | 578,607.7 | |
| | | | 359,568.0 | - | 359,568.0 | |

- 나.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 마. 사업시행계획 (변경)
 - 기존지구 (변경없음)
 - 확장지구 (변경)
 - 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2)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존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

| 구 분 | 면적(m ²) | 내용 | 호수 | 사업방식 | 비 고 |
|----------------|---------------------|--------|------------|------|------------------|
| 존치 관리 구역 | 합계 | 75,167 | - | - | - |
| | ① | 2,001 | 미아5동 성당 | 3 | 존치관리구역 개별건축허가 |
| | ② | 5,299 | 성우 APT | 216 | 존치관리구역 개별건축허가 |
| | ③ | 20,406 | 동부 APT | 482 | 존치관리구역 개별건축허가 |
| | ④ | 187 | 보육시설(건축허가) | 1 | 존치관리구역 개별건축허가 |
| | ⑤ | 25,597 | 영훈학교 | 7 | 존치관리구역 개별건축허가 |
| | ⑥ | 1,467 | 482-2번지 일대 | 8 | 존치관리구역 개별건축허가 |
| | ⑦ | 11,048 | 460번지 일대 | 309 | 존치관리구역 지침 변경 |
| - | 9,162 | 기준도로 | - | - | - |

※ 존치관리7구역 지침 내용

| 구 分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 최소필지규모 | 90m ² | - | 폐지 |
| 최대필지규모 | 660m ² | 좌동 | 변경없음 |
| 권장용도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 폐지 |
| 불허용도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좌동 | 변경없음 |
| 건폐율/용적률 | 60%/200% | 좌동 | 변경없음 |
| 최고높이 | 5층/20M | 좌동 | 변경없음 |
| 건축한계선 | • 도봉로15길 : 5m • 솔샘로64,68길 : 3m | • 도봉로15길 : 1m • 솔샘로64,68길 : 1m | 건축한계선 축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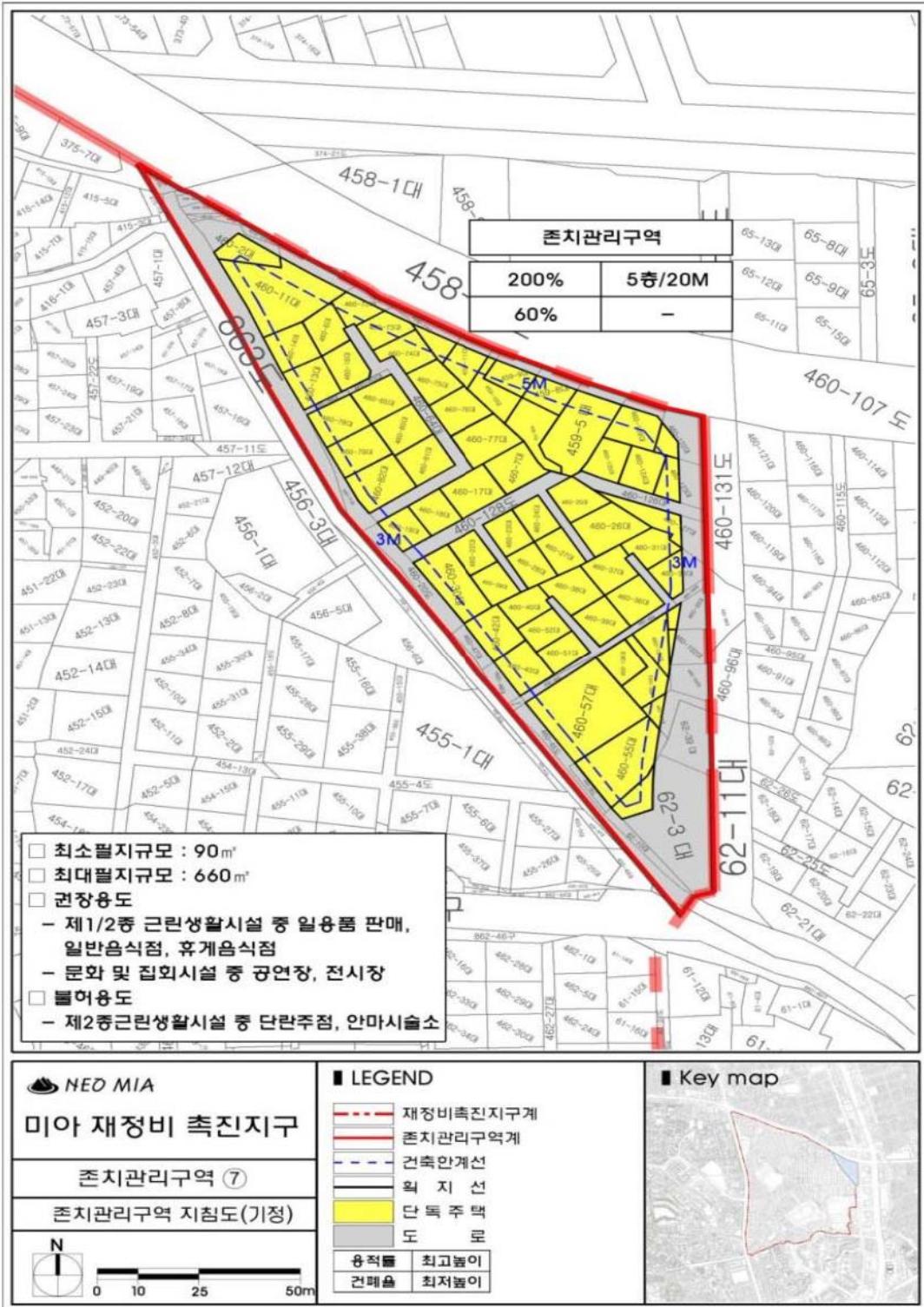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사.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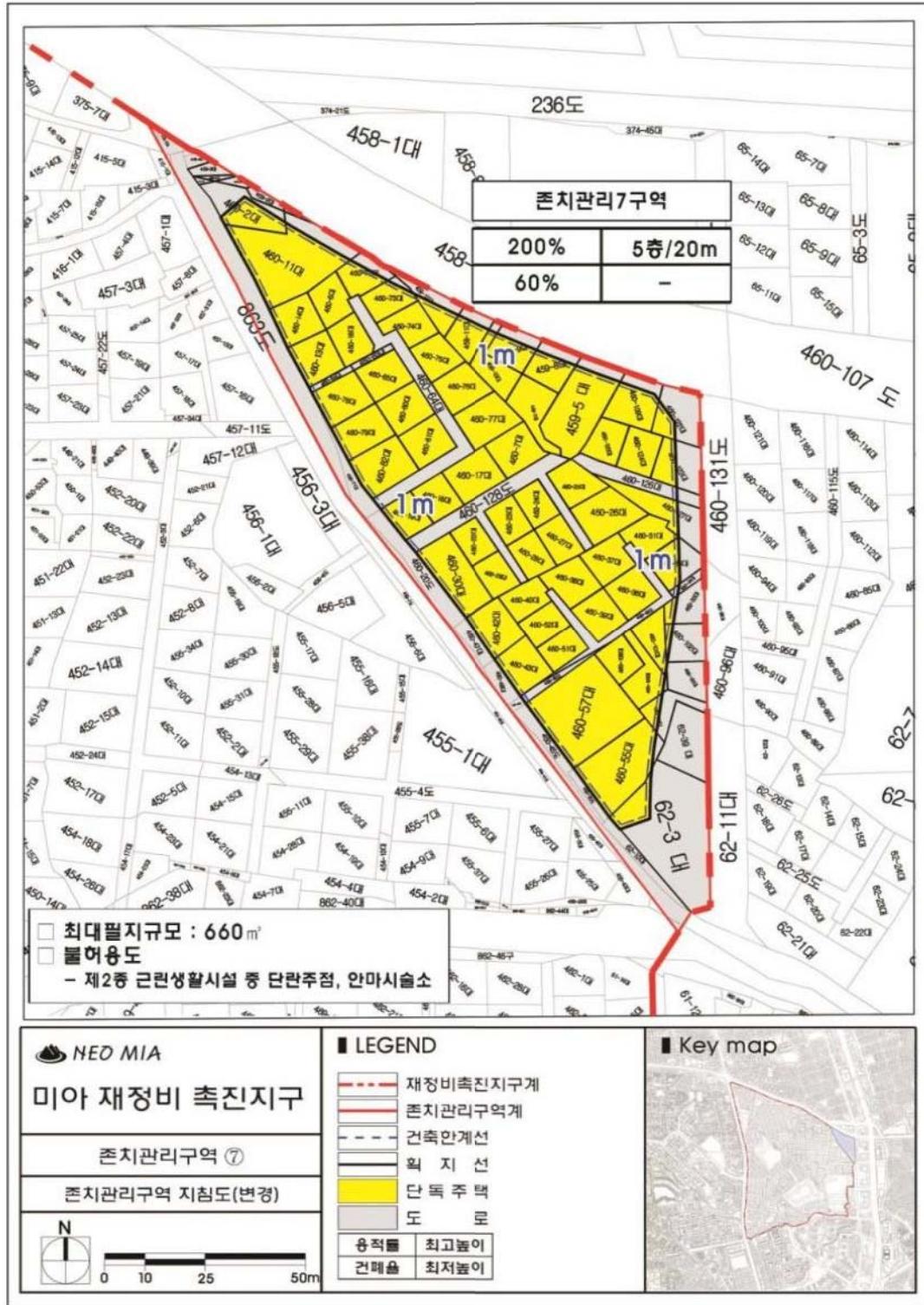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7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6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7구역 지침도(기정)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7구역 지침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6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및 숭인동 일대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동대문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하여 도시관리수단의 부재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 및 현실에 맞는 발전적 유도적 도시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m ²)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 - | 증)39,154.0 | 39,154.0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구분 | 구역명 | 내용 | 결정사유 |
|----|-----------------|---|--|
| 신설 |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 면적 : 39,154.0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동대문지구단위계획 해제로 종로변 도시관리수단의 부재 - 간선가로변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적·유도적 도시관리수단 마련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 | 면 적 (m ²) | | | 구성비(%)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합 계 | | 39,154.0 | - | 39,154.0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85.0 | - | 1,485.0 | 3.8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16.0 | - | 7,616.0 | 19.5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5.0 | - | 535.0 | 1.4 | |
| | 준주거지역 | 20,326.0 | - | 20,326.0 | 51.8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9,192.0 | - | 9,192.0 | 23.5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미관지구 결정조서

| 구 分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 고 |
|-----|------------|--------|---------|---------------------|----------------|-------|-----------------------|-----|
| 기 정 | 미관지구 (종로변) | 중심지 | 동대문~청량리 | 88,800 (8,754) | 3,700 (739) | 12 | 1972.8.14. (건고350)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방화지구 결정조서

| 구 分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 고 |
|-----|------------|--------|---------|---------------------|-------|-------|------------------------|-----|
| 기 정 | 방화지구 (종로변) | - | 동대문~청량리 | 84,720 (8,764) | (739) | 12 | 1963.12.13. (건고727)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 구분 | 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m ²)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m ²)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m ²)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m ²) |
| 계 | 6 | 401 | 2,963 | - | - | - | 1 | 69 | 560 | 5 | 332 | 2,403 |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로 | 1 | 78 | 1,111 | - | - | - | - | - | - | 1 | 78 | 1,111 |
| 소로 | 5 | 323 | 1,852 | - | - | - | 1 | 69 | 560 | 4 | 254 | 1,292 |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승인동) | 종점 (승인동)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종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78 | 창신동 74-1 | 창신동 247 | 일반 도로 | | 1996. 09. 24 (종고제1996-41호)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69 (1,000) | 창신동 687-41 (615-47) | 창신동 563 | 일반 도로 | | - | ()는 시설결정 전체 |
| 기정 | 소로 | 3 | 3 | 6~8 | 국지 도로 | 87 (130) | 승인동 107-1 | 승인동 72-47 (81-10) | 일반 도로 | 434 | 2001. 04. 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27호) | ()는 시설결정 전체 |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 도로 | 61 | 창신동 201-3 | 창신동 214 | 일반 도로 | 387 | | |
| 기정 | 소로 | 3 | 24 | 6 | 국지 도로 | 53 | 승인동 81-6 | 승인동 95 | 일반 도로 | 121 | 2001. 04. 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27호) | |
| 기정 | 소로 | 3 | - | 6 | 국지 도로 | 53 | 창신동 701-3 | 창신동 674-3 | 일반 도로 | | | |
| 폐지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34 | 창신동 151-2 | 창신동 143-55 | 일반 도로 | | 2002. 04. 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12호) | |
| 폐지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81 | 창신동 178 | 창신동 162-1 | 일반 도로 | |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도로명 |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전 | 변경후 | | |
| 소로 3-1 | - | ◦ 도로 폐지 - 폭원: 6m, 연장: 34m | ◦ 현재 폭4m의 도로로서 창신시장 진입로로 이용중이며, 양쪽 폭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환경의 개선이 가능하여 도로 폐지 |
| 소로 3-2 | - | ◦ 도로 폐지 - 폭원: 6m, 연장: 81m | ◦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각 필지별 보행접근 및 건축법상 신축이 가능하며 양쪽 폭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환경의 개선이 가능하여 도로 폐지 |

(2) 공간시설

 공공공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공공공지 | 창신동 266-2 | - | 증)43.7 | 43.7 | - | 일반상업지역 |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공공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창신동 266-2 - 면적 : 43.7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봉로변 지하철(동묘앞역) 출입구와 연계된 보행결절점상에 공공공지 신설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공공청사 | 구민회관 | 창신동 222-8 | 3,974.5 | - | 3,974.5 | 1996. 10. 16 (종고제1996-47호)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최대개발규모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번호 | 면적 (m ²) | 필지 | | 계획내용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1 | 1548.7 | 창신동 675 | 47.7 | | |
| | | 창신동 676 - 1 | 142.1 | 공동개발 지정 | 693-2 |
| | | 창신동 678 - 1 | 46.8 | | |
| | | 창신동 693 - 2 | 322.1 | 공동개발 지정 | 676-1 |
| | | 창신동 693 - 3 | 260.8 | | |
| | | 창신동 695 - 1 | 238 | | |
| | | 창신동 696 - 1 | 136.2 | 공동개발 권장 | 697-3 |
| | | 창신동 697 - 3 | 223 | 공동개발 권장 | 696-1 |
| | | 창신동 699 - 2 | 132 | | |

| 가구 번호 | 면적 (m ²) | 필지 | | 계획내용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2 | 5807.5 | 창신동 530 - 1 | 608.3 | | |
| | | 창신동 533 - 1 | 105.8 | 공동개발 권장 | 534, 537-1, 538-1, 540-1 |
| | | 창신동 534 | 119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 지정 535, 536-3 권장 533-1, 537-1, 538-1, 540-1 |
| | | 창신동 535 | 52.9 | 공동개발 지정 | 534, 536-3 |
| | | 창신동 536 - 1 | 151.5 | | |
| | | 창신동 536 - 2 | 99.2 | | |
| | | 창신동 536 - 3 | 3 | 공동개발 지정 | 535, 534 |
| | | 창신동 537 - 1 | 201.7 | 공동개발 권장 | 533-1, 534, 538-1, 540-1 |
| | | 창신동 538 - 1 | 231.4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 지정 538-3 권장 533-1, 534, 537-1, 540-1 |
| | | 창신동 538 - 3 | 4 | 공동개발 지정 | 538-1 |
| | | 창신동 540 - 1 | 222.1 | 공동개발 권장 | 533-1, 534, 537-1, 538-1 |
| | | 창신동 541 | 87.9 | 공동개발 지정 | 541-3, 541-4, 542-5 |
| | | 창신동 541 - 2 | 97.3 | 공동개발 권장 | 542 |
| | | 창신동 541 - 3 | 1 | 공동개발 지정 | 541, 541-4, 542-5 |
| | | 창신동 541 - 4 | 8.8 | 공동개발 지정 | 541, 541-3, 542-5 |
| | | 창신동 542 | 163 | 공동개발 권장 | 541-2 |
| | | 창신동 542 - 5 | 69.1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 지정 541, 541-3, 541-4 권장 580-25 |
| | | 창신동 545 | 273 | | |
| | | 창신동 549 - 1 | 46.3 | | |
| | | 창신동 550 - 1 | 357 | | |
| | | 창신동 551 | 110.1 | | |
| | | 창신동 552 | 364.3 | | |
| | | 창신동 553 - 1 | 21.5 | 공동개발 지정 | 553-5 |
| | | 창신동 553 - 4 | 95.9 | | |
| | | 창신동 553 - 5 | 21.5 | 공동개발 지정 | 553-1 |
| | | 창신동 554 | 39.7 | | |
| | | 창신동 555 | 76 | | |
| | | 창신동 556 | 33.1 | 공동개발 지정 | 557, 558 |
| | | 창신동 557 | 49.6 | 공동개발 지정 | 556, 558 |
| | | 창신동 558 | 52.9 | 공동개발 지정 | 556, 557 |
| | | 창신동 559 | 59.5 | 공동개발 지정 | 559-1 |
| | | 창신동 559 - 1 | 29.8 | 공동개발 지정 | 559 |
| | | 창신동 560 | 126.6 | 공동개발 권장 | 561-8 |
| | | 창신동 561 - 1 | 99.5 | | |

| 가구 번호 | 면적 (m ²) | 필지 | | 계획내용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 | 창신동 561 | — 2 | 127.5 | |
| | | 창신동 561 | — 7 | 0.7 | 공동개발 지정 562, 563, 563-1 |
| | | 창신동 561 | — 8 | 104.8 | 공동개발 권장 560 |
| | | 창신동 562 | | 187.4 | 공동개발 지정 563, 561-7, 563-1 |
| | | 창신동 563 | | 70.7 | 공동개발 지정 562, 561-7, 563-1 |
| | | 창신동 563 | — 1 | 10.6 | 공동개발 지정 563, 562, 561-7 |
| | | 창신동 567 | | 84 | |
| | | 창신동 567 | — 1 | 147.4 | |
| | | 창신동 569 | | 125.6 | |
| | | 창신동 580 | — 9 | 102.5 | |
| | | 창신동 580 | — 11 | 59.5 | |
| | | 창신동 580 | — 12 | 102.5 | |
| | | 창신동 580 | — 14 | 82.6 | |
| | | 창신동 580 | — 15 | 82.6 | |
| | | 창신동 580 | — 16 | 72.7 | |
| | | 창신동 580 | — 24 | 86.6 | 공동개발 지정 580-26 |
| | | 창신동 580 | — 25 | 218.2 | 공동개발 권장 542-5 |
| | | 창신동 580 | — 26 | 96.4 | 공동개발 지정 580-24 |
| 3 | 3398.3 | 창신동 150 | | 138.8 | |
| | | 창신동 151 | — 1 | 86.7 | |
| | | 창신동 151 | — 2 | 149.1 | |
| | | 창신동 154 | — 1 | 76 | |
| | | 창신동 155 | — 3 | 82.6 | 공동개발 권장 156-1, 157-1, 157-3 |
| | | 창신동 156 | — 1 | 59.5 | 공동개발 권장 155-3, 157-1, 157-3 |
| | | 창신동 157 | — 1 | 99.2 | 공동개발 권장 155-3, 156-1, 157-3 |
| | | 창신동 157 | — 3 | 77.4 | 공동개발 권장 155-3, 156-1, 157-1 |
| | | 창신동 158 | — 1 | 59.5 | 공동개발 지정 159-1 |
| | | 창신동 159 | — 1 | 59.5 | 공동개발 지정 158-1 |
| | | 창신동 160 | | 250.6 | |
| | | 창신동 162 | — 1 | 257.8 | |
| | | 창신동 164 | | 89.3 | |
| | | 창신동 165 | | 205.3 | |
| | | 창신동 167 | | 181.8 | 공동개발 권장 168, 170-3 |
| | | 창신동 168 | | 84.6 | 공동개발 권장 167, 170-3 |
| | | 창신동 170 | — 3 | 70.4 | 공동개발 권장 167, 168 |
| | | 창신동 170 | — 1 | 169.3 | 공동개발 지정 173, 174-1 |
| | | 창신동 173 | | 143.8 | 공동개발 지정 170-1, 174-1 |
| | | 창신동 174 | — 1 | 254.5 | 공동개발 지정 170-1, 173 및 공동개발 권장 176 |
| | | 창신동 176 | | 92 | 공동개발 권장 174-1 |
| | | 창신동 177 | | 99.2 | 공동개발 지정 178, 179, 176-2 |
| | | 창신동 178 | | 34.3 | 공동개발 지정 177, 179, 176-2 |
| | | 창신동 179 | | 100.5 | 공동개발 지정 178, 177, 176-2 |
| | | 창신동 176 | — 2 | 10 | 공동개발 지정 177, 178, 179 |
| | | 창신동 180 | | 89.3 | |
| | | 창신동 181 | — 1 | 138.9 | 공동개발 지정 204-22 |
| | | 창신동 181 | — 2 | 132.2 | |
| | | 창신동 183 | — 1 | 68 | |
| | | 창신동 185 | | 38 | |
| | | 창신동 204 | — 22 | 10.2 | 공동개발 지정 181-1 |

| 가구 번호 | 면적 (㎡) | 필지 | | 계획내용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4 | 5567 | 창신동 | 197 - 49 | 123.3 | |
| | | 창신동 | 198 | 45.3 | |
| | | 창신동 | 204 - 23 | 2.5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05 - 1 | 46.3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07 | 198.4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09 - 1 | 36.4 |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12 | 148.8 |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13 | 92.6 |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14 | 238 | |
| | | 창신동 | 215 | 191.7 | |
| | | 창신동 | 216 | 181.8 | |
| | | 창신동 | 217 - 1 | 105.8 | |
| | | 창신동 | 220 | 175.2 | |
| | | 창신동 | 221 | 122.3 | |
| | | 창신동 | 222 - 9 | 97 | |
| | | 창신동 | 263 - 1 | 19 | 공동개발권장 |
| | | 창신동 | 266 - 1 | 237 | 공동개발지정 |
| | | 창신동 | 266 - 2 | 43.7 | |
| | | 창신동 | 267 | 6.2 | 공동개발지정 |
| | | 창신동 | 268 | 136.1 | 공동개발지정 |
| | | 창신동 | 269 | 133.6 | 공동개발지정 |
| | | 창신동 | 284 - 4 | 31.1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85 | 59.5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86 | 112.4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87 | 145.5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88 - 2 | 33.2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90 | 469.8 |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92 | 797.7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93 - 2 | 86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
| | | 창신동 | 293 - 3 | 8.3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93 - 5 | 69.4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97 | 103.3 | |
| | | 창신동 | 299 | 101.9 | |
| | | 창신동 | 300 | 50.1 | |
| | | 창신동 | 302 - 1 | 445 | |
| | | 창신동 | 302 - 5 | 193.1 | |
| | | 창신동 | 303 | 347.4 | |
| | | 창신동 | 308 - 1 | 39.7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309 - 1 | 92.6 | 공동개발 지정 |
| 5 | 3422.4 | 창신동 | 237 | 103.5 | |
| | | 창신동 | 241 | 114.6 | |
| | | 창신동 | 242 | 99.2 | |
| | | 창신동 | 243 | 130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44 - 1 | 89.3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44 - 2 | 70.6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44 - 4 | 57.8 | 공동개발 지정 |
| | | 창신동 | 245 | 49.6 | |
| | | 창신동 | 247 | 82.6 | |

| 가구 번호 | 면적 (m ²) | 필지 | | 계획내용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 | 창신동 255 | - 1 | 900 | |
| | | 창신동 260 | | 94 | |
| | | 창신동 261 | | 111.8 | |
| | | 창신동 263 | | 55.1 | |
| | | 창신동 264 | | 79.7 | |
| | | 창신동 265 | | 74.4 | |
| | | 창신동 271 | | 95.9 | |
| | | 창신동 273 | | 162 | |
| | | 창신동 275 | | 86 | 공동개발 지정 278 |
| | | 창신동 276 | - 1 | 141.2 | |
| | | 창신동 276 | - 4 | 20.7 | 도로 |
| | | 창신동 278 | | 99.2 | 공동개발 지정 275 |
| | | 창신동 279 | | 142.1 | 공동개발 지정 280 |
| | | 창신동 280 | | 66.1 | 공동개발 지정 279 |
| | | 창신동 281 | - 1 | 76.2 | |
| | | 창신동 281 | - 3 | 115.7 | |
| | | 창신동 282 | - 1 | 152 | |
| | | 창신동 284 | - 3 | 82 | 공동개발 지정 283 |
| | | 창신동 283 | | 71.1 | 공동개발 지정 284-3 |
| 6 | 7314.3 | 중인동 72 | 11 | 261.2 | |
| | | 중인동 72 | 12 | 138.8 | 공동개발 지정 72-13, 72-14, 156-1 |
| | | 중인동 72 | 13 | 16.5 | 공동개발 지정 72-12, 72-14, 156-1 |
| | | 중인동 72 | 14 | 274.4 | 공동개발 지정 72-12, 72-13, 156-1 |
| | | 중인동 72 | 15 | 314.3 | |
| | | 중인동 72 | - 17 | 370.2 | 공동개발 권장 148-1 |
| | | 중인동 72 | - 18 | 79.3 | 공동개발 권장 72-108, 72-109, 72-110, 135-1, 137-1, 144-1 |
| | | 중인동 72 | 19 | 254.5 | |
| | | 중인동 72 | 48 | 300.8 | |
| | | 중인동 72 | 49 | 317.4 | 공동개발 지정 72-50 |
| | | 중인동 72 | 50 | 307.4 | 공동개발 지정 72-49 |
| | | 중인동 72 | 51 | 280.3 | 공동개발 지정 72-255 |
| | | 중인동 72 | 52 | 92.6 | |
| | | 중인동 72 | 55 | 208.6 | 공동개발 지정 72-254 |
| | | 중인동 72 | 77 | 128.9 | |
| | | 중인동 72 | 79 | 89.3 | |
| | | 중인동 72 | 81 | 187.8 | |
| | | 중인동 72 | - 83 | 115.7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개발 권장 지정 72-258, 권장 151-1 |
| | | 중인동 72 | - 108 | 105.8 | 공동개발 권장 72-18, 72-109, 72-110, 135-1, 137-1, 144-1 |
| | | 중인동 72 | - 109 | 36.4 | 공동개발 권장 72-18, 72-108, 72-110, 135-1, 137-1, 144-1 |
| | | 중인동 72 | - 110 | 72.7 | 공동개발 권장 72-18, 72-108, 72-109, 135-1, 137-1, 144-1 |
| | | 중인동 72 | 254 | 89.6 | 공동개발 지정 72-55 |
| | | 중인동 72 | 255 | 99.8 | 공동개발 지정 72-51 |
| | | 중인동 72 | - 258 | 58.7 | 공동개발 지정 72-83 |
| | | 중인동 96 | - 2 | 65.1 | |
| | | 중인동 97 | | 102.5 | |
| | | 중인동 98 | | 49.6 | |
| | | 중인동 99 | - 2 | 135.9 | |
| | | 중인동 100 | - 1 | 86 | |

| 가구 번호 | 면적 (m ²) | 필지 | | 계획내용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 | 송인동 102 - 1 | 130.9 | | |
| | | 송인동 102 - 9 | 6.3 | 공동개발 지정 | 104 |
| | | 송인동 102 - 12 | 9.1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1, 113, 114, 115, 116, 117, 118-1, 13 6, 138-2, 138 |
| | | 송인동 102 - 13 | 34.7 | 공동개발 지정 | 102-12, 111, 113, 114, 115, 116, 117, 118-1, 13 6, 138-2, 138 |
| | | 송인동 103 - 1 | 56.2 | | |
| | | 송인동 104 | 69.8 | 공동개발 지정 | 102-9 |
| | | 송인동 106 - 1 | 79.3 | | |
| | | 송인동 107 - 5 | 39.7 | | |
| | | 송인동 111 | 92.6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3, 114, 115, 116, 117, 118-1, 136, 138-2 |
| | | 송인동 113 | 36.4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1, 114, 115, 116, 117, 118-1, 136, 138-2 |
| | | 송인동 114 | 59.5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1, 113, 115, 116, 117, 118-1, 136, 138-2 |
| | | 송인동 115 | 59.5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1, 113, 114, 116, 117, 118-1, 136, 138-2 |
| | | 송인동 116 | 102.5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1, 113, 114, 115, 117, 118-1, 136, 138-2 |
| | | 송인동 117 | 56.2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1, 113, 114, 115, 116, 118-1, 136, 138-2 |
| | | 송인동 118 1 | 57.1 | 공동개발 지정 | 102-13, 111, 113, 114, 115, 116, 117, 136, 138-2 |
| | | 송인동 123 | 327.6 | 공동개발 권장 | 127-1 |
| | | 송인동 126 | 52.9 | 공동개발 지정 | 127 |
| | | 송인동 127 | 390.1 | 공동개발 지정 | 126 |
| | | 송인동 127 1 | 13.8 | 공동개발 권장 | 123 |
| | | 송인동 128 | 66.1 | | |
| | | 송인동 130 | 43 | | |
| | | 송인동 133 3 | 39.7 | | |
| | | 송인동 133 4 | 66.1 | | |
| | | 송인동 135 - 1 | 188.4 | 공동개발 권장 | 72-18, 72-108, 72-109, 72-110, 137-1, 144-1 |
| | | 송인동 136 | 122.3 | 공동개발 지정 | 102-12, 102-13, 111, 113, 114, 115, 116, 117, 118-1, 138-2, 138 |
| | | 송인동 137 - 1 | 232.4 | 공동개발 권장 | 72-18, 72-108, 72-109, 72-110, 135-1, 144-1 |
| | | 송인동 138 | 1 | 공동개발 지정 | 102-12, 102-13, 111, 113, 114, 115, 116, 117, 118-1, 136, 138-2 |
| | | 송인동 138 2 | 104.8 | 공동개발 지정 | 102-12, 102-13, 111, 113, 114, 115, 116, 117, 118-1, 136, 138 |
| | | 송인동 144 - 1 | 147.1 | 공동개발 권장 | 72-18, 72-108, 72-109, 72-110, 135-1, 137-1 |
| | | 송인동 148 - 1 | 43 | 공동개발 권장 | 72-17 |
| | | 송인동 156 1 | 59.5 | 공동개발 지정 | 72-12, 72-13, 72-14 |
| | | 송인동 151 - 1 | 109.1 | 공동개발 권장 | 72-83 |

(2)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비고 |
|---------|--------------|--------|--------|
| 최대개발 규모 | 종로변 | 2,000㎡ | - |
| | 지붕로변 | 1,500㎡ | - |
| | 이면부 (준주거지역) | 1,000㎡ | |
| | 이면부 (일반주거지역) | 500㎡ | - |
| | 한양도성 완충구역 | 330㎡ | 일반주거지역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 운수시설(철도시설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간선도로변 (일반상업지역) |
|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 운수시설 ◦ 공장 ◦ 창고시설(창고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 준주거지역 |
| 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동·식물원 ◦ 창고시설(창고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일반주거지역 |
|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관람장, 동·식물원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 낙산성곽길 주변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 구분 | | 계획내용 | 비고 |
|----|----|--|----|
| 1층 | 공통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
| 전층 | 1 |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판매 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 | 2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의류, 봉제) ◦ 노유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 | 3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한의원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판매 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 | 4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한의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의류, 봉제) ◦ 노유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2) 건축물의 밀도

1) 건축물의 건폐율

| 구 分 | 건폐율 | | 비 고 |
|----------------|--------|--------|-----|
| | 기준 | 허용 | |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 |

 건폐율의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항목 | 세분 | 세부계획기준 | 비고 |
|---------|--------|---|---|
| 대지 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 | 개방형 : 기준건폐율×(조성면적/대지면적)×2 필로티형 : 기준건폐율×(조성면적/대지면적)×1 | |
| 건축물 높이 | 건축물 높이 | 24m 이하로 건축 시 : 기준건폐율 + 5% 20m 이하로 건축 시 : 기준건폐율 + 10% | ◦ 준주거지역에만 적용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기준건폐율×(0.15×(권장면적/건축연면적)) | ◦ 1층 권장용도 50%이상 또는 전층 권장용도 20%이상 설치 시 적용 |

* 공공보행통로, 권장용도 인센티브는 용적률, 건폐율 중복 적용이 불가하고 개발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음

2) 건축물의 용적률

| 용도지역 | 용적률 | | 비고 |
|--------------|---------|---------|----|
| | 기준 | 허용 | |
| 일반상업지역 (창신동) | 400% 이하 | 600% 이하 | - |
| 일반상업지역 (승인동) | 600% 이하 | 800% 이하 | - |
| 준주거지역 | 300% 이하 | 360% 이하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하 | 150% 이하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00% 이하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250% 이하 | - |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 구분 | 세분 | 세부계획기준 | 비고 |
|------------|--------|-------------------------------|--|
| 공동 개발 |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 : 기준용적률x필지수x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기준 용적률x0.3이하 |
| | | 공동개발 권장 (전체) : 기준용적률x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개발(권장)으로 지정된 일련의 필지 모두 개발 |
| | | 공동개발 권장 (일부) : 기준용적률x필지수x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기준 용적률x0.2이하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x(권장면적/건축연면적)x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권장용도 50% 이상 또는 전층 권장용도 20%이상 설치시 적용 |
| 대지 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 | 개방형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대지면적)x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완화적용 제외 |
| | | 필로티형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대지면적)x1 | |
| |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1.5 | |
| 보행 개선 | 지하연결통로 | 기준용적률x0.5 | |

※ 기준 높이가 다른 다수의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높은 쪽을 기준 높이로 함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구분 | 세분 | 세부계획기준 | 비고 |
|-----|--------------------|---|--|
| 친환경 |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라 의무대상 준수 |
|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
|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이내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이내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이내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이내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
| |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0.04 | |
| | 빗물관리 시 설 설치 | 기준용적률 × 0.04 | |
|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
| |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
| |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의 100분의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친환경 인센티브는 건축물 연면적 10,00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량이 전체 인센티브량의 30%를 반드시 초과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해야 함.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면적 10,0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량이 전체 인센티브량의 30%를 초과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계획 유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없음. (단, 연면적 600㎡ 이하의 건축물은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대체 가능)

※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미관지구 내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3) 건축물의 높이

| 구 분 | 최고높이 | 비고 |
|----------|---------------|---|
| 종로 북측변 | 60m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로 남측의 상업지역과 북측 주거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승인2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연속성 유지 |
| 지봉로 서측변 | 40m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봉로 서측변 준주거지역 이면부와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 |
| 종로 이면부 | 준주거지역 28m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변과 공동개발시 간선도로변 높이 기준 적용 대상지 북측 주거지역과의 스카이라인 고려 |
| | 일반주거지역 24m 이하 | |
| 문화재구역범위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대문 및 동묘 문화재보호 구역의 앙각규제를 적용 |

* 기준 높이가 다른 다수의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높은 쪽을 기준 높이로 함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 구분 | 적용지역 | 적용기준 | 비고 |
|-------|-----------|-------|----|
| 건축한계선 | 종로변, 지봉로변 | 3m 후퇴 | - |
| | 성곽길 진입도로 | 2m 후퇴 | - |
| | 이면부 진입도로 | 1m 후퇴 | -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구분 | 적용 지역 | 계획내용 | 비고 |
|-----------|-------|---|----|
| 저층부 형태 | 간선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부와 저층부의 벽면선이 동일한 건축물의 경우 3층 이하 부분의 재료, 색채 등에 대한 차별화를 통한 형태 분리를 도모 | - |
| 1층 개방형 입면 | 간선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구부 셔터의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조성 | - |
| 진입구 처리 | 간선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주현관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도로 바닥높이와 동일하게 조성 (단, 지형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기울기 1/18이하로 접근로를 설치) 접근로는 유효폭원 1.8m 이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할 경우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 높이로 하고 격자구멍 등의 간격은 1cm이하로 설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재질 및 색상의 보도 설치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화분 등의 보행장애물 설치 금지 | - |
| 재료/색채 | 구역 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택이 강한 소재의 사용 금지 원색 또는 명도/채도가 높은 색상 사용 금지 | - |
| 설비시설처리 | 구역 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계단, 가스설비,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는 가급적 가로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부득이 노출되는 경우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벽의 재료 및 색채와 조화되는 디자인의 차폐시설 설치 | - |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공공보행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폭원 2m로 지정 ◦ 현재 종로구민회관의 진입로로 사용중인 필지 주변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 전철역(동묘앞역)에서 이면부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변, 지붕로변에서의 차량의 직접진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에서 직접진출입이 불가피한 필지는 연접필지와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이 면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 ◦ 개별필지의 주차진입은 6m 이상 연접도로 중 최하위 도로에서 진출입을 권장 ◦ 25m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각각부에서 20m 이내에서는 차량출입을 금지 ◦ 개별필지로 주차진입은 6m 이상 도로를 권장 | |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 구 분 | 계획내용 | 비고 | | | | | | | | |
|---------------------|--|----|--------|--------------|---|-------------|---|------------------|---|---|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내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주차장 외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를 금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 - 무상임대체결, 구분지상권 설정, 가로지장물 수용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함 <table border="1" data-bbox="381 1448 1214 1830"> <thead> <tr> <th>구분</th> <th>완화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무상임대 계약체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5%(1층 기준 최소 30m² 이상, 층별 가중치 적용)의 공간을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어 5년 이상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서울시(종로구)와 사전에 공간제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함 </td> </tr> <tr> <td>구분지상권 설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5%(1층 기준 최소 30m² 이상, 층별 가중치 적용)에 해당하는 공간을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어 공공의 공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시 </td> </tr> <tr> <td>가로지장물 건물 내 수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기, 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로서 한전 등의 관계기관에서 부지 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td> </tr> </tbody> </table> | 구분 | 완화세부기준 | 무상임대 계약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5%(1층 기준 최소 30m² 이상, 층별 가중치 적용)의 공간을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어 5년 이상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서울시(종로구)와 사전에 공간제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함 | 구분지상권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5%(1층 기준 최소 30m² 이상, 층별 가중치 적용)에 해당하는 공간을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어 공공의 공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시 | 가로지장물 건물 내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기, 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로서 한전 등의 관계기관에서 부지 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 - |
| 구분 | 완화세부기준 | | | | | | | | | |
| 무상임대 계약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5%(1층 기준 최소 30m² 이상, 층별 가중치 적용)의 공간을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어 5년 이상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서울시(종로구)와 사전에 공간제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 구분지상권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의 5%(1층 기준 최소 30m² 이상, 층별 가중치 적용)에 해당하는 공간을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어 공공의 공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시 | | | | | | | | | |
| 가로지장물 건물 내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기, 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로서 한전 등의 관계기관에서 부지 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 | | | | | | | | |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권한:구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①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②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③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④ 영 제25조제3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
 - 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 ⑥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⑦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⑧ ⑤⑥ 및 영 제25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 ⑨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2. 가구(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①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②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③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차·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6. 애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7. 생활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9.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비율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는 총 변경되는 합의 최초결정된 내용에 대한 비율을 말함.
 * 관련규정의 변경 시에는 그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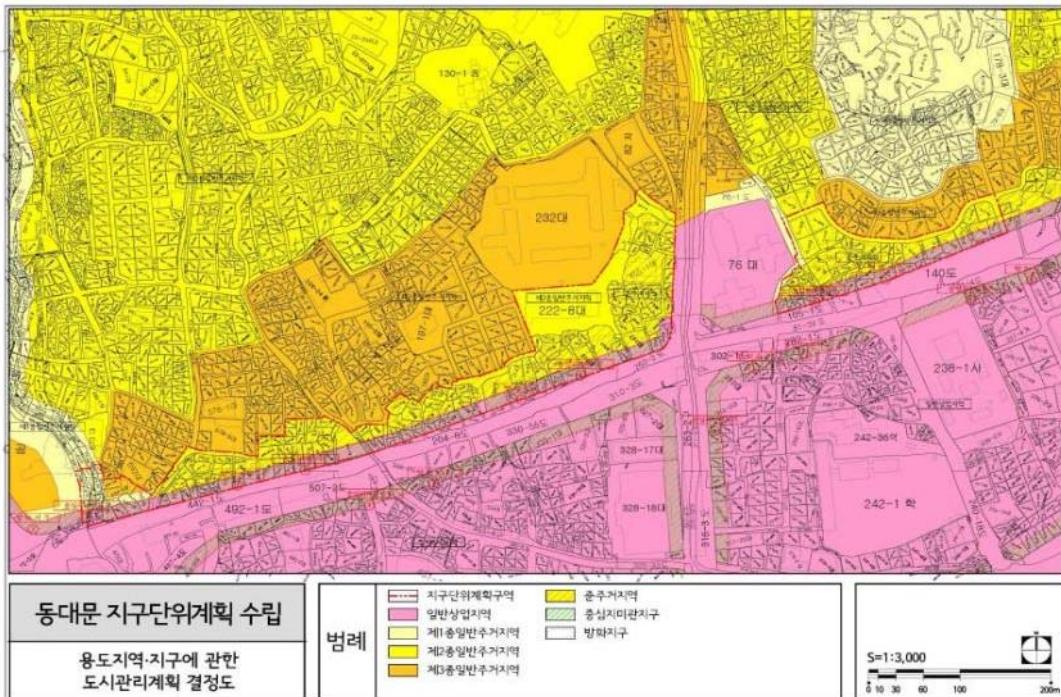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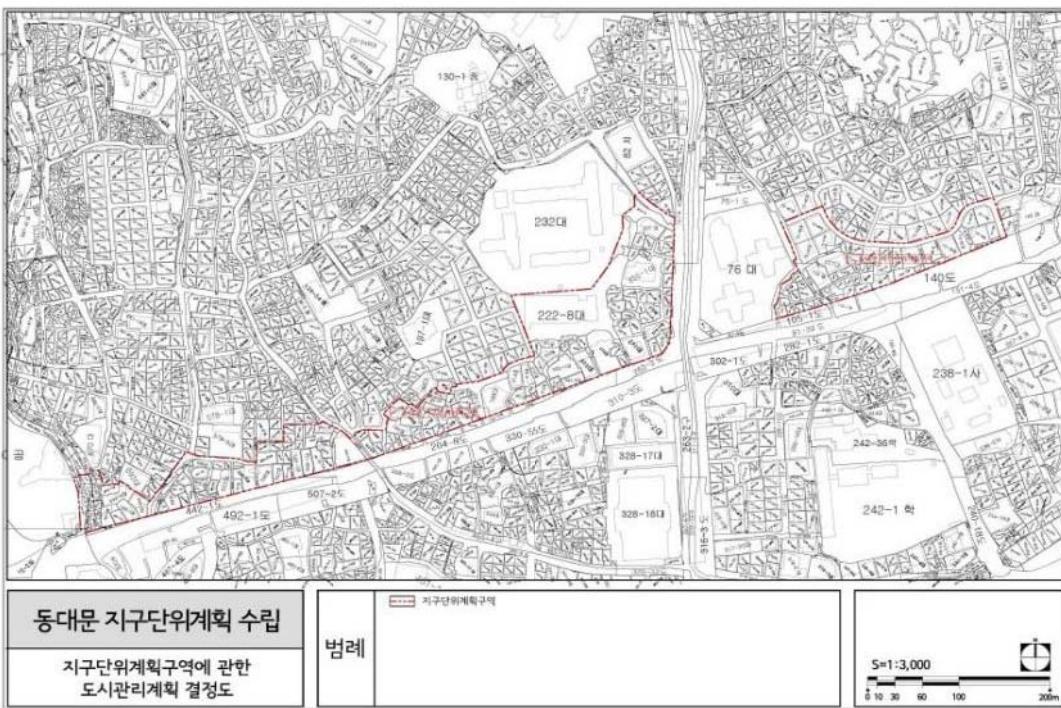
VI.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02-2148-281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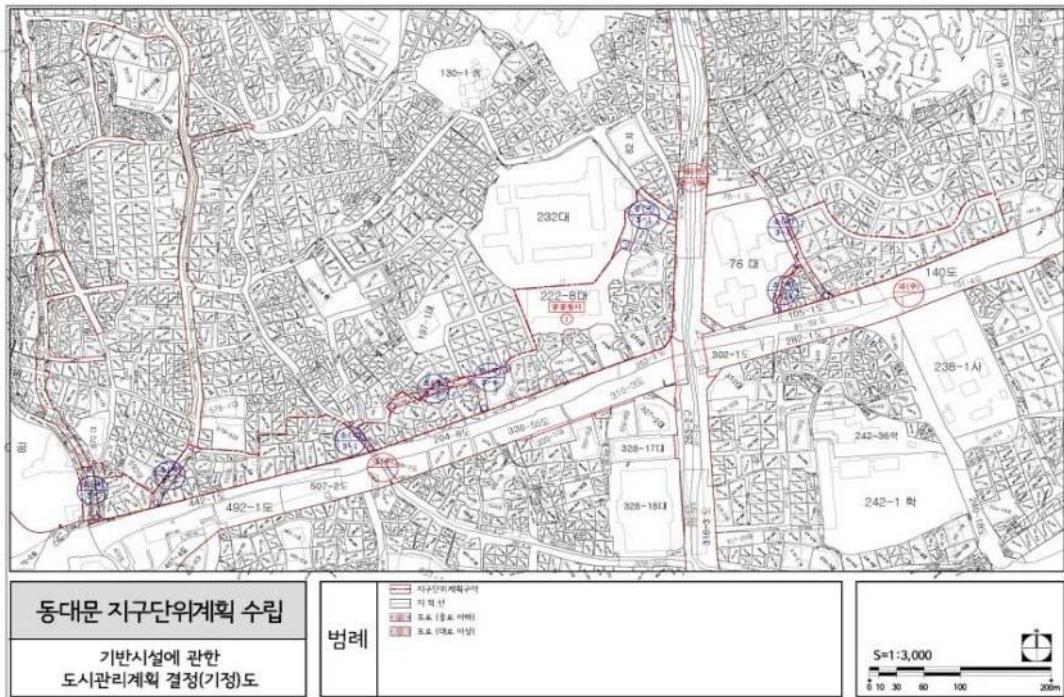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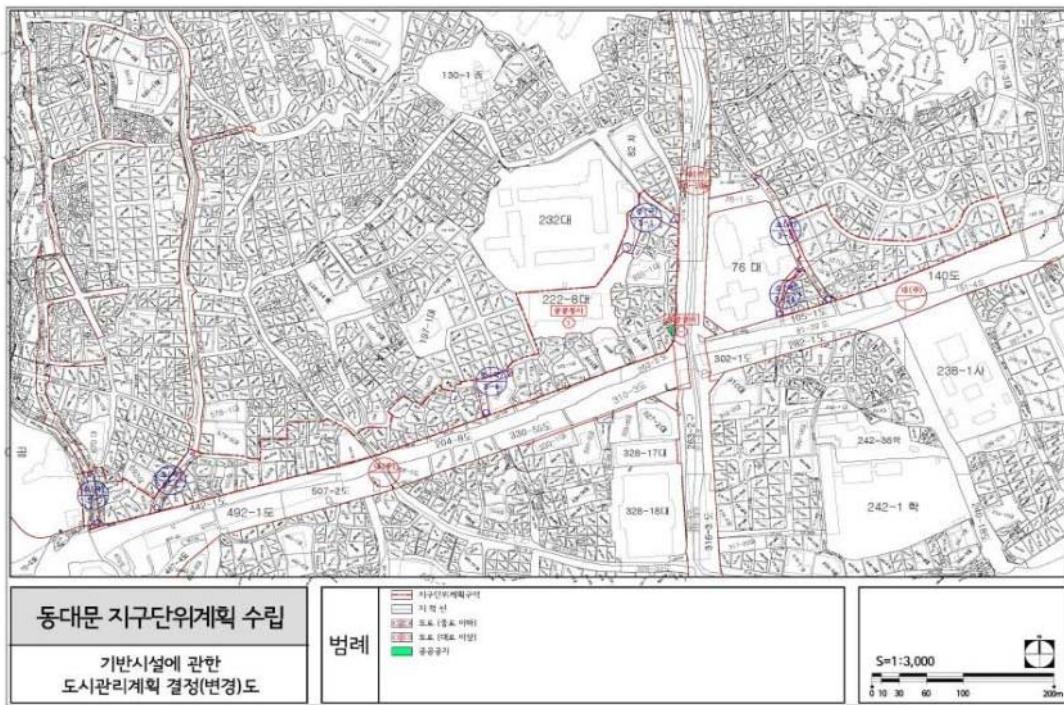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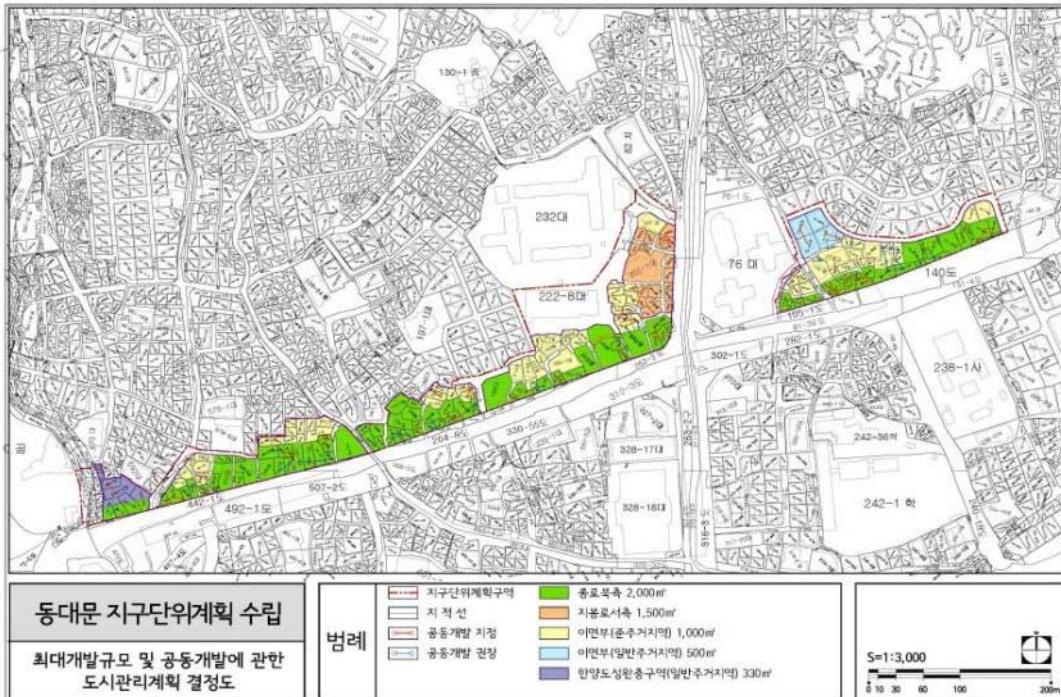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기정)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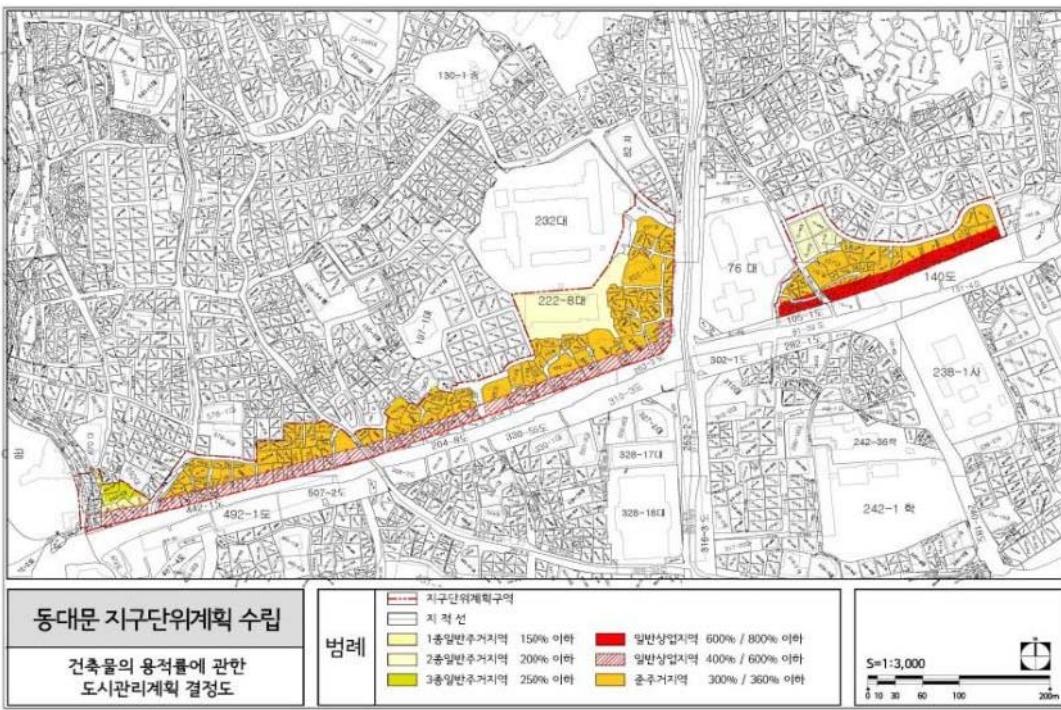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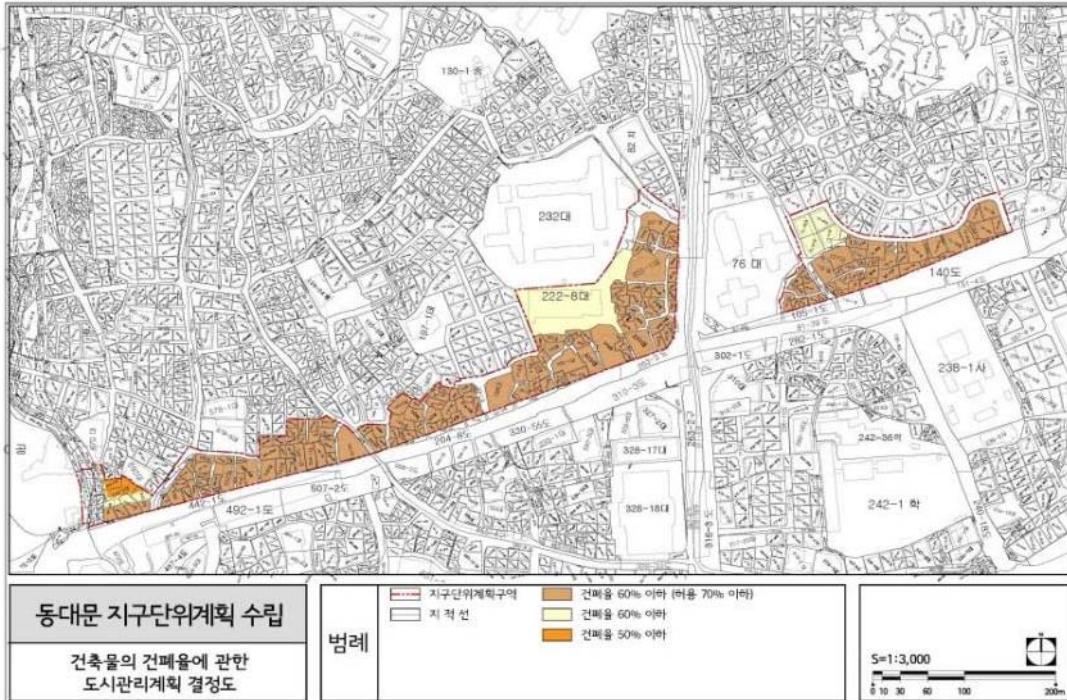
□ 최대개발규모 및 공동개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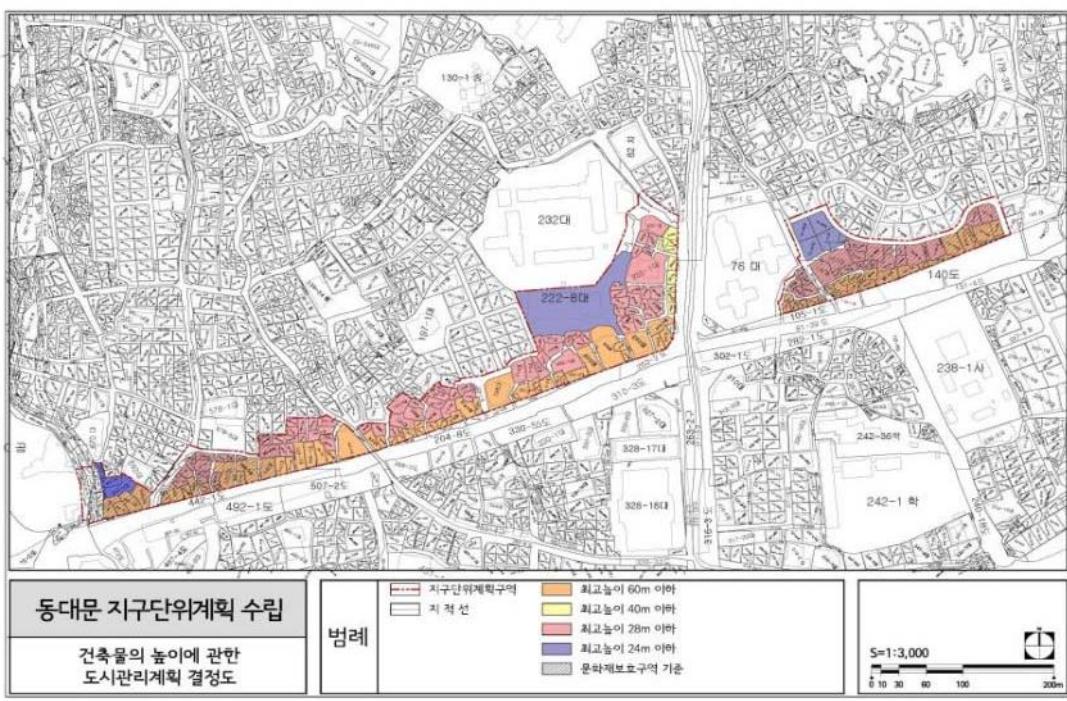
□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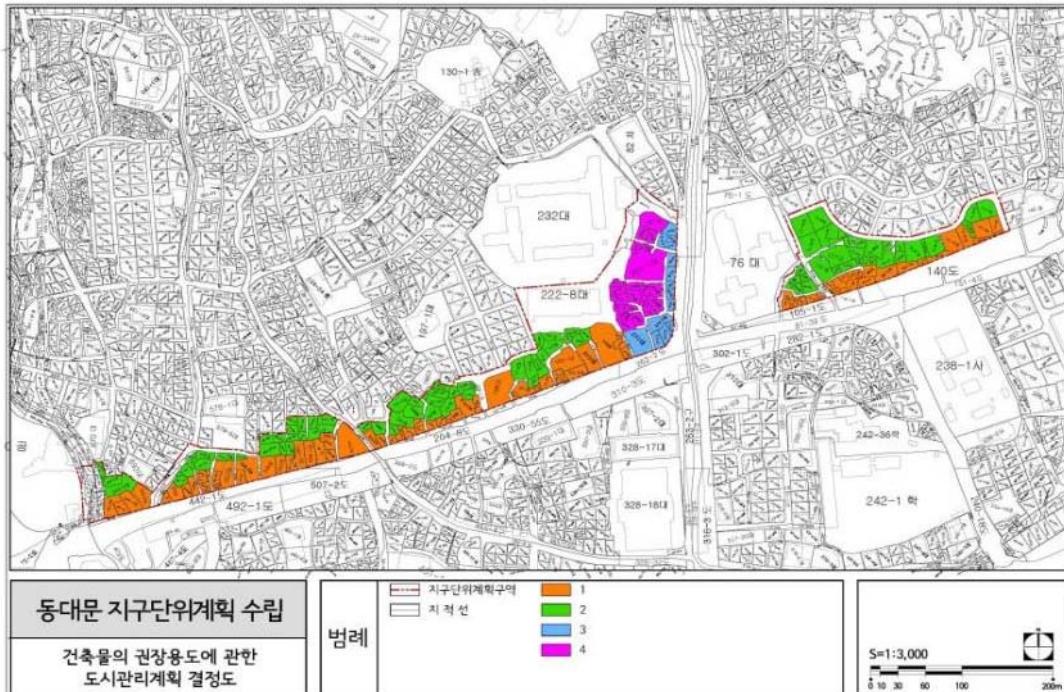
□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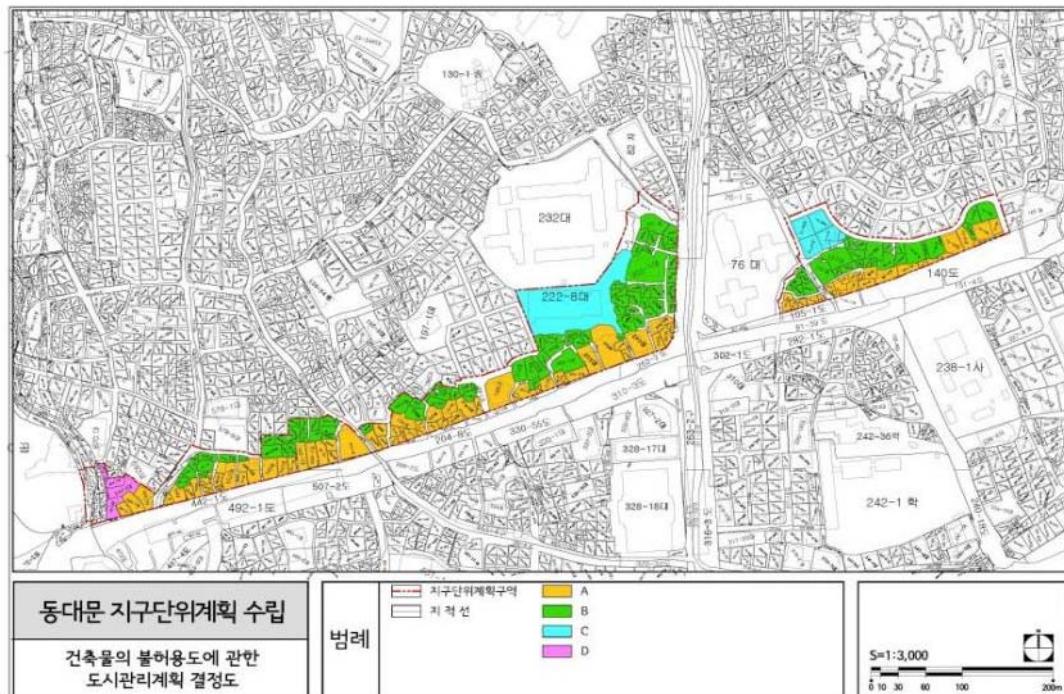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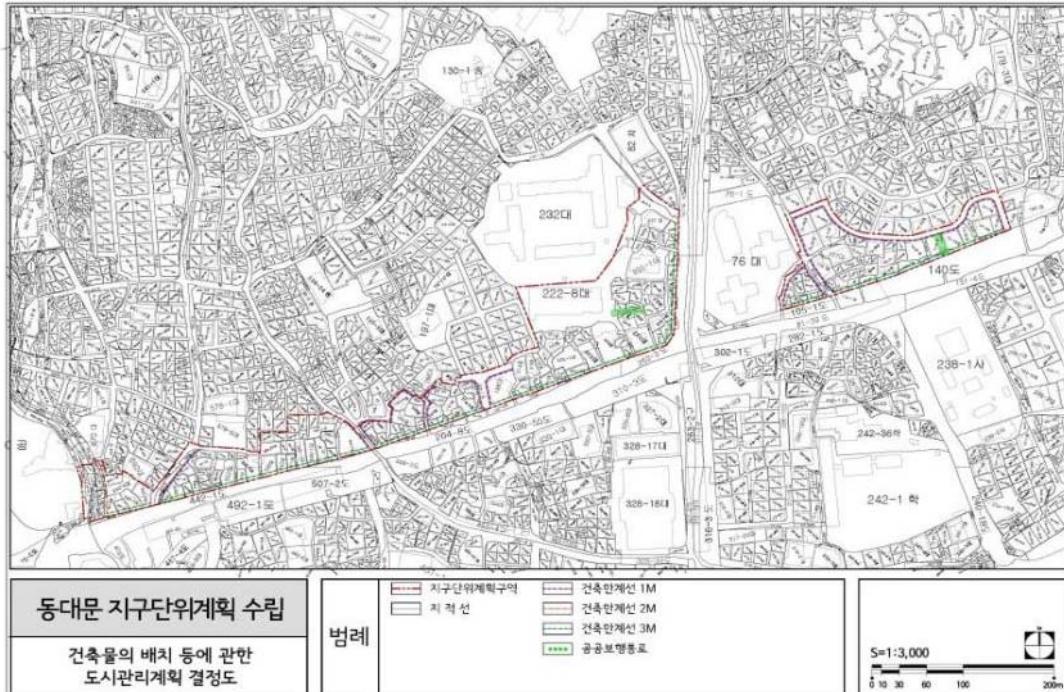
□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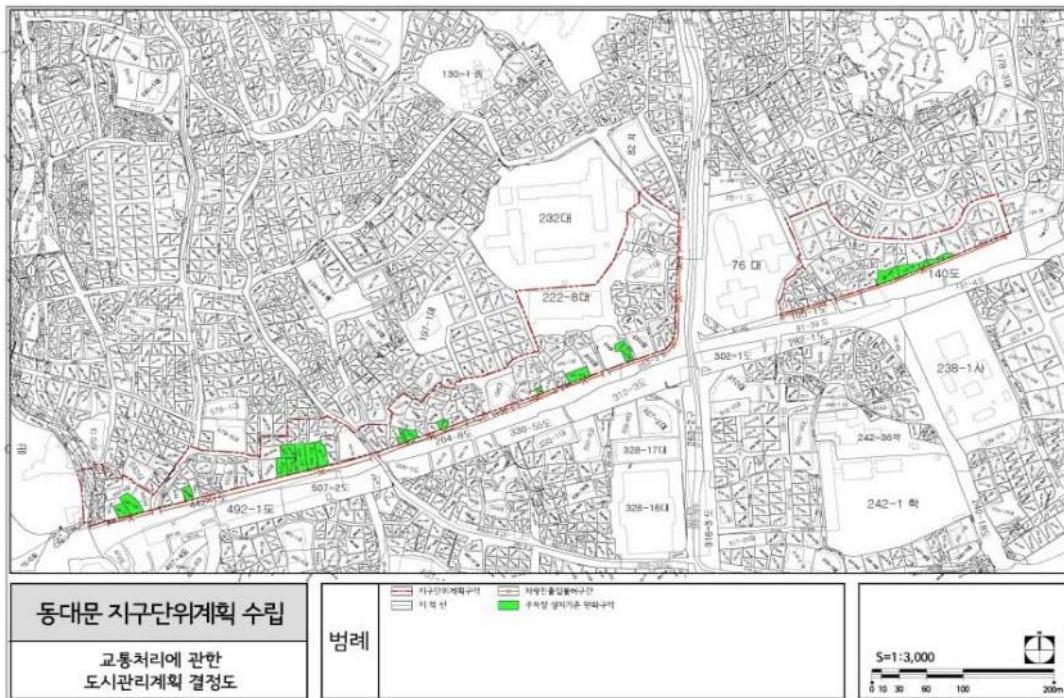
□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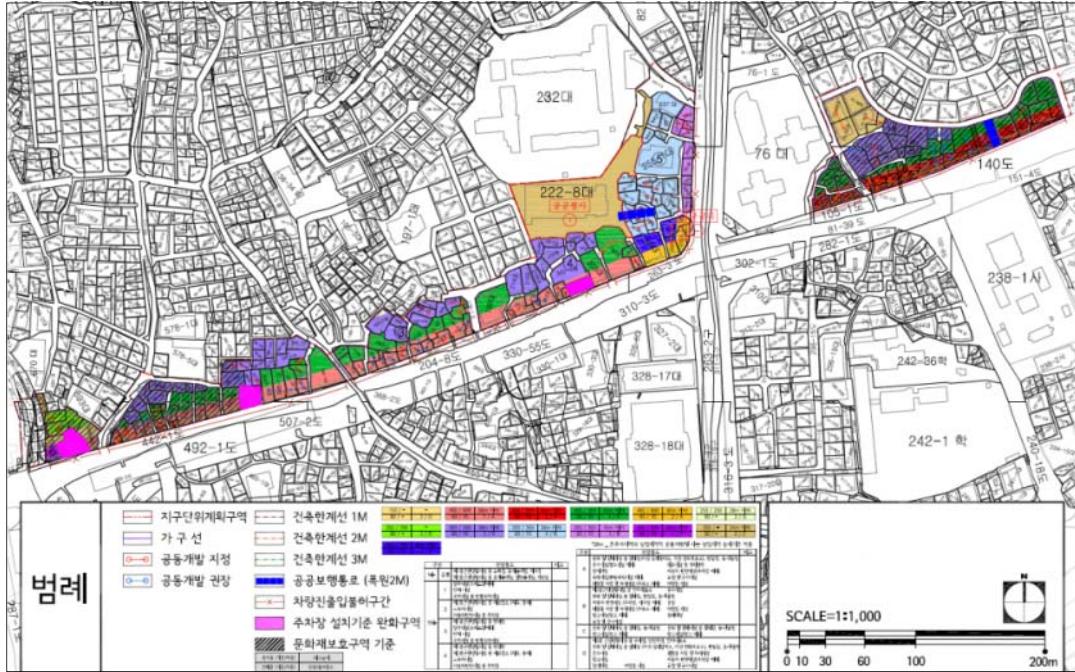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및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7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강동구와 하남시 지역의 전력소요량 급증에 따른 정전발생 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 구분 | 시설명 | 위 치 | |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기점 | 종점 | 경과지 | | | | |
| 신 설 | 전기공급 설 비 | 상일동 394-4 | 상일동 405 | 천호대로 | 489m (심도42.6m~ 54.4m) | 1,589㎡ | - | 도로, 광장 중복결정 |

나. 결정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신설 | 전기공급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동구 상일동 394-4 ~ 상일동 405 - 연장 : 489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하남 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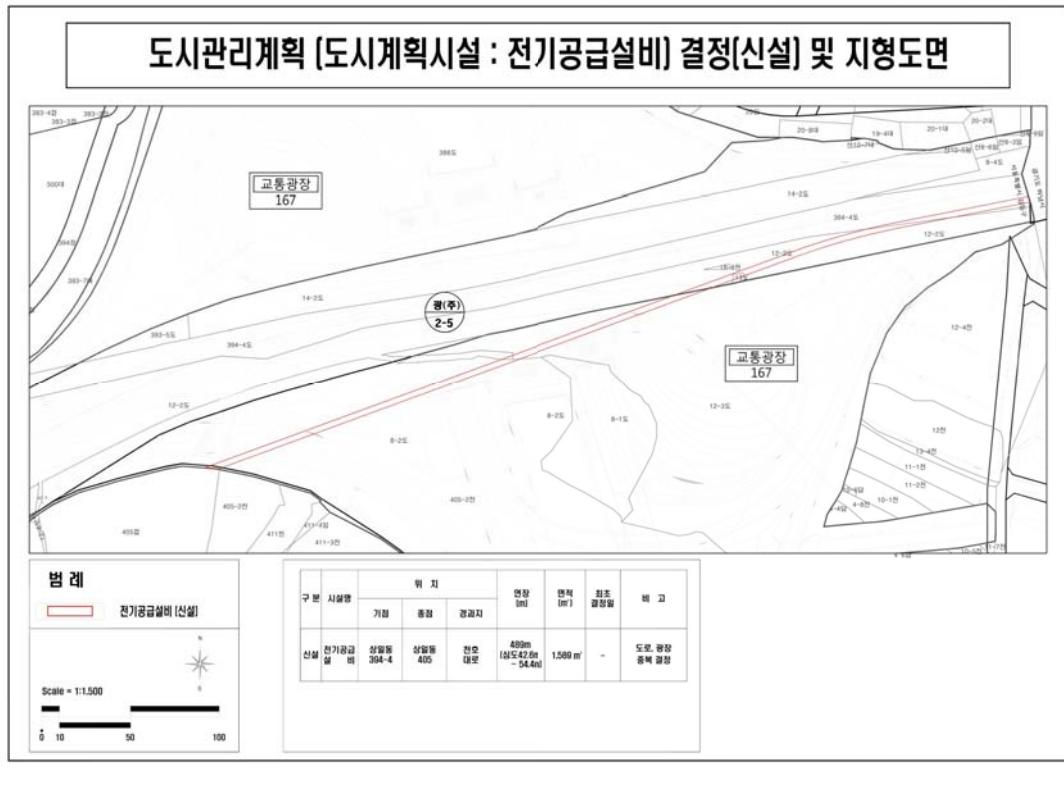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도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7)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6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약 래 -

1. 업체명 : 에이치플러스에코(주)
2. 대표자 : 허 자 홍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석촌동, 제이타워 6층)
(☎ 02-1600-5072)
4. 업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제44호]
6. 지정일자 : 2017. 7. 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7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 등 록 번 호 | 모집자 | 소재지 | 모집목적 | 목표액 (백만원) | 모집 지역 | 모집기간 |
|------------------|-------------------------|-------------------|---|--------------|----------|-----------------------|
| | | | | | | 사용기간 |
| 2017-69 | (재)연필장학재단 (대표 : 이동재)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 | - 자신을 깎아 남을 이롭게 하는 연필처럼 좋은 인성과 바른 사고의식을 가진 학생을 선발 장학금지원 | 350 (현금) | 전국 | '17.7.20~ '18.7.19 |
| | | | | | | '17.7.20~ '19.7.19 |

| 등록 번호 | 모집자 | 소재지 | 모집목적 | 목표액 (백만원) | 모집 지역 | 모집기간 |
|----------|--------------------------------------|-----------------------|---|---------------------|----------|------------------------|
| | | | | | | 사용기간 |
| 2017-70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대표 : 정연보)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 폭염 및 한파대비 등 에너지 지원 사업 | 80 (현금) | 전국 | '17.7.18~ '18.1.31 |
| | | | | | | '17.7.18~ '19.1.31 |
| 2017-71 |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대표 : 이장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 층 아동, 쪽방촌 주민, 저소 득여성 가장 등 지원사업 | 46.64 (현금) | 전국 | '17.7.18~ '17.12.31 |
| | | | | | | '17.7.18~ '18.12.31 |
| 2017-72 | (사)엔케이경제인연합회 (대표 : 노현정)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 -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및 탈북민기업가 육성 지원 | 100 (현금 및 물품) | 전국 | '17.7.18~ '17.12.31 |
| | | | | | | '17.7.18~ '17.12.31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 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압류예고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7.7.27. ~ 2017.8.1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고객번호 | 급수설비 소재지 | 납 기 | | | |
|-----------|-------------------------|--------|---------------|----|-----------|
| | | 과 목 | 납 기 | 횟수 | 금 액(원) |
| 000336645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가길 5-7 | 상하수도요금 | '14.1 ~ '17.5 | 20 | 1,082,160 |
| 000336654 | | | '14.7 ~ '17.5 | 16 | 888,090 |

나. 압류 내역

| 압류구분 | 압류물건 | 물 건 소 유 자 | | 압류금액(원) | 압류일 |
|------|-------------------------|-----------|-------------------------|-----------|------------|
| | | 성 명 | 주 소 | | |
| 부동산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가길 5-7 | 한복임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가길 5-7 | 1,082,160 | ' 17.8.11. |
| | | | | 888,090 | |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 수도사업소 체납담당 이정연 주무관(02-3146-20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보계재의뢰(시민소통담당관), 인터넷등재(CM2 정보통신분야로 등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2005.06.0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5-371호(2005.12.01.)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서울시고시 제2008-488호(2008.12.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2011-408호(2011.12.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2014-40호(2014.02.06.)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2014-458(2014.12.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동남권유통단지 진입도로(광로3-1) 개설공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10-3
- 종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92-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동남권유통단지 진입도로(광로3-1)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 40m, 연장 715m

4.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성명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5. 사업기간 : 2005.12.01.~2016.07.31.

6.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02-2133-233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고시 제2006-65호(2006.02.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되고, 서울시고시 제2006-263호(2005.07.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서울시고시 제2007-160호(2007.05.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2008-486호(2008.12.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2010-413호(2010.11.18.)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대로3-212(백로길확장)] 조성사업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자 위치

- 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645-11
- 종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319-6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대로3-212)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폭 19.5m~38.85m, 연장 310m

4.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5. 사업기간 : 2006.07.27. ~ 2010.05.31.

6.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02-2133-233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7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 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압류예고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7.7.27. ~ 2017.8.1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고객번호 | 급수설비 소재지 | 납 기 | | | |
|-----------|-------------------------------|--------|------------------|----|---------|
| | | 과 목 | 납 기 | 횟수 | 금 액(원) |
| 032145004 | 중구 신당동 432-521 도연부빌리지 201호 | 상하수도요금 | ' 13.11 ~ ' 17.5 | 14 | 344,030 |

나. 압류 내역

| 압류구분 | 압류물건 | 물 건 소 유 자 | | 압류금액(원) | 압류일 |
|------|-------------------------------|-----------|-------------------------------------|---------|------------|
| | | 성 명 | 주 소 | | |
| 부동산 | 중구 신당동 432-521 도연부빌리지 201호 | 이현숙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5길 26-3 A동 203호 | 344,030 | ' 17.8.11. |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 수도사업소 체납담당 이정연 주무관(02-3146-20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의뢰(시민소통담당관), 인터넷등재(CM2 정보통신분야로 등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87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이찬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4길 ***-*, ***호 (화곡동) | 일시: 2017-05-08 14:18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15t 초과 |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7. 8. 31. |

| 대상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소 | | |
| 주광영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6길 *-* ***호 (형곡동) | 일시: 2017-05-10 05:35 장소: 서부간선로 내용: 제한 축하중 1.8t 초과 |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8. 31. |
| 임한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36번길 8, *동 ***호 (일산동, **빌라) | 일시: 2017-05-11 05:23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3.8t 초과 |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8. 31. |
| 박수일 |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8길 *-* ***호 (국우동) | 일시: 2017-05-16 21:22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1.4m 초과 |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7. 8. 31. |
| 조용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 (건건동) | 일시: 2017-05-23 15:11 장소: 남부순환로 내용: 제한 축하중 1.7t 초과 |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8. 31. |
| 조홍모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70번길 3-6, ***동 ***호 (오천읍, 센텀파크) | 일시: 2017-06-01 14:09 장소: 강서구 마곡동 내용: 제한 길이 2.4m 초과 |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8. 31. |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 대상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소 | | |
| 노석태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8, ***동 ***호 (가정동, 동우아파트) | 일시: 2017-03-14 05:51 장소: 노들길 내용: 제한 높이 0.28m 초과 | 처분일: 2017. 4.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6. 30. |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7. 8.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9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 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 대상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심현우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96번길 ** (하성면) | 일시 : 2017-05-02 04:4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태해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 초과 | 과태료:30만원 |
| 박종두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16, **3-*0*호 (마동) | 일시 : 2017-05-24 20:54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 과태료:30만원 |
| 김정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9, *-*6호 (옥련동) | 일시 : 2017-05-28 06:24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15m 초과 | 과태료:30만원 |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 대상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
| 성 명 | 주 소 | | |
| 장순돈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70번길 *-* (양촌읍) | 일시 : 2017-03-11 04:45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언주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7m 초과 | 과태료:30만원 |
| 이만용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5, 1**-*0*호(안중읍) | 일시 : 2017-03-14 06:09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 과태료:30만원 |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8.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 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 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차 등의 불이익을 받 을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99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최근 사회적 여건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건축분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준에 관계법령의 개정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 나. 또한, 기존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2016. 2. 4.)로 공고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로 변경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종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비 주요 개정사항)

가.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을 신축 외 기존 건물에 대한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추가하고 증·개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적용을 변경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단열·기밀 등 건축물 본연의 기본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사항만 반영하도록 하여 성능은 높이되 설계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임
- 나. 성능평가 단순화(5종 → 2종)

-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절감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주거, 비주거로 구분하고 종전에는 녹색건축인증을 통한 환경성능 평가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비총량평가(e-BESS) 등 총 5종으로 평가하던 것을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성능 총 2종으로만 평가도록 하여 이행 및 평가 간소화

다. 소규모 건축물 요구성능 최소화

- 벽면적 대비 창면적비, 차양, 개폐가능한 창의 설치비율,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 건물형태에 따라 소형건물이 이행하기 어려운 항목을 없애고 단열, 기밀 등 기본성능 위주로 적용성을 높였음

라. 환경, 에너지 관리기준 신설 및 강화

- 최근 대두되는 대기질 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건물분야의 대응강화 차원에서 친환경보일러와 저공해자동차 전용공간 설치 및 전기차충전기 설치규정을 신설
-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량을 파악하고 개선이 가능하도록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기능 도입

마.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 서울특별시는 건축물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설계기준 적용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고시안에서는 부지 내 설치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여건이 좋은 서울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대체설치하거나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건물별로 주어진 에너지소요량을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설치의무량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효율이 높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7. 8.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경배 주무관(☎ 2133-7105, FAX 2133-0750, E-mail : minerva0802@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 | 2. 구 분 | | | | | | |
|---|--|--------|---|-----------|---|----------|--|----------------|
| | | 신설 | ○ | 강화 | ○ | 내용 심사 | | 존속 기한 연장 |
| 3. 소관부처명 <small>및 작성자 인적사항</small> |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녹색건축팀장 박순규, 담당 공경배 | | | | | | | |
| 4. 근거법령명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관련 규제수 | | 2건 | | |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해당 규모의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 등 | | | | | | | |
| 6. 규제존속기한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법령 제정시까지 | | | | | | | |

○ 강화(적용대상)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적용
(기준)

-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②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추가)
- ③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
- ④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 대상 공동주택

○ 신설(환경관리부문)

|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개정 안 | | | | |
|----------------------------------|--------|------|---|--|-----|
| | 구 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 |
| | | | 대상 | 주거 | 비주거 |
| 환경관리 | 저녹스보일러 | 가 | 저녹스보일러 설치 (개별난방 방식인 경우에 한함) | 가스보일러 및 가스이용 냉방 설비 설치 시 저녹스버너 사 용 제품 적용 권장 | |
| | | 나 | | - | - |
| | 저공해자동차 | 가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 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 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 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 전기 설치 | |
| | | 나 | | - | - |

※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오피스텔은 저녹스보일러(주거) 기준 적용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1>: 적용대상 확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을 마련, 정비 해야함’
-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우리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설정·운영중임
- 적용대상은 상위규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적용대상에 이미 속해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어상 구분해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 리모델링 등 대상을 별도로 분리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한 것으로 관계자의 혼란방지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임

<규제 2>: 환경관리부문 신설

- 신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대기질 관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장방침 제246호)」 및 「2017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 관련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16호)」에 따라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 보일러 및 저공해자동차 주차시설 설치규정을 신설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설계기준은 2007년 제정이래 10년간 7차례 개정을 거쳐 운영되어 온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되어 있음
- 적용대상은 기존 대상에 속해 있는 대상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대수선, 리모델링 등 용어로 구분 표현한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명확한 구분으로 건축관계자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순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목적 달성을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저공해 자동차 및 보일러 설치규정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사용자 스스로 도입하고 있는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현재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수치화, 정량화하여 제시한 사항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 규제 중복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의 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시장경쟁제한 요소 및 기업 활동 저해요소 해당 없음

- 녹색건축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확충에 기여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이행사항을 수치화, 정량화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음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 및 예산 필요 없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구체적 검토서 제공 및 절차 안내로 적정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1700호

2018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18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용신고서 제출 대상

2018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일’에 연례적인 기념 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사용신고 대상일

2018.1.1~12.31 기간 중 사용기간이 6일 이내이며, 다음 표에서 안내한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가 아닌 경우

- '18년도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안)

| 제한 내용 | | | 사용 가능 장소 |
|-----------------|------------|-------|------------------------|
| 기간 | 사유 | 장소 | |
| '18.01.01~02.28 |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 잔디·동편 | 남측(1,200㎡) |
| '18.03.20~04.30 | 잔디 식재 예정기간 | 잔디 광장 | 동편(2,000㎡), 서편(1,200㎡) |
| '18.11.17~12.31 |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 잔디·동편 | 남측(1,200㎡) |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8.7.(월) ~ 8.21(월)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총무과(서울시청 본관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총무과(본청사 7층)
 - 2) 우편 : 2017.8.21. 18:00까지 서울시 우편 접수분에 한함
- 주소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 3) 모사전송 : 02-2133-0771
 - 4) 전자우편 : roberto22@seoul.go.kr/ euom@seoul.go.kr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사실 확인

4. 우선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조)

가. 우선수리 대상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경우
 - 2)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 3)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 대상

-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신고수리 대상 행사를 선정하여 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 등에 2018년 10월중 공개 및 개별 통보

※ 수리되는 모든 행사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6 기타(유의)사항

첨 부: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식 1부

첨 부 2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 설치 금지 : 잔디광장, 서울도서관 앞,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분수대 및 횡단보도 주변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 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다. 잔디광장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시설물(의자 등) 설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잔디보호대를 깔고 사용해야 하며, 당일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우천 시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에서의 행사는 금지됨(우천시 행사를 강행하여 잔디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라. 광장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광장 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소음·진동 관리법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

| 시간대별 |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 주간(07:00~18:00) | 야간(22:00~05:00) |
|-------|----------------------------------|-----------------|-----------------|
| 옥외 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 기준>

| 대상 지역 | 시간대 | 주간(해뜨 후~해지기 전) |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
|-----------------------|-------|----------------|----------------|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
| 그 밖의 지역 | 75 이하 | 65 이하 | |

3. 행사장 관리

가. 행사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다.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꽂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 사용 금지

라.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으로 행사장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 계도에 노력하여야 함

마.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조치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조치 될 수 있음)

바. 행사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광장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사항

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후 제3자에게 서울광장 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음

나.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음

라. 서울광장 내에서는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 참가비 또는 회비모금 등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

마. 행사장 내에는 행사 안내소 및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신고 순위)의 사용신고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만 적용하며, 같은 날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한 경우는 동일한 신고순위로 인정함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 . . . 주최자 O O O (인) 신고자 O O O (인)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 | | | |
|--------------|----------------------------|------------------------|----------------|
| 행사명칭 | | | |
| 사용목적 | | | |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 | |
| 주최자 | 주 소 | 전화번호 (핸드폰) F A X | () |
| | 성명 (단체명) | 생년월일 | |
| 주최단체의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성명 (단체명) | 생년월일 | |
| 연락책임자 | 주 소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성명 (단체명) | 생년월일 | |
| 사용인원 | | 사용면적 | m ² |
| 행사내용 | | |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지 2-1호 서식]

행사계획서

행사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장 소 : m²(서울광장 편)
- 참석 인원 : 명
- 주최·주관 :
- 내용 :

행사내용

| 일 시 | 행 사 명 | 내 용 | 비 고 |
|-----|-------|-----|-----|
| | 시설물설치 | | |
| | 사전 행사 | | |
| | 본 행사 | | |
| | 시설물철거 | | |

추진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광장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안)

‘서울광장 주변 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차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경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광장 인근 주차장 등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기타

- 무대설치 등 시안(상세 평면도, 입면도 등 ※ 별도첨부 가능)
- ※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파워포인트 등 제출 가능

[별지 2-2호 서식]

서울광장 사용 위치도

(행사장소, 시설을 배치 등 표기)

■ 사용장소 표기



- 사용 위치도는 서울광장을 사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 광장전체면적 : 13,207㎡(잔디부분 6,449㎡, 잔디외곽 화강석 부분 6,758㎡)
-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될 수 있음

[별지 2-2호 서식 참고자료]

서울광장 실측 도면



- ▷ 서울광장 실측도면은 서울광장 내에 행사용 천막이나 무대 설치 등을 위한 위치 안내 등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별지 2-3호 서식]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시설물 설치 내역

| 시설명 | 규격(m) (가로×세로×높이) | 사용용도 | 개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
-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

[별지 2-4호 서식]

안전 관리 계획서

행사 개최개요

- 참여 예상 인원 : 명
 - 주요내용·시설물 :
예시) 문화공연 - 행사용 무대 1동, 천막 20 동, 홍보 조형물 1개 등

안전 관리요원

- 총괄책임자 : 성명 전화번호
 - 위치별배치

| 위 치 별 | 인 원 | 책임자(전화번호) | 안전관리요원 |
|---------------|-----|-----------|--------|
| 광 장 동 편 | | | |
| 분 수 대 · 환 풍 구 | | | |
| 서 편 · 5 번 출 구 | | | |
| 잔 디 광 장 | | | |
| 광 장 주 변 도로 | | | |

주요시설물보호

| 시 설 물 별 | 조 치 사 항 | 책 임 |
|------------|------------------|-----|
| 무 대 | 안전펜스 설치 | |
| 분수대 · 환풍구 | 안전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 |
| 서편 · 5번 출구 | 안전요원 배치 | |
| 잔디광장 | 안전요원 배치 | |
| 광장 주변 도로 | 주정차금지, 안전요원 배치 | |

비상시 조치사항

| 발생유형별 | 조치사항 | 책임 |
|-------|-----------------------|----|
| 신고 | 경찰서·소방서 전화 | |
| 응급의료 | 구급차 전화() | |
| 차량통제 | 남대문경찰서 교통과(2096-8345) | |
| | | |

시간별 안전대책

| 시 간 | 세 부 내 용 | 안 전 조 치 방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안전대책

- 보험가입 여부 : 가입, 미가입 ※ 해당 부분 O로 표시
- 응급의료 조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문화 공연·행사·축제 등은 119 구급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
 - ▷ 민간단체의 공연·행사·축제·집회(시위) 등은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 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 이용 조치
- 기타, 야간 행사의 경우 참여 시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전선(safety line)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증가 배치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특성에 맞게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12호

하천구역 및 폐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현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서 지정된 하천구역 및 폐천구역 등 하천구역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구역의 개요

| 하천명 | 하천 등급 | 구분 | 구간 | | | 하천관리청 |
|-----|-------|------|--------------------|-------------------------|---------|-------|
| | | | 기점 | 종점 | 거리 (km) | |
| 당현천 | 지방 하천 | 전체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 5.83 | 서울특별시 |
| | | 금회변경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4-3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 | 0.45 |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7월 27일 ~ 2017년 8월 9일 (공람시간: 09:00 ~ 18:00)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노원구 물안전관리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 (2017년 8월 9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물순환안전국 하천계획팀(☎ 02-2133-388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역결정결과 총괄현황

○ 하천구역 및 폐천구역 현황

| 구 분 | | 총합계 | 천 | 유 | 구 | 제 | 전 | 답 | 대 | 도 | 임 |
|----------|-----|----------|-------|-------|---|---|-------|-----|-------|-----|-------|
| 하천 구역 | 국유지 | 필지수 | 38 | 9 | - | - | 2 | 5 | 4 | 13 | 5 |
| | | 편입 면적 | 6,001 | 2,326 | - | - | 1,217 | 564 | 371 | 519 | 1,004 |
| | 사유지 | 필지수 | 6 | - | - | - | 2 | - | 4 | - | - |
| | | 편입 면적 | 159 | - | - | - | 114 | - | 45 | - | - |
| 폐천 구역 | 국유지 | 필지수 | 41 | 7 | - | - | 1 | 2 | 20 | 10 | 1 |
| | | 편입 면적 | 3,736 | 674 | - | - | 92 | 135 | 1,708 | 999 | 127 |
| | 사유지 | 필지수 | 33 | - | - | - | 12 | - | 18 | - | 3 |
| | | 편입 면적 | 5,182 | - | - | - | 1,116 | - | 3,406 | - | 660 |

○ 하천구역 사유지 현황

| 연번 | 번지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
| 1 | 상계동 68-43 | 대 | 31 | 13.6 |
| 2 | 상계동 68-49 | 대 | 148 | 19 |
| 3 | 상계동 68-67 | 대 | 119 | 9 |
| 4 | 상계동 68-93 | 전 | 96 | 81 |
| 5 | 상계동 68-94 | 전 | 109 | 32.5 |
| 6 | 상계동 72-39 | 대 | 3 | 3 |

※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는 도로(하천복개구조물)구역내에 위치함

공적자율리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적자율리원회공고 제2017-4호

재산등록사망공개공고

공적자율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공적자율리원회

|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면적 등 권리의 명세 | 가액 (실거래액) | 비고 |
|----------|--|---|--------------|----|
| (단위: 천원) | | | | |
| 소속 | 서울특별시 | 직위 | 원장 | 성명 |
| ▶ 건물(소계) | | | 10,000 | |
| 본인 |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01점 2단지 오피스텔 건물 60.00㎡ | 10,000 | |
| ▶ 예금(소계) | | | 66,474 | |
| 본인 | 푸르덴셜생명보험 28,250, 신한은행 6,187, 우리은행 22,312, (주)KEB하나은행 5,722, 국민은행 4,003 | | 66,474 | |
| | 총 계 | | 76,474 | |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7-85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호(2012. 2. 2.)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용 산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남동 736-9외 1필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 계획내용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 | | |
| 기정 | D-c | 8,389 | 한남동 736-9 | 517.4 | 단위획지개발 | |
| | | | 한남동 736-36 | 231.4 | 단위획지개발 | |
| 변경 | D-c | 8,389 | 한남동 736-9 한남동 736-36 | 748.8 | 단위획지개발 | |

2)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계획

| 적용대상 | 기정 | 변경 | 비고 |
|-----------|------------|--------------|----|
| 한남동 736-9 |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공동주차출입구 일부폐지 | |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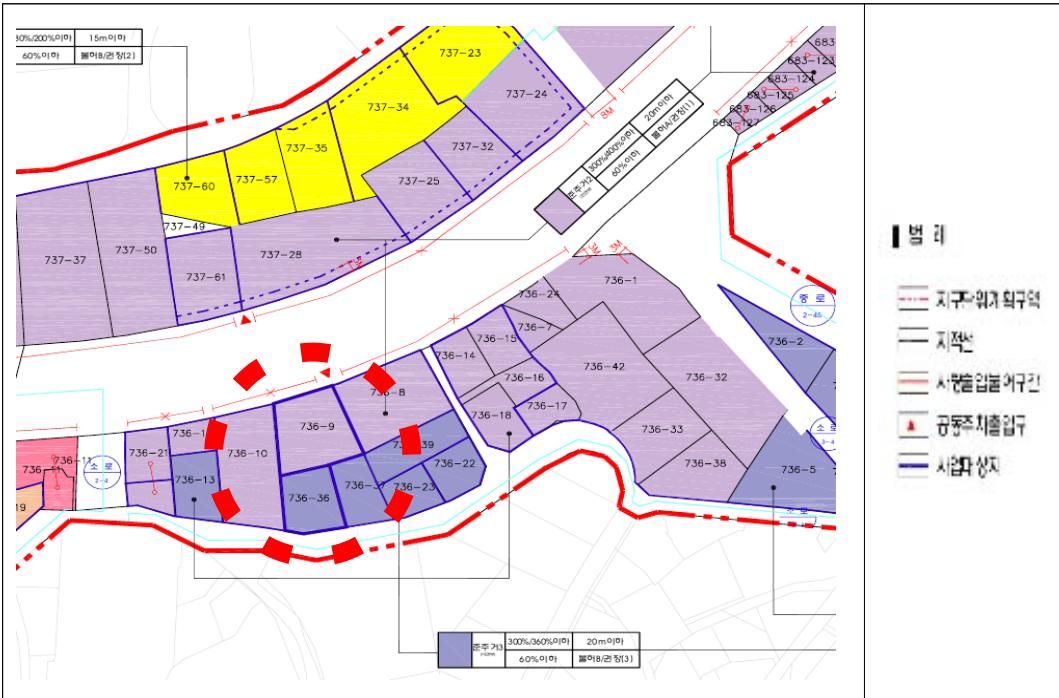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2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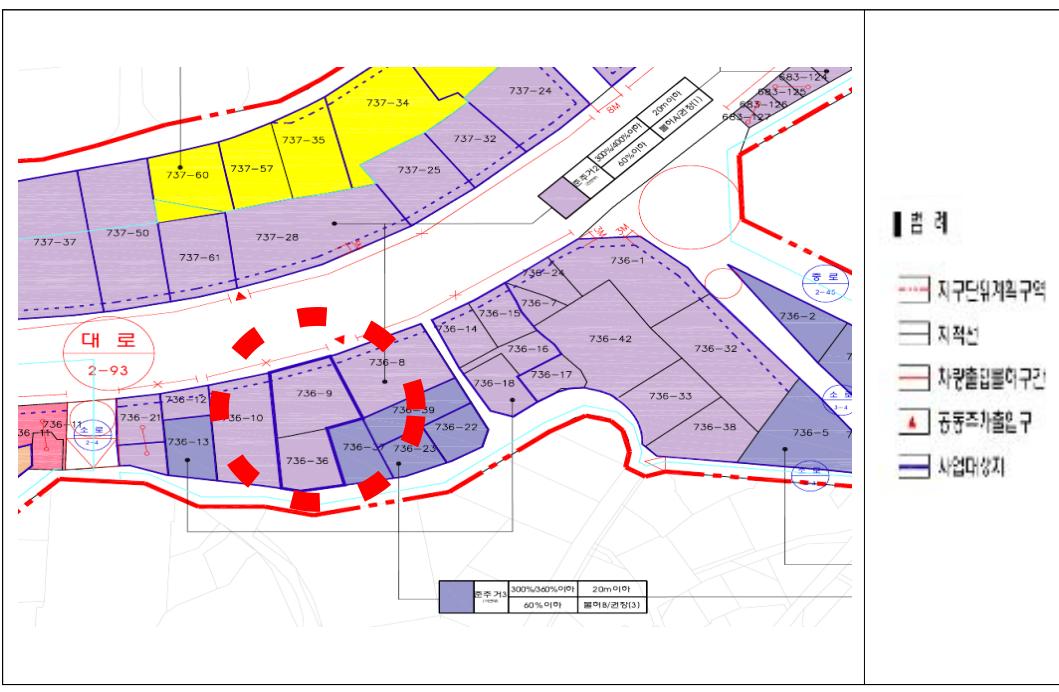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희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변경) 1부.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 용산구고시 제2017-88호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필지상 디에스한남(주)가 시행하는 한남동 680-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아울러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명 :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 디에스한남 주식회사 대표자 이윤배, 양현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52, 에스 401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워克斯)

3. 사업위치 :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필지

4. 사업계획 승인 내역

| 사업종류 | 사업내용 | 비고 |
|------|--|----|
| 주택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9,182.1㎡ ○ 연면적 : 225,629.6458㎡ ○ 건폐율 : 30.71% ○ 용적률 : 144.48% ○ 주용도 : 공동주택(3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9개동, 지하3층/지상5층~9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 전용 206㎡ ~ 273㎡ 335세대 -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혼합구조,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 주차대수 : 1,708대 | |

5. 사업시행기간 : 2017. 07 ~ 2019. 07. 예정

6.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되는 사항

| 관 계 법령 | 조 항 | 의 제 사 항 |
|--------------------|------|---------------------------------|
| 건축법 | 제11조 | • 건축허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 | 제56조 | • 개발행위의 허가 |
| 산지관리법 | 제14조 | • 산지전용허가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역명 | 위치 | 면적(m ²) |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한남외인주택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 - | 증) 59,182.1 | 59,182.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위치 | 면적(m ²) | 결정 사유 |
|-----------------------|---------------------|---|
|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 59,182.1 | • 한남동 680-1일원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前 한남 외인주택)부지로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하고자 함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 분 | | 면 적(m ²) | | | 구성비 (%)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합 계 | | 59,182.1 | - | 59,182.1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59,182.1 | - | 59,182.1 | 100.0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1 | - | 50.1 | 0.1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32,572.3 | - | 32,572.3 | 55.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559.7 | - | 26,559.7 | 44.9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최고고도지구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① | 남산 주변 | 최고고 도지구 | 용산구 한남동 676 일대 | 30m 이하 | 27,080 (26,370.8) | 2001.11.5. (서고 제354호)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 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 (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옐리베 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옐리베이 터 탑은 제외) |
| 기정 | ② | 남산 주변 | 최고고 도지구 |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 18m 이하 | 36,020 (32,233.5) | 2001.11.5. (서고 제354호)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 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 (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옐리베 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옐리베이 터 탑은 제외) |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③ | 남산 주변 | 최고고 도지구 | 용산구 한남동 685-2 일대 | 20m 이하 | 54,000 (110.1) | 2001.11.5. (서고 제354호)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 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 (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 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 터 탑은 제외) |
| 기정 | ④ | 남산 주변 | 최고고 도지구 |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북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 20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 1,434,427 (46.6) | 1995.4.6. (서고 제93호) |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 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 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 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 터 탑은 제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미관지구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m ²) | 연장 (m) | 폭원 (m)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① | 한남로 | 일반미관 지구 | 용산구 한남동 726-1 일대 | 21,600 | 900 (188) | 양측 12m | 1995.4.6. (서고 제93호)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구역 내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m ²) | 비고 |
|----|------|------------------|---------------------|--------|
| 신설 | ⓐ | 용산구 한남동 680-1 일원 | 59,182.1 | 공동주택용지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 획지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비고 |
|--------------------------------|----|----------------|--|-----------------------|----|
| ④ 용산구 한남동 680-1 일원 | |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 건폐율 | 60% 이하 | | |
| | | (기준/허용/ 상한)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170% / 190% / 250% 이하 | |
| | | | 제2종일반주거 | 190% / 200% / 250% 이하 | |
| | | 높이 | 최고고도지구 30m 이하 | 30m 이하 | |
| | | |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 | 20m 이하 | |
| | | | 최고고도지구 18m 이하 | 18m 이하 | |
| | | 건축한계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북·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 • 한남대로 및 한남대로2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 한남근린공원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 |
| | | 벽면한계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주거동 : 광역통경축(한남대로) 및 한남대로27길변 10m 이상 이격 •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광역통경축(한남대로)변 5m 이격 | |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주거동의 경우 광역통경축(한남대로) 및 한남대로 27길변 10m 이격 •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광역통경축(한남대로)변 5m 이격 | |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한남대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차량출입허용구간 | • 차량출입 불허구간외의 구간 |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전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남대로 및 한남대로27길변 : 폭 5m • 사업대상지 서측 이태원로54길변 : 폭 3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보행환경 개선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보행공간 조성 |
| 공공보행통로 | • 대상지 북측 동서간 폭 6m 공공보행통로 | • 괘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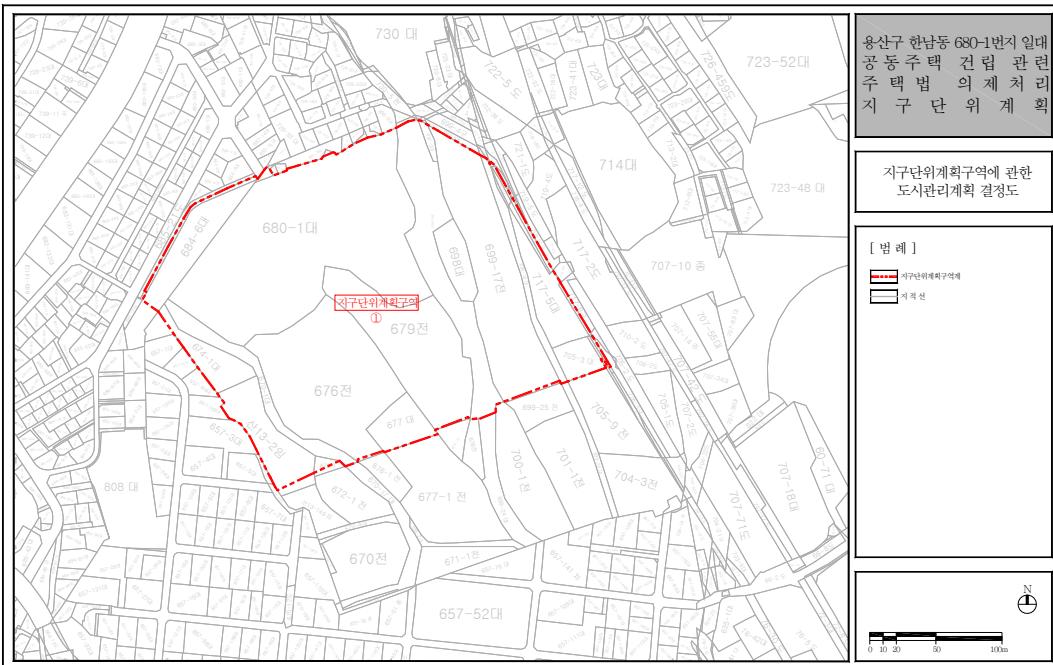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용산구청 7층 건축디자인과(☎02)2199-7500)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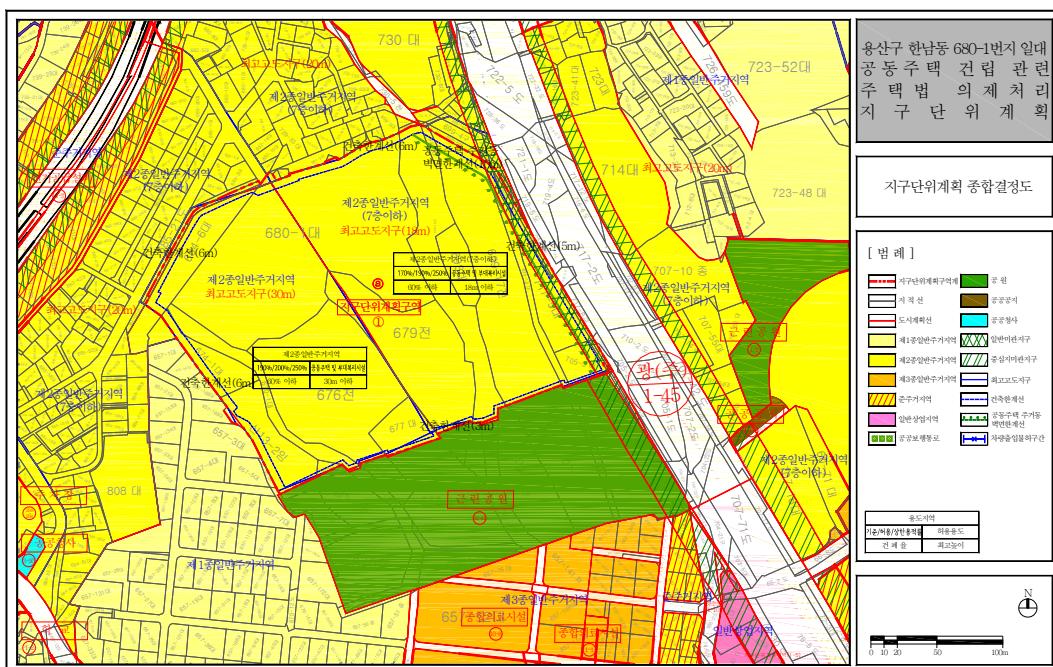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go.kr>) 및 토지이용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 광진구고시 제2017-75호

임목 웨손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2-10번지, 372-11번지, 372-12번지, 372-14번지 임목이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1. 사고지 지정내역

| 연번 | 위 치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비고 |
|----|----------------------|----|-------|---------|----|
| 계 | 4필지 | | 3,233 | 3,233 | |
| 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2-10 | 임야 | 344 | 344 | |
|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2-11 | 임야 | 370 | 370 | |
| 3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2-12 | 임야 | 364 | 364 | |
| 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2-14 | 임야 | 2,155 | 2,155 | |

2. 관계도면 : 불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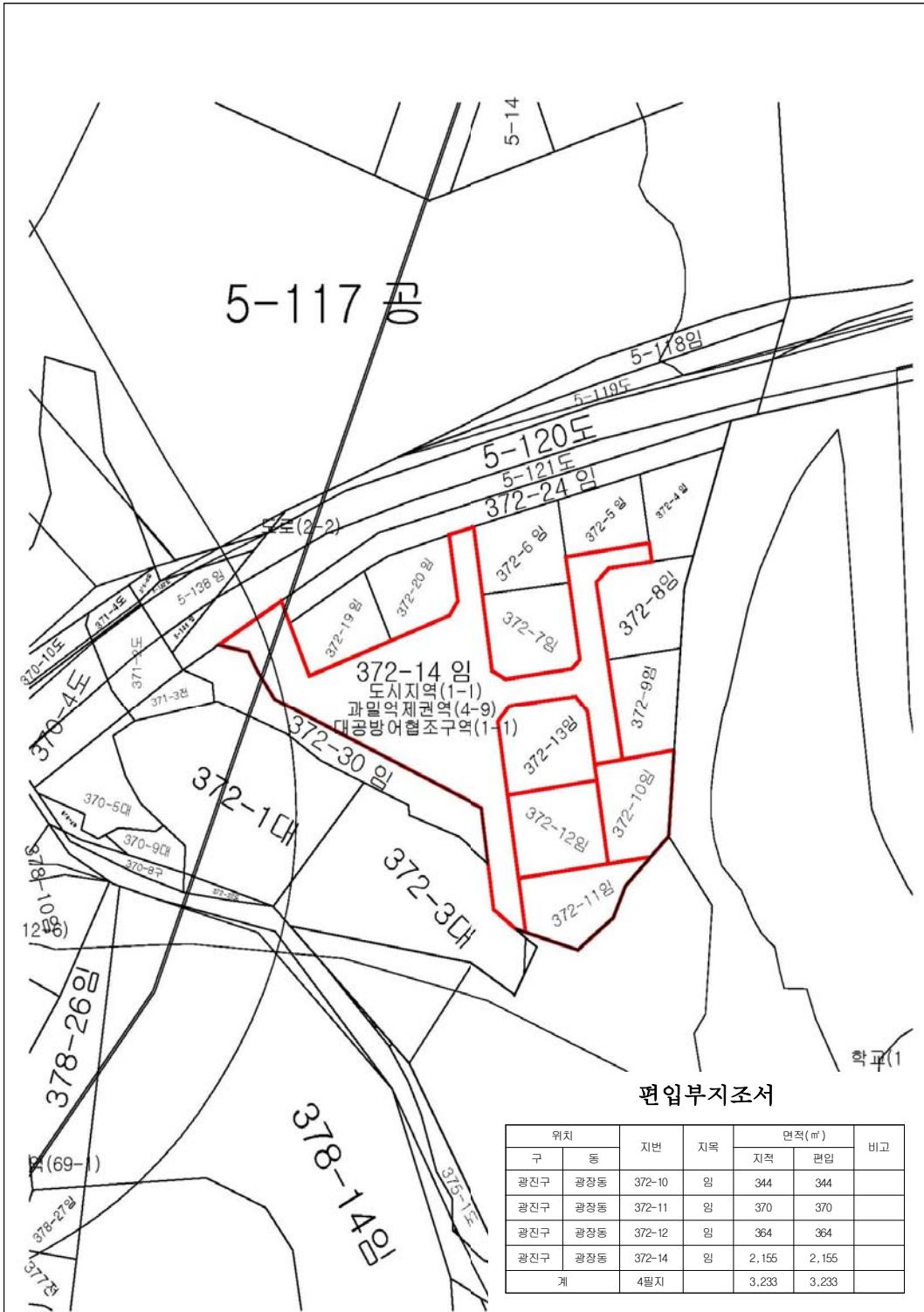
3. 지정사유 및 근거

- 지정사유 : 광진구 광장동 372-10 등 4필지 임야 내 임목 불법훼손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

4. 기타사항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면 등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9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 구로구고시 제2017-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26호(1988.3.28)로 결정(변경)고시, 구로구고시 제2016-16호(2016.10.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고시, 구로구고시 제2017-74호(2017.05.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어 구로구고시 제2017-58호(2017.04.13)로 실시계획 인가하고, 구로구공고 제2017-954호(2017.06.2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한『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 변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0-15~115-1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 〔당초 : 도로개설 폭8m, 연장17m
 └ 변경 : 도로개설 폭8m, 연장25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당초)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1 | 가리봉동 132-118 | 대 | 104.9 | 49.7 | 박영복 |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사당동, 대림아파트) | | | | 모지번 132-96 |
| 2 | 가리봉동 132-114 | 대 | 11.8 | 11.8 | 박영복 |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사당동, 대림아파트) | | | | |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m ²) | 편입 면적 (m ²)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 | | | | 성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 1 | 가리봉동 132-118 | 대 | 49.7 | 49.7 | 박영록 |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사당동, 대림아파트) | | | | 모지번 132-96 |
| 2 | 가리봉동 132-114 | 대 | 11.8 | 11.8 | 박영록 |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사당동, 대림아파트) | | | | |
| 3 | 가리봉동 110-17 | 대 | 65 | 65 | 정번 | 구로구 우마1가길 21(가리봉동) | 중소기업은행 | 중구 을지로2가 50(구로디지털지점) | 근저당 | 모지번 110-15 |
| 4 | 가리봉동 110-18 | 대 | 33 | 33 | 정번 | 구로구 우마1가길 19(가리봉동) | 중소기업은행 | 중구 을지로2가 50(구로디지털지점) | 근저당 | 모지번 110-16 |
| 5 | 가리봉동 118-41 | 대 | 5 | 5 | 구로구 | | | | | |
| 6 | 가리봉동 118-39 | 대 | 84 | 84 | 구로구 | | | | | |
| 7 | 가리봉동 132-122 | 대 | 8.1 | 8.1 | 한국기독교장로회 가리봉교회 | 구로구 가리봉동 132-86 | | | | 모지번 132-86 |
| 8 | 가리봉동 118-40 | 대 | 27 | 27 | 구로구 | | | | | |
| 9 | 가리봉동 118-48 | 대 | 115 | 115 | 김주영 | 구로구 가리봉동 118-20 | | | | 모지번 118-20 |
| 10 | 가리봉동 118-47 | 대 | 75 | 75 | 김조묘 | 구로구 가리봉동 118-18 | | | | 모지번 118-18 |
| | | | | | 박재홍 |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59, 101동1305호 (신대방동, 보라매파크빌아파트) | | | | |
| | | | | | 박구미 | 용산구 서빙고로 31, 202동1503호 (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 | | | | |
| 11 | 가리봉동 118-43 | 대 | 145 | 145 | 허룡 | 구로구 가리봉동 118-16 | 남구로신용 협동조합 |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13(가리봉동) | 근저당 | |
| 12 | 가리봉동 118-49 | 대 | 38 | 38 | 최순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29 에이스아파트 301호 | | | | 모지번 118-26 |
| 13 | 가리봉동 118-46 | 대 | 8 | 8 | 강진호 | 구로구 가리봉동 97-8 | | | | 모지번 118-14 |
| 14 | 가리봉동 118-44 | 대 | 42 | 42 | 김승영 | 구로구 가리봉동 118-2 | 우리은행 | 중구 회현동1가 203(구로구청지점) | 근저당 | 모지번 118-2 |
| 15 | 가리봉동 132-121 | 대 | 3.5 | 3.5 | 송국현 | 구로구 우마2길 54(가리봉동) | | | | 모지번 132-4 |
| 16 | 가리봉동 132-120 | 대 | 6 | 6 | 김태구 | 구로구 가리봉동 118-6 | | | | 모지번 132-3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m ²) | 편입 면적 (m ²)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 17 | 가리봉동 132-119 | 대 | 0.9 | 0.9 | 이명임 |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5-49, 101호(구로동, 청송빌라) | | | | 모지번 132-2 |
| 18 | 가리봉동 117-13 | 대 | 37 | 37 | 윤은순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56, 112동803호 (철산동, 래미안자이아파트) | | | | 모지번 117-11 |
| | | | | | 김창호 | | | | | |
| 19 | 가리봉동 118-45 | 대 | 23 | 23 | 최리중 | 구로구 우미2길 60(가리봉동) | | | | 모지번 118-3 |
| 20 | 가리봉동 115-131 | 대 | 15 | 15 | 한국기독교장로회 가리봉교회 | 구로구 가리봉동 132-86 | 가리봉 새마을금고 | 구로구 가리봉동 131-25 | 지상권 | 모지번 115-5 |
| 21 | 가리봉동 115-130 | 대 | 6 | 6 | 이영화 | 구로구 개봉로3길 87, 102동1402호 (개봉동, 개봉한진아파트) | | | | 모지번 115-4 |
| | | | | | 이은주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1길 34-1 (대포동) |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 영등포구 도산로 194 (신길동, 가산디지털 지점) | 근저당 | |
| 22 | 가리봉동 115-132 | 대 | 11 | 11 | 임정희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5, 2동409호(신길동, 삼성아파트) | 하나은행 |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산대방동 지점) | 근저당 | 모지번 115-124 |

물 건 조 서(당초)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물건의 종 류 | 구조 및 규격 | 수 량 (m ²) | 실 제 이 용 상 황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 1 | 가리봉동 132-96 | 건물(지층) |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39 | 상가 | 박영록 |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 (사당동, 대림아파트) | | | | |
| | | 건물(1층) | | 39 | 상가 | | | | | | |
| | | 건물(2층) | | 39 | 주택 | | | | | | |
| | | 가건물(3층) | 판넬 | 39 | 주택 | | | | | | |
| | | 가건물(3층) | 판넬 | 1 | 창고 | | | | | | |

물건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m ³)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 | 관계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1 | 가리봉동 132-96 | 건물(지층) | 연약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39 | 상가 | 박영록 |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 (사당동, 대림아파트) | | | 분할지번 132-118 | |
| | | 건물(1층) | | 39 | 상가 | | | | | | |
| | | 건물(2층) | | 39 | 주택 | | | | | | |
| | | 가건물(3층) | 판넬 | 40.4 | 주택 및 창고 | | | | | | |
| 2 | 가리봉동 110-15 | 가건물 | 철재/판넬 | 8 | 상가 | 이진문 | 가리봉동 100-5 | | | | 분할지번 110-17 |
| 3 | 가리봉동 132-86 | 건물 | 샷시/판넬 | 2.9 | 경비실 | 한국기독교장로회가리봉교회 | 구로구 가리봉동 132-86 | | | | 분할지번 132-122 |
| 4 | 가리봉동 118-20 | 가건물 | 샷시 | 9 | 상가 | 김주영 | 구로구 가리봉동 118-20 | | | | 분할지번 118-48 |
| 5 | 가리봉동 118-18 | 건물 | 조적 | 5 | 화장실 | 김조묘 박재홍 박구미 | 구로구 가리봉동 118-18 등작구 여의대방로 10길 59, 101동1305호 (신대방동,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로 31, 202동1503호(한강로 3가, 용산시티파크) | | 구건물대 장존재 | 분할지번 118-47 | |
| | | 화단 | 수목식재 | 2식 | 화단 | | | | | | |
| 6 | 가리봉동 118-16 제비동호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 5 | 주택 | 허용 | 구로구 우마2길 47(가리봉동) | 남구로신용 협동조합 |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13(가리봉동) | 근저당 | |
| | | 주차장대문 | 스테인레스 | 1식 | 주차장 대문 | | | | | | |
| | | 광고판 | 철재/광고판 | 1식 | 광고 | | | | | | |
| 7 | 가리봉동 132-53 | 가건물 | 샷시/판넬 | 4.3 | 데크 | 윤기곤 | 구로구 가리봉동 132-53 | | | | |
| 8 | 가리봉동 118-26 | 건물(1층) | 철근콘크리트조 | 13 | 주택 | 최순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29 에이스아파트301호 | | | 분할지번 118-49 | |
| | | 건물(2층) | | 6 | 주택 | | | | | | |
| | | 건물(3층) | | 5 | 주택 | | | | | | |
| | | 건물 | 샷시 | 1 | 보일러실 | | | | | | |
| | | 건물 | 샷시 | 1 | 보일러실 | | | | | | |
| 9 | 가리봉동 118-2 | 건물 (1,2,3층) | 철근콘크리트조 | 18 | 주택 | 김승영 | 구로구 우마2길 55(가리봉동) | 우리은행 | 중구 회현동1가 203 (구로구청지점) | 근저당 | 분할지번 118-44 |
| | | 가건물 | 셔터/천막 | 12 | 창고 | | | | | | |
| | | 건물(옥탑) | 천근콘크리트조 | 1 | 옥탑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물건의 종 류 | 구조 및 규격 | 수 량 (m ³) | 실 제 이 용 상 황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 10 | 가리봉동 117-11 | 건물 (1,2,3층) | 철근콘크리트조 | 14 | 주택 | 윤은순 김창호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56, 112동 803호(월산동, 래미안자이아파트) | | | 분할지번 117-13 | |
| | | 건물(옥탑) | 판넬 | 4 | 주택 | | | | | | |
| | | 계단 | 콘크리트 | 1식 | 계단 | | | | | | |
| | | 담장및대문 | 조적/철재 | 1식 | 담장대문 | | | | | | |
| 12 | 가리봉동 132-3 | 건물 | 조적 | 0.2 | 화장실 | 김태구 | 구로구 가리봉동 118-6 | | | 분할지번 132-120 | |
| | | 담장및대문 | 조적/철재 | 1식 | 담장대문 | | | | | | |
| | | 계단 | 콘크리트 | 1식 | 계단 | | | | | | |
| 13 | 가리봉동 132-2 | 건물 | 조적 | 0.7 | 주택 | 이명임 |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5-49, 101호(구로동, 청송빌라) | | | 분할지번 132-119 | |
| 14 | 가리봉동 118-3 | 건물 | 조적 | 1 | 화장실 | 오영래 | 구로구 가리봉동 118-3 | | | 분할지번 118-45 무허가 | |
| 15 | 가리봉동 117 | 계단 | 콘크리트 | 1식 | 계단 | 백명권 | 구로구 가리봉동 117 | 한빛은행 | 중구남대문로 2가 111-1 (가리봉동지점) | 근저당 | |
| | | 담장및대문 | 조적/스테인레스 | 1식 | 담장대문 | | | | | | |
| 16 | 가리봉동 115-24 1호 | 건물 (1,2,3층) | 철근콘크리트 | 10 | 주택 | 허승우 최은화 | 양천구 목동 549 외 8필지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102-305호 | | | | |
| | | 건물 | | 0.5 | 화장실 | | | | | | |
| | | 담장및대문 | 조적/철재 | 1식 | 담장대문 | | | | | | |
| | | 계단 | 콘크리트 | 1식 | 계단 | | | | | | |
| 17 | 가리봉동 115-24 | 건물 | 철근콘크리트 | 0.5 | 화장실 | 최병만 고정숙 | 구로구 구로동 252-73 4층 | 하나은행 |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 근저당 | |
| | | 계단 | 콘크리트 | 1식 | 계단 | | | | | | |

영업권조서(변경없음)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재 지번 | 세부 구분 | 물건의 종 류 | 상 호 | 수량 | 영업권의 종 류 (사업자등록증상)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가리봉동 132-96 | 1층 | 수선집 | 명품옷수선 | 1식 | - | 이귀선 |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 "사업자등록증 없음" |
| 2 | 가리봉동 132-96 | 1층 | 소매점 | 골목담배 | 1식 | 소매 | 오복우 |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 |
| 3 | 가리봉동 132-96 | 1층 | 건강원 | 영광흑염소 | 1식 | 음식 | 박래문 |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 |
| 4 | 가리봉동 132-96 | 지층 | 주점 | 해양민속촌호프 | 1식 | 음식 | CUI XIANYU |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 |

◆ 동작구고시 제2017-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10호(2004. 4.1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된 상도동425번지 「공공공지」에 대하여 이를 변경(폐지)하기 위하여, 동작구공고 제2017-636호(2017. 6.22.)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1. 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상도1동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과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장난감대여점 이전 위해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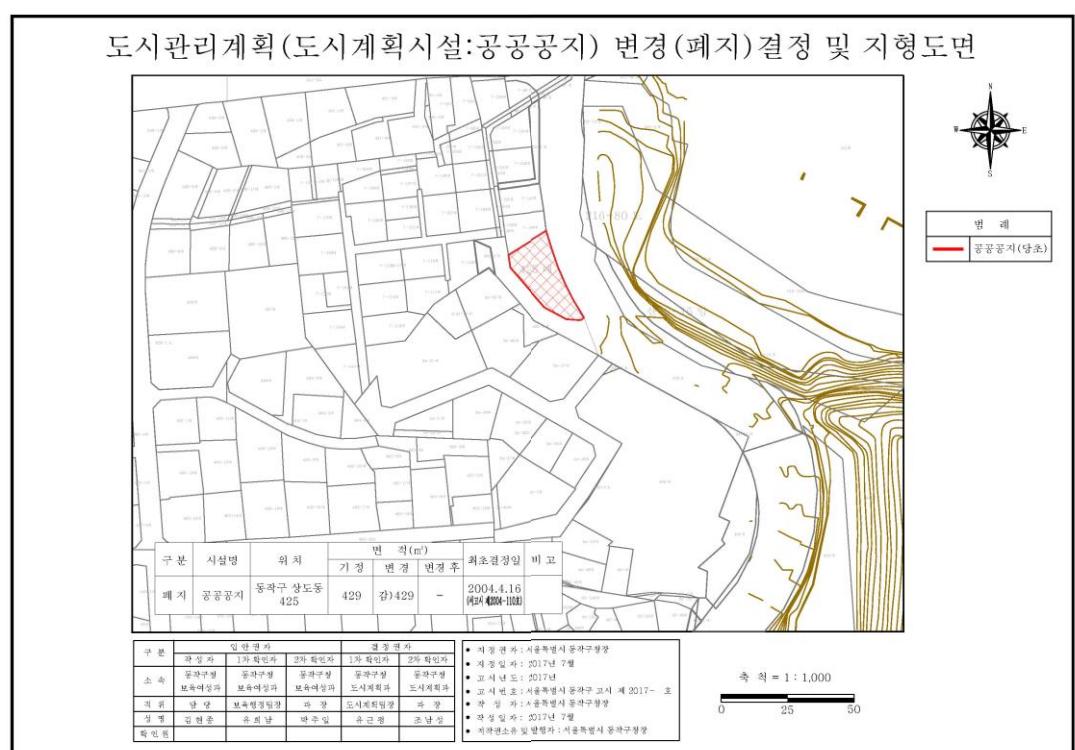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공공공지 | 동작구 상도동 425 | 429 | 감)429 | - | 2004.4.16. (서고시 제2004-110호) |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계획과(☎ 02-820-963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7-6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7-38호(2017.6.1)로 실시계획인가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당 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28-1 등 2필지
 - 변 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28-17 등 2필지
 - 면 적
 - 당 초 : 18,256m²
 - 변 경 : 18,256m²
 - 내 용
 - 당 초 : 토지보상 18,256m²
 - 변 경 : 토지보상 18,256m²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 바.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 붙임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 820-9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 지목 | 면 적(m ²) | | | | 소 유 자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 지적 | | 편입면적 | | 주 소 | 성 명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 | | | | |
| | 계 | | | 19,464 | 19,464 | 18,256 | 18,256 | | | | | | | | | |
| 1 | 동작동 산28-1 | 동작동 산28-17 | 임야 | | 1,208 | | 0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3길***-*, ***호(명일동) | 천귀* | 13967/21058 | | | | | | |
| | | | | | | | |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110동1602호 (둔촌동, 둔촌푸르지오아파트) | 안제* | 7091/21058 | | | | | | |
| | | | | 16,208 | | 15,000 | 15,000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3길***-*, ***호(명일동) | 천귀* | 13967/21058 | | | | | | |
| 2 | 동작동 산16-1 | 동작동 산16-1 | 임야 | 3,256 | 3,256 | 3,256 | 3,256 |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110동1602호 (둔촌동, 둔촌푸르지오아파트) | 안제* | 7091/21058 | | | | | | |
| | | | | | | |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 가길 23 ***동****호(본동래미안 트워크) | 고현* | | | | | | | |

◆ 관악구고시 제2017-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6-234호(2016.08.0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932호(2017.07.06)로 열람공고한 ‘관악산 신원동 동네텃밭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7일
관 악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 신원동 동네텃밭공원화 사업
-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 2) 변경내용 :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붙임참조)
 - 2) 면 적 : 2,700m²
 - 3) 내 용 : 토지보상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
|----|----|-------------|----|---------------------|-------|---------|---------------------|------------|----|-------------|
| | | | |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합계 | | | | 2,700 | | | | | | |
| 1 | 당초 | 신림동 산159-5 | 임야 | 29,855 | 1,200 | 주식회사 동선 |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 | | |
| 2 | | 신림동 산159-34 | 임야 | 33,481 | 750 | 주식회사 동선 |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 | | |
| 1 | 변경 | 신림동 산159-43 | 임야 | | 1,200 | 주식회사 동선 |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 | | |
| 2 | | 신림동 산159-44 | 임야 | 750 | 750 | 주식회사 동선 |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 | | |
| 3 | | 신림동 산159-45 | 임야 | 750 | 750 | 주식회사 동선 |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 | | |

◆ 강동구고시 제2017-12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암사역사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강동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7-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암사역사공원 조성공사

라. 사업의 규모 : 22,930m²

| 종류 | 세부시설명 | 위치 | 결정면적(m ²) | 시행면적(m ²) | 비고 |
|----|------------------|------------------|-----------------------|-----------------------|----|
| 공원 | 역사공원 (암사역사공원) | 강동구 암사동 137-2 일대 | 110,198 | 22,930 | |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관계서류 및 도면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 편입토지조서 총괄표

○ 지목별, 소유별 면적

| 지목 | 합계(m ²) | 국·공유지 | | | 사유지 | 비고 |
|----|---------------------|-------|-----|-------|--------|----|
| | | 소계 | 국유지 | 시유지 | | |
| 합계 | 22,930 | 6,845 | 803 | 6,042 | 16,085 | |
| 대 | 1,194 | - | - | - | 1,194 | |
| 도 | 1,286 | 1,286 | - | 1,286 | 0 | |
| 전 | 20,136 | 5,559 | 803 | 4,756 | 14,577 | |
| 임 | 314 | - | - | - | 314 | |

○ 지목별, 소유별 필지수

| 지목 | 합계(m ²) | 국·공유지 | | | 사유지 | 비고 |
|----|---------------------|-------|-----|-----|-----|----|
| | | 소계 | 국유지 | 시유지 | | |
| 합계 | 25 | 4 | 1 | 3 | 21 | |
| 대 | 2 | - | - | - | 2 | |
| 도 | 1 | 1 | - | 1 | - | |
| 전 | 20 | 3 | 1 | 2 | 17 | |
| 임 | 2 | - | - | - | 2 | |

나. 지변별 편입토지조사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m ²) | 평일면적 (m ²) | 소유자 | | 건물 및 지장물 | | | | 소유자 외 권리자 | | |
|----|-----|-------|----|----------------------------|---------------------------|---------------------------------------|---|---------------------------|----------------------|----------------------------|--------------------------------|--------------------------------|------|------------|
| | | | | | | 성명 | 주 소 | 용 도 | 구조 및 구역 | 수 량 | 소유자 | 성명 | 주 소 | 권리 종류내용 |
| 1 | 암사동 | 135 | 전 | 1,463.9 | 조규희 외 4인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000관악현대아파트 102-404 | 루평 | 892.1 m ² (6동) | 정병우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704호 | 체권최고액 금360,000,000원 | 근저당권 | | |
| | | | | | | | 루평 | 304.9 m ² (2동) | | 48-12 | | | | |
| | | | | | | | 심정 | 17평 | | 동양타워아파트-704호 | | | | |
| | | | | | | | 모과 | 1그루 | 강동농업 협동조합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 | 근저당권 | | | |
| | | | | | | | 복승아 | 2그루 |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 | | | | |
| | | | | | | | 배나무 | 1그루 |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 | | | | |
| 2 | 암사동 | 135-1 | 도 | 2,308 | 1,285.7 | 강동구 | 서울시 강동구 | 기죽나무 | 1그루 | 한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6 | 체권최고액 금360,000,000원 근저당권 | 근저당권 | | |
| | | | | | | | 대추나무 | 1그루 | | | | | | |
| | | | | | | | 가로수 | 25그루 | | | | | | |
| | | | | | | | 주차표지판 | 17평 | | | | | | |
| | | | | | | | 가로등 | 47평 | | | | | | |
| | | | | | | | 오수멘홀 | 37평 | | | | | | |
| 3 | 암사동 | 135-2 | 대 | 329 | 329.0 | 김경홍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씨동 4102호 | 우수멘홀 | 57평 | 한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6 | 체권최고액 금360,000,000원 근저당권 | 근저당권 | | |
| | | | | | | | 체신주 | 2분 | | | | | | |
| | | | | | | | 한전주 | 2분 | | | | | | |
| | | | | | | | 건물 | 함석 | 157.2 m ² | | | | | |
| | | | | | | | 은행나무 | 1그루 | 한영철강 공업(주) | | | | | |
| | | | | | | | 오수멘홀 | 1개 | 와이케이 스틸(주) | 부산광역시 사하구 율속도대로 760 | | | | |
| 4 | 암사동 | 135-3 | 전 | 988 | 969.5 | 김경홍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씨동 4102호 | 집목 | 10그루 | 한영철강 공업(주) |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6 | 체권최고액 금360,000,000원 근저당권 | 근저당권 | |
| | | | | | | | 은행나무 | 1그루 | | | | | | |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m ²) | 소유자 | | | 건물 및 지장물 | | | 소유자 외 권리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용도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소유자 | 성명 | 주소 | 권리 종류/내용 |
| 5 | 암사동 | 136-1 | 전 | 4,760 | 2,905.2 | 김희영 외1인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13주 공동아파트 246-302 | 비닐하우스 | 28.5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186.0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280.5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393.8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549.3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539.4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575.8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542.9m ² | | | | |
| | | | | | | | | 비닐하우스 | 424.6m ² | | | | |
| | | | | | | | | 집목 | 1그루 | | | | |
| 6 | 암사동 | 137 | 전 | 1,102 | 986.3 | 서울시 온 교회 | 서울 강동구 암사동 137 | 루평 | 588.1m ² (3동) | | | | |
| | | | | | | | | 루평 | 26.1m ² | | | | |
| | | | | | | | | 기건물 | 17.3m ² | | | | |
| | | | | | | | | 대추나무 | 1그루 | | | | |
| | | | | | | | | 현전주 | 1본 | | | | |
| 7 | 암사동 | 137-2 | 전 | 1,432 | 1,432.0 | 최광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137-10 | 이동화장실 | 1.0m ² | | | | |
| | | | | | | | | 기건물 | 22.5m ² | | | | |
| | | | | | | | | 소나무 | 100그루 | | | | |
| | | | | | | | | 묘목밭 | 50그루 | | | | |
| | | | | | | | | 집목 | 3그루 | | | | |
| 8 | 암사동 | 137-3 | 전 | 803 | 803.0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 고목 | | | | | |
| | | | | | | | | 가건물 | 16.5m ² | | | | |
| 9 | 암사동 | 137-6 | 전 | 331 | 331.0 | 신경자 외3인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0현대아파트 602-2503 | 비닐하우스 | 18.0m ² | | | | |
| | | | | | | | | 루평 | 64.7m ² | | | | |
| | | | | | | | | 집목 | 1그루 | | | | |
| | | | | | | | | 가건물 | 28.8m ² | | | | |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m ²) | 편입면적 (m ²) | 소유자 | | | 건물 및 지장을 | | | 소유자 외 권리자 | | |
|----|-----|--------|----|-------------------------|---------------------------|------------|---|------------|--------------------------|---------------------|-----|-----------|----|------------|
| | | | | | | 성명 | 주 소 | 구조 및 규적 | 용 도 | 수 량 | 소유자 | 성명 | 주소 | 권리 종류내용 |
| 10 | 암사동 | 137-7 | 전 | 331 | 331.0 | 박진택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신88-5 | 묘목밭 | 소나무 | 24그루 | | | | |
| 11 | 암사동 | 137-8 | 전 | 529 | 529.0 | 최진례 |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5-2 | 과실수 | 1그루 | | | | | |
| | | | | | | | | 잡목 | 2그루 | | | | | |
| | | | | | | | | 기건물 | 20.3m ² | | | | | |
| | | | | | | | | 루평 | 116.1m ² | | | | | |
| | | | | | | | | 보안등 | 2개 | | | | | |
| | | | | | | | | 심정 | 1개 | | | | | |
| | | | | | | | | 한전주 | 1본 | | | | | |
| | | | | | | | | 루평 | 217.5m ² | | | | | |
| | | | | | | | | 루평 | 456.5m ² (3동) | | | | | |
| 12 | 암사동 | 137-9 | 전 | 992 | 992.0 | 이정희 외2인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659 | 기건물 | 8.9m ² | | | | | |
| | | | | | | | | 잡목 | 1그루 | | | | | |
| | | | | | | | | | | | | | | |
| 13 | 암사동 | 137-10 | 전 | 330 | 330.0 | 최광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137-10 | 건물 | 습글 | 157.3m ² | | | | |
| 14 | 암사동 | 138-3 | 전 | 91 | 15.3 | 이근엽 | 동작구흑석동97-2 | | | | | | | |
| 15 | 암사동 | 138-4 | 전 | 72 | 72.0 | 신성민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07공무원아파트 817-303 | | | | | | | |
| 16 | 암사동 | 139-4 | 임 | 242 | 242.0 | 이종수 | 미합중국55125미내소타 주우드밸리시2775우르 레이드라이브 | 우수멘틀 | 1개 | | | | | |
| | | | | | | | | 묘목 | | | | | | |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m ²) | 소유자 | | | 건물 및 지장을 | | | 소유자 외 권리자 | | |
|----|-----|-------|----|----------------------------|---------|---------------------------|--|----------|---------------------|-------|-----------------------|-------------------|--------------------------------|
| | | | | | 성명 | 주 소 | 용 도 | 구조 및 규격 | 수 량 | 소유자 | 성명 | 주소 | 권리 종류/내용 |
| 17 | 암사동 | 139-7 | 임 | 72 | 72.0 | 이종수 | 미합중국55125미내소타 주우드밸리시2775우르 레이인드라이브 | 수신기 | 1본 | | | | |
| 18 | 암사동 | 143-4 | 전 | 1,650 | 41.8 | 오준영 외2인 |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36, 307동 1106호(은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 | | | | 서울경기 양도축산양 협동조합 |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92 | 근저당권 체권최고액 금377,000,000원 |
| 19 | 암사동 | 188 | 대 | 865 | 865.0 | 심인숙 | 서울시 신천동 7 장미아파트11동807호 | 체신주 | 1본 | 컨테이너 | 27.0m ³ | | |
| 20 | 암사동 | 192 | 전 | 2,061 | 1,970.6 | 이순근 외3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30-27부천법박힐스테 이트 506동 502호 | 비닐하우스 | 271.2m ³ | 비닐하우스 | 271.2m ³ | | |
| 21 | 암사동 | 192-3 | 전 | 148 | 143.2 | 사회복지 법인대한 사회복지 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 한전주 | 1본 | 한전주 | 1본 | | |
| 22 | 암사동 | 193 | 전 | 2,645 | 2,645.0 | 서울시 | 서울시 | 체신주 | | | | | |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m ²) | 편입면적 (m ²) | 소유자 | | 건물 및 지정물 | | | | 소유자 외 권리자 | | |
|----|-----|-----|----|-------------------------|---------------------------|------------|--|----------|------------|---------------------|-------------|---------------|-----------------------------------|------------|
| | | | | | | 성명 | 주 소 | 용 도 | 구조 및 규격 | 수 량 | 소유자 | 성명 | 주 소 | 권리 종류내용 |
| 23 | 임사동 | 194 | 전 | 1,422 | 352.4 | 박정우 외1인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 도곡백솔아파트 301-1103 | | | | (주)하나 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1,188,000,000원 | |
| 24 | 임사동 | 195 | 전 | 3,121 | 2,111.2 | 서울시 | 서울시 | | | | | | | |
| 25 | 임사동 | 197 | 전 | 5,474 | 1,711.9 | 심우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74-14 | | 현[전주] | 1본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180.3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375.4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397.8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443.4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481.4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522.2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526.7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571.3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562.9m ² | | | | |
| | | | | | | | | | 비밀하우스 | 573.8m ² | | | | |
| 합계 | | | | | | | | | | | | | 22,930.0 | |

다. 지장물총괄표

| 구분 | 지장물 | 동 | 개 | m | m ² | 주 | 비고 |
|------------|-------|----|----|---|----------------|-----|----|
| | 총계 | 35 | 55 | 0 | 12,794.7 | 226 | |
| 건물 및 부속 시설 | 소계 | 35 | 35 | 0 | 12,794.7 | | |
| | 건물 | 11 | | | 526.9 | | |
| | 루핑 | | 20 | | 2,716.1 | | |
| | 비닐하우스 | 24 | | | 9,505.4 | | |
| | 컨테이너 | | 2 | | 45.3 | | |
| | 화장실 | | 1 | | 1.0 | | |
| | 수목 | | | | | 226 | |
| | 한전주 | | 8 | | | | |
| | 체신주 | | 4 | | | | |
| 기타 | 소계 | | 20 | | | | |
| | 수신주 | | 1 | | | | |
| | 보안등 | | 2 | | | | |
| | 우수맨홀 | | 6 | | | | |
| | 오수맨홀 | | 4 | | | | |
| | 표지판 | | 1 | | | | |
| | 가로등 | | 4 | | | | |
| | 심정 | | 2 | | | | |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17-9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70호(2011.9.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성북구고시 제2015-79호(2015.5.14.) 및 제2015-90호(2015.6.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정릉동 820-7 ~ 817-1간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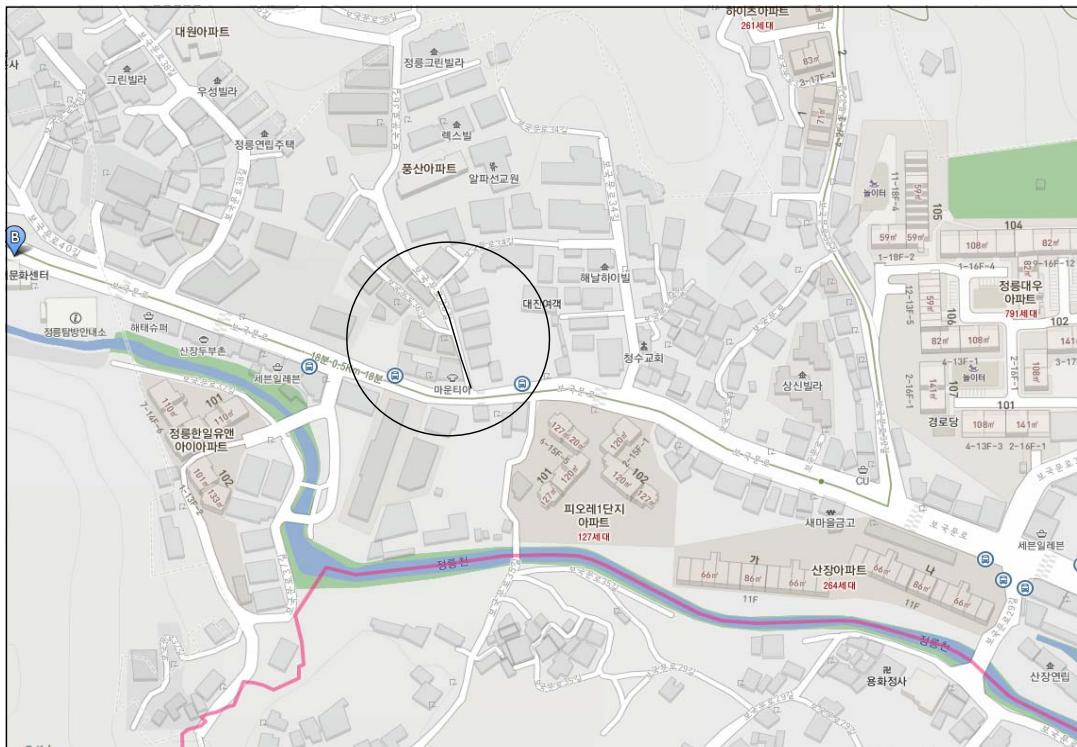
-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보문로 168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의 위 치 | 사업규모 | 실시계획 인가 | 사업기간 |
|---------------------------|------------------------------|---------------------------------|--|------------------------------|
| 정릉동 820-7 ~ 817-1간 도로확장공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20-7~817-1 | 도로확장 폭(B)=3→6m, 연장(L)=56m |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79호 (2015.5.14.) | 2015.05.14. ~ 2016.12.22. |

라. 관계도서 : 생략(성북구청 도로과에 비치)

위 치 도



◆ 도봉구공고 제2017-787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도 봉 구 청 장

1. 도로의 종류 : 구도

2. 제한대상 노선 조서

| 연번 | 도로명 | 구간 | 연장 | 제한 총중량 | 비고 |
|----|--------|----------------------------------|------|-----------|-----|
| 1 | 우이천로 | 도봉구 창동 511-7 ~ 도봉구 창동 455-14 | 340m | 32톤 | 도봉구 |
| 2 | 덕릉로54길 | 도봉구 창동 455-14 ~ 도봉구 창동 445-17 | 120m | 32톤 | 도봉구 |

3. 제한의 대상

- 총중량 32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체원 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4.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별도 공고시 까지

5. 제한사유 :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

6. 공고사항에 대한 문의처

- 도봉구청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02-2091-4073)

※ 관련도면은 도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보여드립니다.

위 치 도



正統編



◆ 노원구공고 제2017-66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08.25.)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7번지 수락산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7일
노원구청장

-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7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칭: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및 녹지복원
- 다. 사업규모: 870m²
-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변경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 이행 및 편입면적에 대한 지번 변경
- 사. 공고방법: 시보게재
-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자.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66)
-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 명세: 별첨

토지조사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 소재지 | 지목 | 지적 (m) | 면적 (공유지분) | 기 정 | | 변 경 | | | | 이해 관계인 | 이해 관련의 종류 및 내용 |
|--------------|----|-----------|--------------|--------------|----------------|---------------------------------------|-------------------------------|----------|--------------|--------------------------------------|-------------------------|
| | | | | 이용 상황 | 편입면적 (공유지분) | 이해 관계인 | 소유권 와 관련의 종류 및 내용 | 성명 주소 | 이용 상황 | 편입면적 (공유지분) | |
| 계 | | 4,364 | 870 | | | | | | | | |
| | | | | 정준우 | 정준우 | 서울시 동대문구 체기로2길 25-3 (청량리동) | | | 정준우 | 서울시 동대문구 체기로2길 25-3 (청량리동) | |
| 정준봉 | | | | 정준봉 | 정준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3번길 22 (원당동) | | | 정준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3번길 22 (원당동) | |
| 정준자 | | | | 정준자 | 정준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22, 2동 401호 (서초동) | | | 정준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22, 2동 401호 (서초동) | |
| 정봉근 | | | | 정봉근 | 정봉근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5동 510호 (중계동) | | | 정봉근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5동 510호 (중계동) | |
| 정점순 | | | | 정점순 | 정점순 |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72-12 (생연동) | | | 정점순 |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72-12 (생연동) | |
| 상계동 산52-7 | 임야 | 4,364 | 870 | 상계동 산52-7 | 임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8번길 18, 402호 (은행동) | 상계동 산52-7 | 임야 | 상계동 산52-7 | 임야 | 상계동 산52-7 |
| | | | | 정봉학 | 정봉학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697길 4-7 (狎usal동) | | | 정봉학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697길 4-7 (狎usal동) | |
| 정광택 | | | | 정광택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이파트 101~402 |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이파트 101~402 | |
| 변효선 | | | | 변효선 | 변효선 | 경원도 원주시 치악로 1883, 102동 1909호 | | | 변효선 | 경원도 원주시 치악로 1883, 102동 1909호 | |
| 정관택 | | | | 정관택 | 정관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이파트 101~402 | | | 정관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이파트 101~402 | |
| 정광택 | | | | 정광택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이파트 101~402 |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이파트 101~402 | |

| 소재지 | 지목 | 지적 (m) | 면밀면적 (공유지분) | 이용 상황 | 기 | | 법 | | 경 | |
|--------------|----|-----------|----------------|----------|-----------|------------------------------------|---------------|-----|-----|------------------------------------|
| | | | | | 이해 관계인 | 소유자 | 주소 | 소유자 | 주소 | 성명 |
| 상계동 452-7 | 임야 | 4,364 | 870 | 임야 | 정봉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8번길 18, 402호 (은행동) | 870 (4/28) | 임야 | 정봉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8번길 18, 402호 (은행동) |
| | | | | | 정봉학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697길 4-7 (남설리동) | 870 (4/28) | | 정봉학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697길 4-7 (남설리동) |
| | | |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아파트 101-402 | 870 (4/28)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아파트 101-402 |
| | | | | | 변효선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83, 102동 1909호 | 870 (1/28) | | 변효선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83, 102동 1909호 |
| | | |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아파트 101-402 | 870 (4/28)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아파트 101-402 |
| | | |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아파트 101-402 | 870 (2/28) | | 정광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로 70 대명아파트 101-402 |
| 수인면 예비고 | | | | | | | | | | |

◆ 영등포구공고 제2017-1053호

대림동 964-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69-3호(1969.1.18)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4-32호(2014.4.1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간적범위)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5-27호(2015.03.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 범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47호(2016.6.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대림동 964-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또는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수용재결서가 반송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림동 964-9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영등포구 대림동 964-9번지 일대)
2.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윤대원)
3. 공고 사유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거소 및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4. 공고 내용 :

| | | |
|--|--|------------------------------|
| 협의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7일간 | |
| 협의장소 | 학교법인 일송학원 재단관리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 4층) | |
| 협의방법 | 당학원에서 협의 후 계약서 작성 | |
| 보상의시기 · 방법 및 절차 |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현금보상) |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부(무허가인 경우 무허가확인원) 2. 인감증명 2부(부동산매매용 1부) 3. 주민등록초본 2부 4. 등기권리증 5. 인감도장 6. 통장사본 | |
| 공고대상자 및 공시송달내역 | [별 첨 참 조] | |
|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는 상속등기절차 후 당 조합에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5. 공고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연 번 |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 지 목 | | 토지 면적 (㎡) | 지분 | 소유자 | 최종주소 | 사유 | 비고 |
|--------|-----------------------------|-----|----|-----------------|-----------|-----|-------------------------|-------|----|
| | | 공부 | 현황 | | | | | | |
| 1 | 962-9 (962-4) | 대 | 대 | 97 | 620/10540 | 김종억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65 | 폐문부재 | |
| 2 | 962-9 (962-4) | 대 | 대 | 97 | 620/10540 | 김천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106 | 수취인불명 | |
| 5 | 962-9 (962-4) | 대 | 대 | 97 | 496/10540 | 정규완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9 | 주소불명 | |

6. 보상대상 권리 상세내역 : 학교법인 일송학원 문의

7. 기타

- 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음 함.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재단관리팀 ☎ 02)2629-1163 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 02)2670-3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 강남구공고 제2017-136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건설교통부고시 제465호(1971.8.7)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호(2015.2.12.)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1호(2011.7.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4호(2017.3.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분할)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423-624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품질관리부(☎3416-3875)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48-15번지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 세곡근린공원 조성(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2단계, 토지보상)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공원면적 103,449m² 중 1,936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7.12.31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423-624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품질관리부(☎3416-3875)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1 | 자곡동 | 산48-15 | 임 | 1,911m ² | 1,911m ² | | |
| 2 | 자곡동 | 574-4 | 잡 | 23m ² | 23m ²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 동대문구 이문동 207-1 |
| 3 | 세곡동 | 산50-16 | 임 | 6,301m ² | 2m ² | | |

◆ 강남구공고 제2017-1364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 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호(2009.5.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1호(2016.4.2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90호(2016.6.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시행(분할)된 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 봉은역사공원 조성(1단계)

다. 사업면적 : 공원면적 75,405m² 중 57,739.59m²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대표 주지 원명(김종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마. 사업기간 : 2016. 6. 23. ~ 2017. 6. 30.

◆ 강남구공고 제2017-137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정거장)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358호(1990.6.22.)로 최초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79호(2015.7.16.)로 변경결정되었으며, 강남구고시 제13호(2016.2.4.) 및 강남구 고시 제22호(2016.2.18.)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강남구 일원동 73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사업

- 2. 사업의 명칭 : 일원동 빌딩 신축관련 일원역 출입구 개선 및 환기구 공사
- 3. 사업의 위치 : 강남구 일원동 733번지 일대
- 4. 사업시행자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수

5. 면적 및 규모

| 구 분 | 현 재 | 개선계획 | 비 고 |
|-------|------------------------------|--------------------|------|
| 출입구#1 | 계단형 출입구 (폭원 : 12.0~23.5m) | 에스컬레이터 1200형 2기+계단 | 추후준공 |
| 출입구#2 | 계단형 출입구 (폭원 : 4.0m) | 에스컬레이터 800형 1기+계단 | 금회준공 |
| 출입구#3 | 계단형 출입구 (폭원 : 5.0m) | 에스컬레이터 1200형 1기+계단 | 금회준공 |
| 엘리베이터 | 15인승 1대 | 17인승 2대 | 추후준공 |

6. 관련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6) 비치도서와 같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허가점용(사용)개요 | | | | 허 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점용지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서울시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유재룡) | 성동구 강변북로 *** | 뚝섬 및 이촌, 망원한강공원 | 총 : 1,758㎡ -이촌수상훈련장 : 504㎡ -이촌거북선나루터 : 750㎡ -망원수상훈련장 : 504㎡ | 청소년 수상훈련 및 교육 | 2017. 7.17. ~ 2020.3.31. | 2017. 7.17.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 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서울시계내 한강 (동호대교) | 선박 2척 | 동호대교 보수공사 | 2017.08.10.~ 2017.09.08. | 2017. 7.18.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 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조양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 |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 가양대교 임시물량장) |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 포천발전소 중량물 운송 | 2017.07.22. ~ 2017.07.26. | 2017. 7.20. |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 | |
|--------|--|
| 기관의 장 | |
| 선 람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람 | | | | | | | | | |